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錄日字 1967年 1月23日 登錄番号 ㅣ-ㅣ-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字 1978年 11月30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117号

197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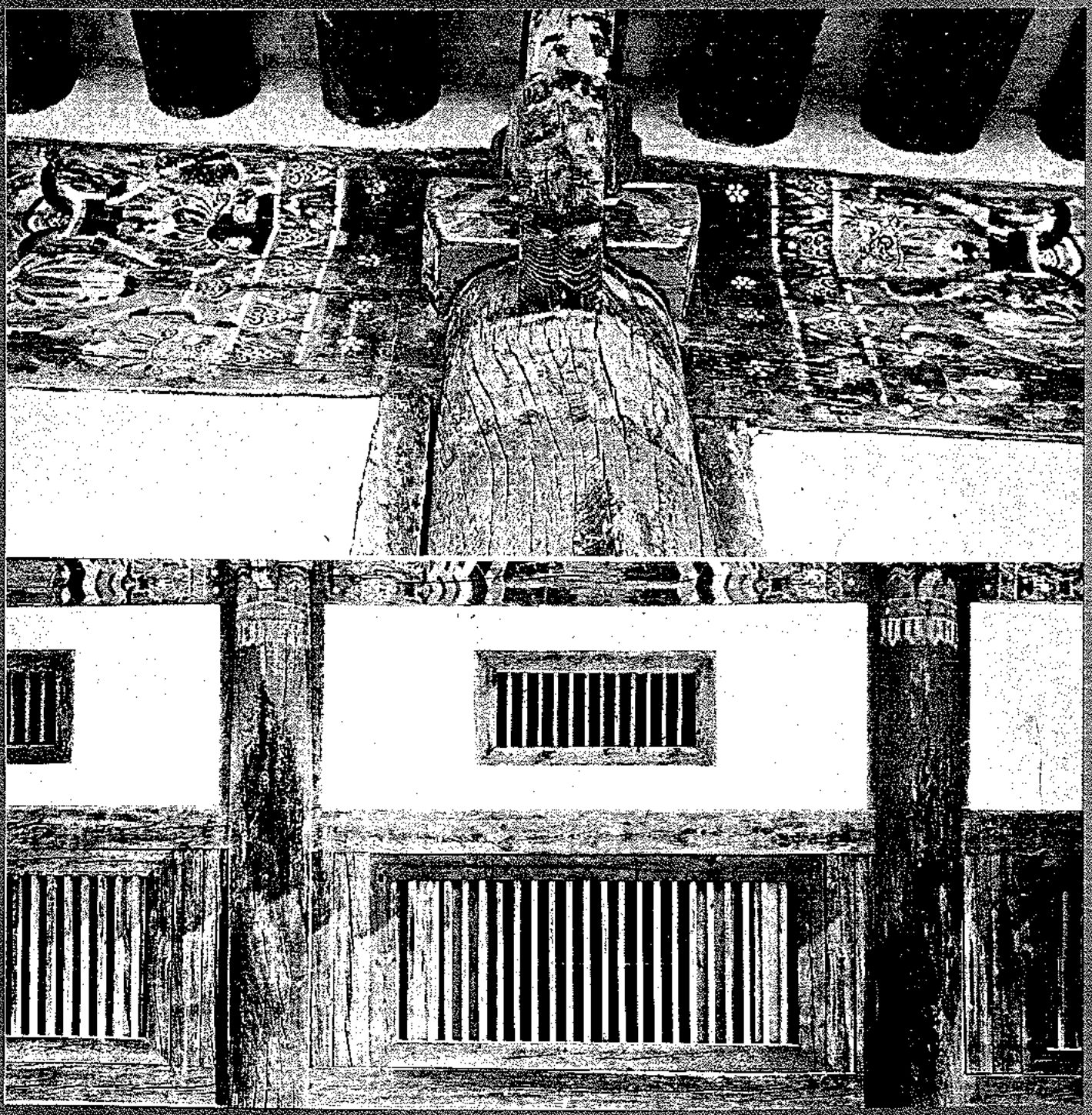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海印寺藏經板庫 外部科供)

柱間上部에는 작은 살창을 下部에는 넓은 창살을 달아 通機能을 하도록 되었다. 반대로 后面 柱間에는 上部에 넓은 窓을, 하부에 좁은 窓을 달아 內部의 換気調節에 용의주도한 科学的 計劃性을 보여주고 있다. 板庫로서 要求되는 機能에만 충실한 機能為主의 代表的 建物이다. 李朝 成宗19年(1488年) 正面15間, 側面2間 単層 우진각 지붕, 翼工집으로 高麗時代 大藏經板을 보관하고 있다.

外部科供은 배흘림이 현저한 기둥위에 柱頭를 놓고 직접 柱頭와 昌材이 엇물려 짜이고 內外部를 貫通한 翼工이 外部에서 草刻되고 內部는 染棒이 되어 大梁은 받게한 간결한 짜임새를 취하고 있다. 李朝初期의 건물로서 類例가 없는 극히 간단한 翼工系의 代表作이다.

編纂委員会

委員長 俞景哲
委 員 安箕泰
〃 吳昌熙
〃 尹道根
〃 李璟會
〃 李文輔
〃 鄭日榮
〃 黃一仁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1978.

目 次

會長人事발令 …… 2
1978年度 庶政刷新促進大会 및 第13회 定期総会 …… 3
1978年度 監査報告 …… 5
会員動静 …… 7
月間協会動静 …… 9

朝鮮後期서울·京畿地方上流住宅의 平面構成에 대한 研究 …… 金鴻植 …… 10
建築構造 理論의 発展과 課題 …… 李甲造 …… 21

〈会員코-너〉
第1期 建築士研修教育受講記 (三日間의 教訓) …… 安箕泰 …… 27
不條理 克服을 위한 提案 …… 林潤東 …… 30

第2政府綜合庁舎懸賞設計当選作 …… 31
各大学建築科巡訪 …… 国民大学編 …… 42

建築法施行令中改定令 …… 47
建築法施行令 解説 …… 56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中改定令 …… 63
建築行政相談 …… (서울市支部편) …… 77

海外作品 …… A+U …… 88
建築許可統計 …… 99

発行人兼 編輯人·姜奉辰 / 登録番号·第라−1251号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8年 11月30日 / 通巻 第117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端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 : 73 : 9491~2
印刷人 : 申 基 澈 (合同社)中区 忠武路3街59−8 266−2583

人 事 말 씀

会 長 金 萬 盛

大望의 80年代 先進国을 指向하는 跳躍台를 構築하기에 全国民이 総力投球를 하고있는 重大한 時点에서 祖国近代化와 国土建設의 役軍으로 民族史에 빛날 健全한 造形創作 芸術作品을 后孫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不徹晝夜 努力을 아끼지 않고 奮鬪를 하고있는 全国会員 여러분의 健勝과 健闘를 眞心으로 祝願하옵니다.

敬愛하는 会員여러분!

不肖 未熟하기 그지없는 本人이 지난 10月30日 우리協会 第13回 定期総会에서 全国 1.800名 会員의 親睦과 権益을 擁護해야하는 重責을 맡게된 会長에 選出하여 주신点은 一身上 一生에 다시없는 無限한 栄光으로 생각하고 感謝를 드리면서 주어진 責任을 생각할때 두려움이 앞서고 보다 有能하고 훌륭하신 先輩님들에게 이 重責을 맡기지 못한 아쉬움을 禁할길이 없읍니다.

急変하는 対内外情勢는 間断없이 우리의 周辺에서 많은 変化와 試練과 険路의 거센 물결이 되어 掩襲해 왔고 이럴때마다 우리는 知慧롭게 이를 克服하여 協会創設以来 지난 13年間 巨視的이며 効率的인 成長을 期해 왔다고 自負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今年度에는 우리가 克服하기에 힘에겨운 많은 難題들이 重壓되어 우리 協会는 重大한 試練을 겪고있는 한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中에서도 우리의 業務와 直結되고 있는 建築士法改正, 同施行令改正 公布등은 우리들의 새로운 覚悟를 強要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経済開発計劃事業施行에 따르는 経済成長過程에서 一時的 現像으로 나타날 수 있는 建築一部 抑制등은 우리業務計劃에 蹉跌마저 招来케 한 重大한 当面課題로 되고 있으며 建築士의 職能과 権威는 一般国民으로 부터 不可侵의 領域化해야 한다는 認識을 周知시켜야 할 時点에 처해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時期에 重責을 맡게된 本人의 어깨는 어느때보다 무겁고 이들 当面한 課題를 効率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全国会員이 一致団結해서 協助와 声援을 아끼지 아니하는 힘의 뒷받침이 関鍵이 된다고 確信하기에 人事말씀과 아울러 여러분의 끊임없는 指導鞭撻과 声援을 懇曲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重大한 時点에서 当面하고 있는 課題는 누구도 自進해서 解決해줄 것이라고 漠然한 期待만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解決해야 한다는 刻薄한 現実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唯一無二한 親睦과 権益擁護를 目的으로 해서 存立하는 協会를 通해서만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고 断定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協会는 会員에 依해 会員을 為하는 協会가 되어야하고 協会는 会員과 呼吸을 같이 하기위하여 恒時 門戸를 全面開放하고 会員의 좋은 見解와 主張을 받아들여 消化할 수 있는 業務態勢를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会員의 呼応없는 協会는 屍体와 같은 存在가 될 것이며 会員의 参与度가 없는 協会는 存立의 価値를 喪失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会務遂行은

첫째 : 定期的인 会員의 與論調査를 通해 関心事를 解決하도록 努力할 것이며 会員이 直接間接으로 取하는 建議에 注意를 傾注하고 福祉建設의 一環策으로 老齢先輩들의 余生을 念慮하는 対策을 講究하도록 最善을 다할것이며 会員間의 親睦을 図謀할 수 있는 「무드」造成에 全力하겠읍니다.

둘째 : 우리의 権益擁護를 위하여 関係 機関과의 紐帯를 強化하고 協会紀綱을 紊乱케 하는 不実設計, 設計費덤핑, 誠実業務의 不履行 行為등으로 建築士의 威信을 추락시킬때에는 果敢하게 倫理規程을 適用할 것이며

세째 : 現行 統合予算制度의 長短点을 研究分析検討해서 地域的 発展과 実情에 맞는 事業의 推進 会員의 受益을 위한 民主的이며 自律的 予算制度로 転換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가겠으며,

네째 : 会務의 能率的이며 効率的인 執行을 위해 事務処機構의 合併分離 事務経済診断을 通한 全幅的인 運営의 改善과 職員의 処遇改善에 努力하고

다섯째 : 技術人力의 確保와 建築技術의 向上을 위해 技術学校의 設立, 海外建築現況視察, 建築士村 建立등에 努力하고 建築行政의 所管을 官에서 漸次 民으로 移管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읍니다.

其他에도 많은 課題가 当面하고 있읍니다만 다음 機会로 미루고 于先 就任人事에 代하고자 하는바 앞으로 훌륭하고도 알찬 収穫을 거두기 위하여 全会員은 旧態依然했던 過去를 忘却地帯로 돌리고 当面하고 있는 現実을 直視하여 혼연一体가 되어 새 時代 創造에 先鋒隊로서 奮鬪하시기 바라오며 거듭 付託의 말씀은 未熟한 点에 対해 眞情한 충고와 指導鞭撻있으시기를 仰望하면서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과 萬福이 깃드시기를 祝願하옵니다. 感謝합니다.

1978年度 庶政刷新促進大会 및 第13回 定期総会開催

지난 10月31日 市内 엠버써더호텔 大会議室에서 内外貴賓 및 全国市道支部 全代議員 建設部関係官이 参席한 가운데 1978年道 庶政刷新促進大会 및 第13회 定期総会를 갖었다.

10時 正刻에 開会된 庶政刷新促進大会는 金斗燮 本協総務理事의 国民教育憲章朗読으로 그 幕이 올라 大統領閣下 말씀傾聴, 会長訓示, 제 3 방글 5·16광장 궐기선언 성토문, 결의문 채택 낭독 등 北韓傀儡蠢行을 聲討糾弾하였다.

재적대의원 69명중 64명 출석으로 정관제 24조에 의하여 성원을 선포

会順에 따라 定期総会가 続会되여 성원보고, 국민의례, 교육헌장낭독, 개회사, 건설부장관치사 감사패 및 표창 퍼수여, 78년도 협회대상시상, 1978년도 제 2 회 임시총회 회의록승인 업무보고, 부의안건 만세삼창 순으로 会議가 進行되었으며,

부의안건으로 다음 4개의 안이 다루어졌다.

제 1 호의안 : 1979년도 사업계획 승인의건

제 2 호의안 : 197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승인의건

제 3 호의안 : 정관 및 제규정 승인의건

제 4 호의안 : 기타사항

会議 막바지에 이르러 其他 事項討議中 金斗燮이사의 사의 표명과 박우하 이사의 사표가 全任員(理事全員)의 辞意를 일괄 수리如否를 놓고 討議끝에 会長도 辞意가 表明됐음을 상기 同時 일괄처리하자는 동의를 받아들여 可否를 무기명 투표한결과 재석 49명中 可(수리) 42, 否(반려) 7표로 任員辞意는 일괄 받아들여졌다.

時間이 너무 늦어지자 代議員들의 요청에 따라 任員改選에 들어가 그 選出方法이 巻論되자 긴급동의가 있어 잠시 휴회후 続会된 자리에서 지난날 회장단 구성을 例를 들어 会長이 所信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장만을 선출하고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 反対発言도 있고 해서 결국은 무기명투표로서 종다수 순으로 두사람을 추천하되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는 당선된 것으로 하자는 원칙으로 투표에 들어가 개표결과 아래와 같은 득표로서 종다수 김만성, 김무섭, 두 회원이 회선 회장 선출에 들어갔다.

이때 시간(20 : 40分) 회장선출에 있어 그 방법으로서 과반수냐 종다수냐를 놓고 다시 의논 끝에 종다수 결의 결선에 들어갔다. (20 : 50分)

개회사를 하는 회장

서정해신 축전대회광경

건설부장관의 말씀을 대독하는 주백국장

협회상 (논문)을 받는 김진일교수

재석50, 투표50

25표대 24표 기권 1표로 金萬盛 서울市支部長이 当選되었다.

뒤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의장에서 신임회장에게 의사봉이 넘겨져 신임회장이 의사를 진행케 되었고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선출방법을 놓고 토론끝에 新任会長과 各 市道支部長들의 의견에 따라 倍数공천을 하고 종다수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 倍数공천 결과 아래 10人이 공천되었으며 그중 金春培, 安箕泰, 金忠得, 세会員은 공천을 사퇴한채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결과 (재석48)

金圭泰, 宋寬植, 曺龜鉉, 金春培, 金亨培

5名이 이사로서 선출되고 감사선출은 서울에서 1人 지방지부에서 1人을 선출한다는 원칙에 합의, 무기명 투표 종다수로 선출하였다.

개표결과

박 성 규	(서울)	18표
이 종 수	(부산)	24표

이상 임원 선출을 끝내고 신임 金萬盛 会長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제13회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 건축사 보수교육 실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78. 11. 7일부터 3일간씩 건설연구소 훈련원에서 건축사 보수교육이 실시중에 있으며 교과목과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및 교수진

건 축 법	건설부건축과장	김영철
건축의장	홍익대학교교수	윤도근
고 건 축	삼성건축대표	장기인
건축계획	한양대학교교수	김진일
소 방 법	내무부소방국	고재모
외국의건축	건우사 대표	강석원

2) 교육일정

제 1 기	78. 11. 7 ~ 9
제 2 기	11. 14~16
제 3 기	11. 21~23
제 4 기	11. 28~11. 30
제 5 기	12. 5 ~12. 7
제 6 기	12. 12~12. 14
제 7 기	79. 1. 16~1. 18
제 8 기	1. 23~1. 25
제 9 기	2. 6 ~2. 8
제10기	2. 13~2. 15
제 11기	2. 20~2. 22
제12기	3. 6 ~3. 8
제13기	3. 13~3. 15
제14기	3. 20~3. 22
제15기	3. 27~3. 29

1급 건축사들은 1기부터 7기까지로 보수교육이 끝나며 2급 건축사들은 8기부터 15기까지로 79년도 부터 실시예정이다.

현재까지의 보수교육 수료인원은 1기에 94명, 2기에 124명, 3기에 129명으로 모두 347명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공청회개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안)연구위원회에서 성안된 안에 따라 1978. 1. 24일 14:00시에 건설협회 대강당에서 건축계 전반(교수, 공무원, 건설회사, 협회회원,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개정(안)을 토론하였으며 참석인원은 170여명이 참석하였고 공청회 종료후 건설연구소 소장에게 성안(안)으로 제출(보고)하였다.

건설부건축과장의 열강

교 과목을 경청하는 회원

監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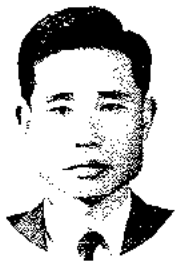

楊 尚 奎

본 감사는 정관 제15조 4항 및 감사규정 제2조 제3조에 의거 제13회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 서면으로감사보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수로 2회에 걸친 본부 및 지방 출장감사를 바롯하여 15회에 걸친 본부이사회 참석결과 및 공적으로 표면화 되여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물론송구스럽게도 감사 개인이 사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서도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나름대로 분석 보고하게 되였음을 미리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 입니다.

13년이라는 결코 짧지도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 협회는 한마디로 말해 사회적, 변천 회원증수의대 방대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였을뿐 아니라 정관 제3조에 명시되여있는 품위보존 상호친목), 권익옹호 등의 목적에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국 건축사 개인 개인의 성실하고도 꾸준한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겠읍니다만 이자리에 모이신 수임받은 우리도 본의 아니게받은바 책무에 소홀히 했거나 소홀히 할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인 사실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어야 할것으로 믿어 집니다.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장기간 계속되여온 급별간의 불협화음 근간 크게 물의를 일으켜 온 2급건축사의 재시험문제, 지부실정, 나아가서 전 회원의 뜻에 위배되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고질화 되다시피한 사무직원의 본연의 자세의 미흡 또한 시간적 경제적 마이너스를 강요받는 명예적(무보수)임원에 대해 무한책임을 물으려는 현실등은 우리 협회를 정상궤도에서이탈케 하는 큰 요인이 되였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의 협회로 전락케 한 원인이라고 믿어 집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조용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양보 하는 미풍속에 신중히 문제해결에 임하실것으로사료되오나 본감사의 천견도 여기에 피력하여 감사보고에 대하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앞에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의 중지와 힘을 하나로 합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외의에 힘을 빌릴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겠읍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별간의 불협화음 2급건축사의 재시험문제 등은 지금 당장 누구도 자신있게 해결해낼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이문제야말로 깊은 대화를 통하여 우선 상호 신뢰하는 풍조를 조성한후 조급하지않게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하지 않을수 없음을 가슴아프게생각합니다

둘째, 예산문제에 대하여는 통합예산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예산작성과정과 예산심의때 부터 큰 문제가 내포되여 있읍니다. 지부실정은 아예 무시된채 에년에비해 회원수에 비해 다소 가감을 한후 본부우위로 짜여진 예산안을 반나절동안 지부장 연석회의라는 요식을거쳐 황급히 총회에 제출됩니다만총회에서도 회순에 따라 업무보고, 감사보고 질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 안에 다소 시간을 소비하고 나면 회의장 관계로 1일 총회를 폐회하여야할 시간이 임박해지는 형상 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연 예산심의는 소홀히 해지고 소홀히 심의된 예산안은 급기야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승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회무를 집행해 나가다보면 그제서야 이런 저런 작고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불평불만이 싹트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럴바에야 최소 예산총회만이 라도 2일로 하든가 예산상 2일총회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위임받은 일부 지방대의원을 모시고 충분히 검토 연구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각 지부실정에 알맞는 예산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부는 각지부에서 올려온 자금으로 작은 지부는 큰 지부에서 소액이나마 보조하여준 자극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묵과하여서도 문제해결에 보탬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발전 나갈수록 예기치않게 급변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본부의 차량비 사업비는 모자라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지부는 암말말고 예산대로 집행하라는식 외일방통행은 우리 협회입장으로는 그리썩 좋은 일은 못됩니다. 실제 남은 예산은 회수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엄밀히 검토한 후 내려보내야 하는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사무직원의 문제입니다. 이유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그들은 확실히 타기업체에 비해 저렴한 보수를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승진의 기회도 별로많지 않읍니다. 그러다보니 장기간 같은자리에 근무하게 되는 예도 많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주 임원(명령권자)을 갈아치우자는 풍문도 자주 귀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은 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부업과 새직장을

찾게되고 부업을 마련한 사람은 부업이 주가 되고 협회일은 부가 되며 새직장을 찾지못한 사람은 새직장을 찾을때까지 월급이나 받아쓰자는 식으로 우선 정신상태부터 나태하여지고 이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보수만큼도 일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절약이며 어디까지가 낭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긋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급 받는 보수만큼도 일을 안하는 직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낭비하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주인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관관계에 놓여있읍니다. 업무량을 줄여보는 연구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정원을 줄여 줄인만큼 보수를현실화 하든지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기타 불급의 예산을 줄여 현실화 하든지 간에 일단 응분의 대우를 보장하여 자발적으로 열의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기풍을 조성시켜줌과 아울러 직무를 성실히수행치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주로써 하시라도 떳떳하게 가차없이 책임을 물을수 있는 관계개선작업이 반듯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넷째, 명예직 임원에 대한 제반 문제입니다. 회원수가 1,800 명에 육박하게 되였으며 예산도 5억을 넘는 방대한 협회가 되였읍니다. 이렇게 방대한 협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장없이 운영해 나가자면 현정관으로 보아 명예직인 회장과 총무이사는 매일 협회사무실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사업을 포기하고 협회일만에 전념할수있는 임원을 선출하기란 지극히 곤란한 문제일뿐아니라 설사 그런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의 생활보장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 사무실과 협회를 하루 한두번씩 왕복하며 자기 사무실과 협회의 양립을 기도하나 초능력이 아닌 인간인지라 양쪽이 다 하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건축사이지 행정직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커다란 실수를 저질르는 경우도 발생하며 때에 따라 조령모개식의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점잖은 힐책을 받는 수도 있읍니다만 좀 악화되면 불신임 운운하는 문제까지도 비약됩니다. 즉 여러분의 손으로 선출한 임원을 여러분이 직접 불신임하게 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합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임 받을만한 임원을 선출한 원인행위자는 다른사람이 아닌 여러 대의원들이라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정관상으로 볼때 지부장 대의원, 분소장도 지방임원인 동시에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임에 틀림없읍니다. 어딘가 잘못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없이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임기동안만이라도 우리들은 존경할수 있는 회장을 모셔야 하며 이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받들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본부 임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는 안되며 나쁘게 말해 권한도 대폭축소하여 불신임 운운의 요인을 극소화하고 그대신 유보수의 상임이사 제도라도 채택하여 회무를 전담시키는동시 엄중한 책임도 물을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언하고저 합니다 본 지부를 막론하고 회계질서는 많이 향상되였으나 아직 섭외비, 경조비, 홍보선전비, 여비등에 대한 사용목적과 방법이 미흡하여 제반업무에 전국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여 있으나 4, 5일간의 사무처직원 강습회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물품검수제도가 보완되어야 할것입니다. 사무착오로 인한 다소 부당지출도 발견되였으나 고의적이며 비양심적인 처사는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환수 또는 시정조치로 종결하였음도 보고합니다. 업무면에 있어서 본부 집행부는 시행령개정 과정에 있어서나 수백명의 회원이 행정조치를 당하는 마당에 있어서나 세율인하문제 건축억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 사무처장 임명등 여러중요 당면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통단하는 동시 재임 6개월동안 아껴주신 여러분과 같은 배로 같이 항해한 본부임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사의를 표하며 감사보고를 끝맺습니다.

경북지부회원 사무소 이전

성 명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면허번호	월 일
손 재 수	손재수건축사무소	경주시노동동129－31	2526	38	1－487	9. 26
김 준 필	동한건축	대구시동구범어동13－10	22－0795	1－43	1－756	9. 21
조 기 보	동남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동구범어동13－10	44－1666	1－10	1－146	9. 21
라 정 도	정밀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동구범어동13－10	44－1666	2－28	2－159	9. 21
이 영 기	동아건축설계연구소	경주시황오동109－2	4313	145	2－936	9. 9
정 원 성	부림건축설계사무소	월성군안강읍안강리348－3	2040	1	1－769	11. 7
심 상 화	황제건축설계사무소	칠곡군왜관읍왜관동251	211	1	1－1480	11. 7
윤 영 도	한국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중구삼덕동1가1－10	45－6328	1－35	1－757	11. 10
최 종 언	동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4－0195	2－2	2－932	11. 10
안 준 원	동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4－0195	2－3	2－713	11. 10
이 동 근	동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4－0195	2－11	2－1282	11. 10
김 홍 대	동부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4－8688	1－44	1－1347	10. 4
정 재 수	동부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4－8688	2－81	2－1059	10. 4
민 병 덕	동부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4－8688	2－82	2－490	10. 4
김 건 일	동부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동구범어동184－1	46－8688	2－83	2－1425	10. 4
이 지 관	삼안건축설계사무소	의성군의성읍후죽동486－21	1231	2－64	2－148	10. 5
이 홍 로	신홍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삼덕동1가1－10	44－6865	1－27	1－980	10. 5

경남지부회원 사무소 이전

최 봉 형	현대건축설계사무소	마산시중앙동3가4－10	2－5218	마산2호	2－1397	10. 10
이 강 진	합성건축설계사무소	마산시중앙동3가4－10	2－8967	마산8호	2－1600	10. 10

부산지부회원 사무소 이전

김 순 종	시대건축설계사무소	서구당리동38부록15놋트	42－4788	2－8	604	9. 4
박 명 수	아세아건축설계사	남구남천동6－13	66－5656	2－77	1604	10. 7
방 진 관	성광건축설계사	남구남천동7－8	68－2279	2－12	538	10. 11

전남지부회원 사무소 이전

이 덕 로	정도건축연구소	여수시중앙동500	2284	7	1－506	10. 28
구 천 모	구천모건축설계사무소	여수시중앙동500	2284	17	2－181	10. 28
김 용 정	동화건축설계사무소	여수시중앙동500	2284	2	2－1596	10. 28
조 도 인	조일건축설계사	여수시중앙동500	2284	4	2－1449	10. 28
황 종 순	황금공무소	여수시중앙동500	2284	16	2－182	10. 28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안　　의　　모
명　　칭 : 안 건축
소 재 지 : 강서구등촌동398－14
전　　화 : 65－1333
면허번호 : 2－1103
등록번호 : 2－493
월　　일 : 10. 12

부산지부 신입회원

본　　적 : 경남
성　　명 : 김　　강　　웅
명　　칭 : 대명건축설계사
소 재 지 : 동래구명륜동339－7
전　　화 : 52－4418
면허번호 : 2－834
등록번호 : 2－134
월　　일 : 9. 27

경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 부산
성　　명 : 배　　성　　봉
명　　칭 : 대림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충무시서호동177－19
전　　화 : 3984
면허번호 : 2－533
등록번호 : 충무 2 호
월　　일 : 11. 1

본　　적 : 경남
성　　명 : 안　　상　　익
명　　칭 : 삼부건축설계사
소 재 지 : 남구남천동 7－8
전　　화 : 68－3272
면허번호 : 2－1793
등록번호 : 2－135
월　　일 : 9. 29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제23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10. 30
2. 장　　소 : 본협회의실
3. 결의사항 : 가) 제13회 정기총회에 따른 제반사항 및 회순결정
　　나) 경기도 성남분소 소속직원 이후손 을 회장표창 대상자로 결의
　　다) 1978년도 협회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협회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승인
　　협회상 : 한양공대 교수 김진일
　　협회상 : 건원사 건축연구소 황일인
　　우수상 : 삼아건축연구소 김지태
　　우수상 : 우신건축연구소 김인석
　　우수상 : 금성종합설계공사 김홍식
　　우수상 : 우림 콘크리트 문재경
4. 참　　석 : 회장 : 강봉진
　　총무이사 : 김 두섭
　　이사 : 박 우하
　　한 영수
　　유 경철

제24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11. 6
2. 장　　소 : 본협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입회비 면제 특혜조치의 건
　　나)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건
4. 결의사항 : 가) 협회 사무인계인수는 신임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서류를 건설부에 제출한 익일 하기로 결의
　　나) 회원 교육비 부족금액은 직원 교육훈련비에서 사용키로 결의
　　다) 전 안의모 사무처장의 입회비는 전례에 따라 전액 면제키로 결의
　　라) 78. 10. 서울신문에 공고 모집한 사무처 직원 최종 결정의 건은 신임 임원진에게 위임 처리키로 결의
　　마) 충북 충주분소 재 설치의건은 건설부에 상신한 질의 회신에 따라 결정토록 결의
　　바) 동아연감대금 2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결의
　　사) 워싱톤 한일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지부에 의뢰해온 초청경비 소요금액 236$에 관한 건은 신임 임원진에게 위임토록 결의
　　아) 감사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및 임원 불신임 연판장 대표 서울지부소속 나영균회원과 서울지부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의
　　자) 감사요구에 의한 서울지부 사무국장을 징계위원회에서 회부키로 결의
　　차) 감사요구에 의한 경상북도 지부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의
5. 참　　석 : 회장 : 강 봉진
　　총무이사 : 김 두섭
　　이　　사 : 박우하, 한영수, 유경철

제11회 편찬위원회 개최

1. 일　　시 : 1978. 11. 16(목) 16 : 00시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토의안건 : 가) 10월호 회지 합평 및 11월호 편집계획(안) 검토
　　나) 기타사항
4. 참　　석 : 위원장 : 유경철
　　위　원 : 이문보, 정일영, 오창희, 윤도근, 안기태

朝鮮後期 서울·京畿地方 上流住宅의 平面構成에 対한 研究

金 鴻 植

序 論

1. 문제제기

서울 京畿地方의 상류주택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상류주택의 규범이 되었으리라고 추측되어지며 대다수의 상류주택들이 이 지방에 집중되었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세한 것은 다음장에서 설명된다)그러한 주택의 지금 현존하는 숫자는 얼마되지 않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가 심한데 일부 또는 대부분이 헐려서 완형(完型)을 찾아보기 힘들고 한옥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인 ―건물과 건물이 이루는 공간구성의 맛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채 있고 그 완형을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여러 채가 되어서 상류주택 평면구성에 있어서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기초자료는 서울 京畿地方에만 국한하여 조사하였는데 그것은 이 지방의 자료를 전국에 확대적용해도 크게 다른 결론이 얻어지지 않으리란 이유에서 이다. 이번에도 역시 필자는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주장에 입각하여 모든 자료를 직접조사하여 얻어냈다 필자는 발표된 몇편의 논문과는약간 다른 관점에서 ―민가를 관찰하면서 얻어진 시각으로 상류주택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류주택이란 평면형태에 있어서 민가와 엄격하게 구분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외적인 규제에 의해서 구분되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규모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상류주택도 그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민가와 유형을 같이하여 상류주택의 평면구성이 민가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민가의 기본적인 평면구성이 확대되고 결합되어 상류주택의 평면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상류주택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형태는 민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2. 調査經緯

본 논문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3차례에 걸친 현지조사자료를 참고로 한 것이다. 1차 조사는 都城內民俗景觀地域調査로서 1976년 10월―12월사이에 張起仁, 朱南哲, 筆者가 조사한 것이며 2차 조사는 1차調査에서 빠진 건물을 都域內外를 막론하고 1977년 4월―6월 사이에 필자가 조사한 것이다. 3차 조사는 京畿道韓屋調査로서 1978년 3월―6월 사이에 筆者가 京畿道의 위촉을 받아 조사한 것이다.

1차 조사는 수백채의 대상가옥 중에서 대략 50채를 고른 가운데 다시 17채를 세밀히 조사한 것이고 2차 조사 때는 19채 가운데 10채를 조사했으며 3차 조사에서는 71채 가운데 19채를 세밀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주택용도로 쓰이는 43채를 본 논문의 기초자료로 하였다.

여기에서 3채는 京畿道韓屋調査에서 강화도의 대한성공회 건물과 수원의 민가(벽이 가운집) 및 坡州의 民家가 상류주택이아니어서제외되었다 또한 이중에서도 2채는 평면실측이 되지않아서 제외하였으며 건물의 일부만이 남아 있어서 전체를 알아 볼 수 없는 雲泥洞 崔氏家 社稷洞 도정궁 加平 李氏家도 역시 자료로 삼을 수가 없었다 明倫洞 金氏家와 德成女大 生活館은 그 용도에 있어서 前者의 경우 祠堂의 성격을 띠고 있고 後者는 別莊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본 논문의 성격과 맞지않아 자세한 설명은 피하였다 나머지 집들을 분류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用語解說

필자는 이미 발표된 몇차례 논문을 통하여 민가평면의 명칭을 나름대로 사용해왔다.

그러한 것들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용어에 대하여 간단한 개념정리를 하여서 논리를 전개해나가는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원용 소유주	소 재 지	규 모	건축시기	조사일
一字型	明倫洞 金氏家 金鍾玉	鍾路区 明倫洞 三街 十五		200년전쯤	76. 12
ㄱ字型	조흥은행 관리가 産業銀行	中区 三角洞		150년 전쯤	76. 12
ㄷ字型	원서동 白氏家 백흥범	종로구 원서동 9의 5		70년 전쯤	76. 12
	관훈동 李氏家 이진승	鍾路区 實勳洞 30의 1		200 년 쯤	76, 10－11
工字型	産銀管理家 産業銀行	종로구 가회동 178	82평	1920년이후	76. 11
	慶雲洞 閔氏家 閔익두	鍾路区 慶雲洞 66		1940년경	76. 11
	城北洞 조氏家	城北区 城北2 洞 248		70～80년 전쯤	76. 11
ㅁ字型	옥인동 윤비家 信託銀行	鍾路区 옥인동 47		100년전쯤	76. 11
	華城 羅氏家 羅允錫	京畿道 華城郡 峰潭面 분천리	28칸52평	100년전쯤	78. 5
튼字型 ㅁ	水原李氏家 李秉元	京畿道 水原市 芭長洞 383	16칸 31.8평	1888년	78. 5
	楊平 金氏家 金貞植	京畿道 楊平郡 楊平面 倉垈里 203	27칸49평	200년전쯤	78. 5
	楊平 李氏家 李遇善	京畿道 楊平郡 楊平面 壹門里 535	14칸27평	250년전쯤	78. 5
旦字型					

①様式：시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평면구성을 상호 비교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말.

②形式：계층별로 평면구성이 다른 것을 구분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말.

③型：지역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취향에 의하여 구분되는 평면구성.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様式이나 形式의 구분은 필요치 아니하고 型의 구분만 사용된다.

④一学모양 안채에 있어서 건물의 전체적인 외모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一字로 된 집

⑤ㄱ学모양：안채에 있어서 집의 외모가 ㄱ字 모양으로 된 집. 따라서 여기서는 시대, 계층, 지역을 막론하고 그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택구성에 있어서 기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⑥양통집：방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田学모양으로 방들을 2중으로 배치한 집. 구조적으로 중앙에 기둥이 있다(3평주 5량집)

⑦외통집：방의 배치가 한줄로만 되어 있는 집.

⑧겹집：외통집의 앞뒤에 퇴를 달아서 집의 규모는 양통집과 같으나 방의 배열에 있어서 양쪽 끝 간살이를 상하로 나누어서 양통집과 유사한 모습을 갖춘 집 가운데 기둥이 없는 2고주5량 또는 2고주7량집을 말한다.

따라서 様式, 形式, 型은 전체적인 주택의 규모와 구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명칭이고 一学모양이나 ㄱ学모양은 집의 생긴 외모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다. 양통집, 외통집, 겹집은 평면 간살이를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다.

⑨맞배집：일반적으로 박공집과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필자가 옛 목수들과의 이야기에서 얻은 결론은 박공집은 지붕의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맞배집 이란 맞걸이 3량배집이란 뜻으로 세마루집에 천정이 없이 배의 밑바닥처럼 서까래가 노출되는 제치장 반자(연등천장)집을 말한다.

4. 調査概要

필자는 건축기법에 따라 건물의 건축시기를 측정했는데 그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장려가 있는 집은 시기가 뒤떨어지고 헛창 방이 있으면 더욱 늦은 집이며 상도리 아래 헛창방과의 사이에 화반이 끼어 있으면 가장 시기가 떨어진 집으로 보았다. 그러나 집을 소유한 사람의 지위가 높다든가 소유주가 부자인 경우에는 당(當)시대를 앞서가는 구조기법을 사용하는 수가 있었고 이것이 후에 사람들의 모방의 표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따라서 같은 구조를 갖은 집이라도 그 소유주에 따라 건축시기를 약간 달리할 수가 있었고 같은 시대의 집이라고 해도 그 건축기법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란 일반적 인사례는 아니다. 물론 납도리가 굽도리 보다 선행한다든 시기의 전문이라든가, 부연를 단 집이 구한말에서 일제가 하는사실들은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Ⅱ 本論

1. 一字型

一字집의 기본적인 형태는 왼쪽에(대체로 西쪽-左石가 바위는 예가 상당히 드물다) 부엌을 두고 다음에 안방, 가운데에는 대청, 그리고는 그 오른쪽 옆에는 퇴마루가 시설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안방은 좌우 2칸을 터서 크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은 경우로서 가운데 좌우 2칸을 대청으로 삼는다. 보통 건너방은상하 둘로 나누어서 이용한다. 이러한 형태의집은 일반적으로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김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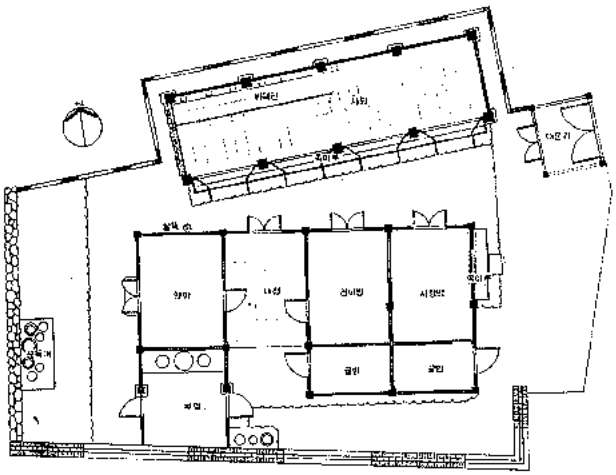

평면도

명륜동 김 씨가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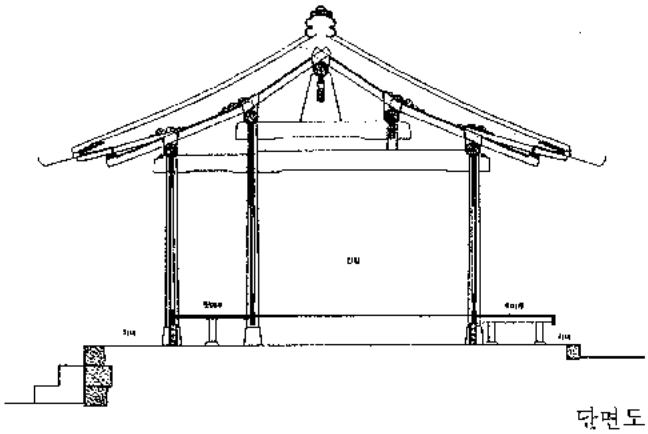

단면도

② 明倫洞 金氏家〔그림 1 참조〕

이 집은 기본적으로 二字(두이字) 건물인데 뒤쪽에는 사당채를 놓고 앞쪽에는 고직이 집을 둔 집이다. 따라서 용도가 특이한 것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살림집은 아닌 듯 하다. 고직이 집은 많이 변형이 되어 있지만 맨 위쪽에서 부터 안방, 대청, 건너방 2칸을 마련하여 오른쪽 끝방은 사랑방으로 이용한 듯하다. 이집의 특징은 부엌이 안방의 왼쪽에 오지 아니하고 중부지역에서 많이 볼 수있는 것처럼 안방의 앞쪽에 시설되는데 다만 전퇴만 만들어 져서 집의 전체적인 모양은 一字를 이루고 있다. 대청의 앞은 전면으로 개방되어 있고 퇴는 흙마닥인데 이것이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특징이며 남부지역의 一字와 다른점이다. 골방은 건너방과 사랑방의 앞에 만들어 지는데. 원래부터 있었는지는 의심스러우며 다만 뒤에 있는 사당 때문에 뒤로만 문이 나있는 특수한 형태를 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뒤의 사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세마루 집이다. 흥미있는 것은 고직이집과 나란히 배치된 것이 아니고 입구(대문간)쪽으로 벌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좁은 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점이다.

2. ㄱ字型

① 조흥은행 관리집 (중구 삼각동) 〔그림 2 참조〕

ㄱ字집의 일반적인 형태는 왼쪽(서쪽) 앞으로 부엌을 두고(부엌광이 딸리는 경우가 있음) 뒤쪽으로 안방과 웃방이 놓이며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보통 2칸 크기의 대청이 만들어진다. 대청의 오른쪽 끝에는 건너방이 들어서고 그 앞에 들마루가 놓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집은 부엌 앞쪽의 박공처리방법과 대청가운데 高柱를 세운 기법으로 보아 대단히 오래된 집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엌앞의 선반을 받치고 있는 까치발의 당초문양과 뒤쪽 쪽마루에 시설된 난간의 기법은 조선말기

삼각동 조흥은행 관리집 그림 2

사랑채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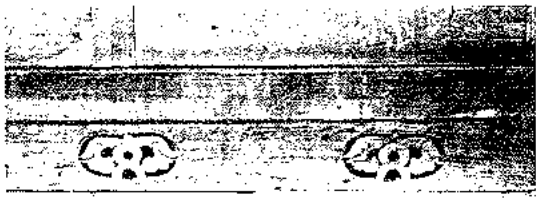

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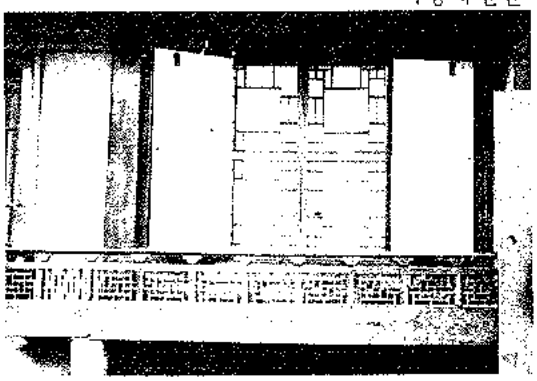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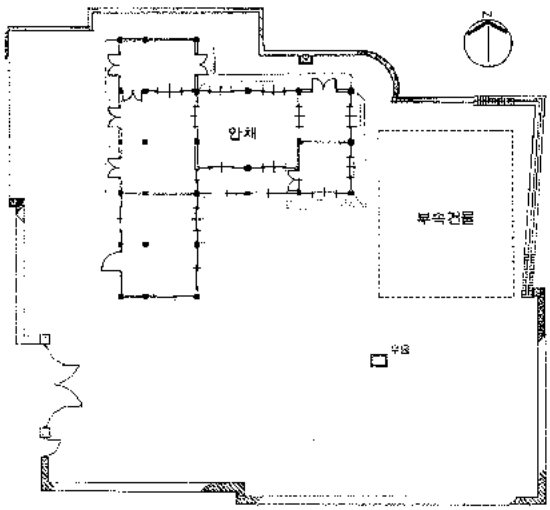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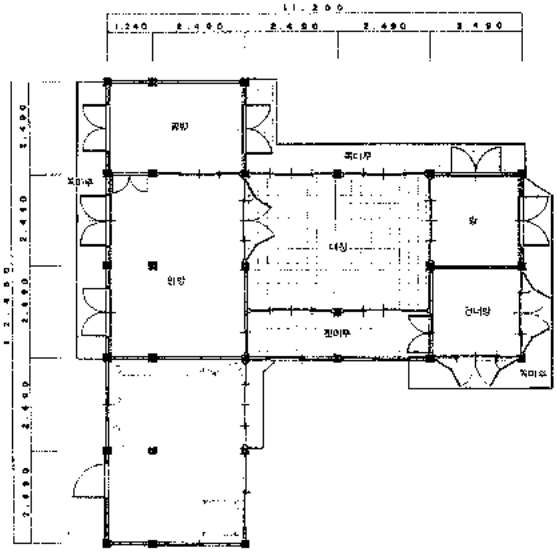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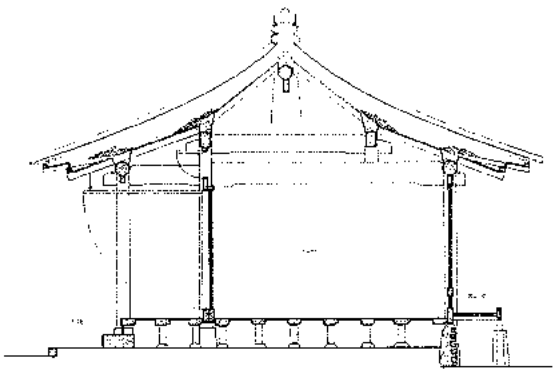

(19세기 초)의 건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 중간에 개조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고 특히 최근에 많이 개조되어 평면의 원형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집이 일반적인 ㄱ字 집과 다른점은 안방 뒤에 골방이 (일반적인 ㄱ字집에서도 골방이 자주 배치됨) 뒤쪽으로 내밀어서 전체적인 모양이 T字가 되고 있으며 건너방이 앞의 들마루 없이 상하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방은 문의 형태로 보아서 원래는 누마루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 집은 원래 여러 채의 집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근본적으로는 ㄱ字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지만 편의상 ㄱ字집으로 불렀다. 이집의 구조는 중부지방에서 가장 널리 존재하는 1고주 5량이다. 그리고 ㄱ字집의 형태는 앞으로 설명되는 모든 집의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

3. ㄷ字型

① 백호범氏家〔그림3참조〕

이 집은 연대가 낮은 집으로 1900년대 초에 유행하던 평면형태이다. 이러한 평면은 크게 개량되지 않은 채 6. 25직전까지 보급되었었다. 집은 전체적으로 든ㄷ字 모양을 이루고 있고 대문은 동남쪽에 있으며안채는 대청에서 볼 때 남서를 향하고 있다. 안채는 전형적인 ㄱ字 모양인데 부엌과 안방의 방향이 북서쪽을 향하여 있어서 대문이 부엌쪽을 향하여 있는 모습이다. 부엌은 1칸이고 서쪽에(앞쪽) 1칸 크기의 방이 있는데 이것은 부엌광 대신에 도시형으로 개조된 모양이라고 보여진다. 안방, 대청, 건너방의 배열순서는 중부지방의 전통적 배열과 같은데, 건너방은 1칸반 크기이고 퇴마루를 마당쪽이 아닌 대문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건너방이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문의 西쪽에는 1칸방이 마련되어 전체적으로 ㄷ字를 이루는데 이것이 소위 문간방이라는 것이다. 구조는 대청중앙인 경우 긴보 5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걸이 3량이다. 따라서 이집은 연대가 오래된 집은 아니다.

② 관훈동 李氏家〔그림 4 참조〕

이 집은 전체적인 평면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안채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집 역시 건물의 규모나 구조기법으로 볼 때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평면의 기본적인 형태는 一字모양으로 부엌을 왼쪽(북서)에 두고 안방, 대청, 건너방의 순서로 배열했다. 그런데 건너방 앞에는 서양식 홀과 같은 커다란 대청(3칸×3칸)이 만들어져 있고 부엌 앞에는 행랑채가 연결되고 맨앞쪽의 끝에 대문이 乙字 모양으로 나 있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ㄷ字모양을 이루는데 부엌 뒤에 부엌방이 달린 행랑채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꼬리가 달린 ㄷ字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집

부엌정면

대청

사랑방

배면

원서동 백씨가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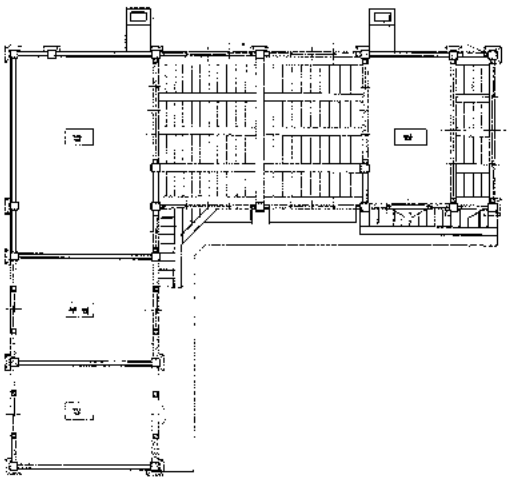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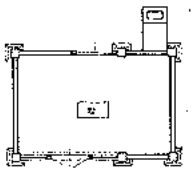

백호범씨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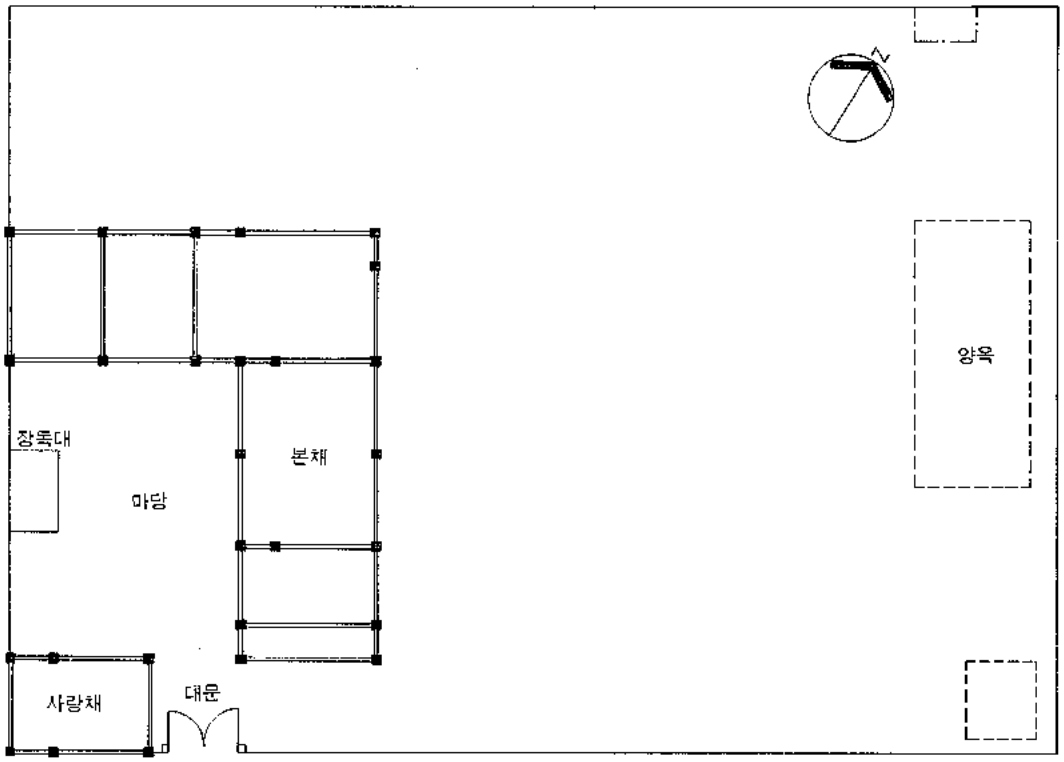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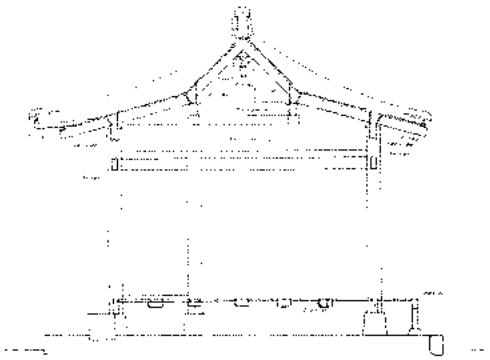

단면도

관훈동 30－1 이진승 씨댁(부마댁) 그림 4

은 집의 규모나 모양으로 볼 때 전체적인 집의 일부이며 전형적인 — 조선 말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던— 건축법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구조는 二高柱七樑집이며, 상도리 밑에는 화반이 끼워지고 대공은 파련 모양의 조각을 하고 있다.

4. 工字型

① 城北洞 조氏家〔그림 5 참조〕

이 집은 1900년대 초에 지어진 — 비교적 조선 후기에 지어진 — 1고주5량 납도리 집으로서 평면구성에 있어서 외래문물과 접촉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즉 처음으로 부엌이 안방의 뒤에 가는 배치로, 앞에서 보면 부엌이 없는 굽은자((曲尺)집 모양인데 원래 부엌의 위치에는 누(樓)마루가 놓여지고 부엌 안에는 식사공간으로서 양식과 한식이 절충된듯한 찬마루가 있고 이뒤에 일본식으로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또한 건너방의 뒤에는 뒷방이 한칸 크기로 만들어져서 꼬리가 없는 工字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집은 원래의 기능이 살림집이 아니고 별장이었으며 뒷방과 찬마루의 뒷부분은 증축한 듯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집이 ㄱ字型인 조흥은행 관리家와 다른 점은 뒷방이 뒤로 내밀어 있다는 점과 골방과 부엌이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즉 ㄱ字집과는 부엌이 뒤로 간다는 점과 뒷방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집의 규모는 작으나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고 전통적인 工字집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② 慶雲洞 閔氏家〔그림 6 참조〕

이 집은 194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초기의 건축가 朴古龍氏가 설계한 집으로서 그 당시의 전형적인 工字집이라할 수 있다. 한옥의 앞뒤로 뒤마루를 두어서 복도를 만든 점이라든가, 현관을 뒷쪽에 두고 현관마루, 응접실, 누마루를 工字의 한쪽 변으로 삼아 동쪽에 배치한 점이라든가 또 건물내부에 욕실과 화장실을 둔점등은 근대적 건축가가 한옥을 근대화하려고 했던 의욕을 엿보게 한다. 이 집 역시 1900년대 이후의 건물답게 안방이 건물의 앞쪽에 나오고 부엌이 뒤로 가며 그 뒤로 부엌방과 뒷방이 배열되어 工字의 다른 한변을 이룬다. 건물의 중앙에는 대청과 건너방이 배치되고 대청 밑에는 지하실이 만들어져서 이 지하실을 통하여 각방에 불을 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 집의 평면은 후에 해방이 된 다음 주택평면의 기본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며 초기의 건축가가 전통적인 한옥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근대화하려 했던 노작(勞作)이라할 수 있다. 이 집의 구조는 2高柱 7樑인데 굴도리 집으로서 집뒤의 부엌옆에는 一字모양의 행랑채가 만들어지며 이것은 광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嘉会洞 産銀管理家〔그림 7 참조〕

이 집은 1920년 전후에 지어진 사대부집 평면형태라고

대청앞고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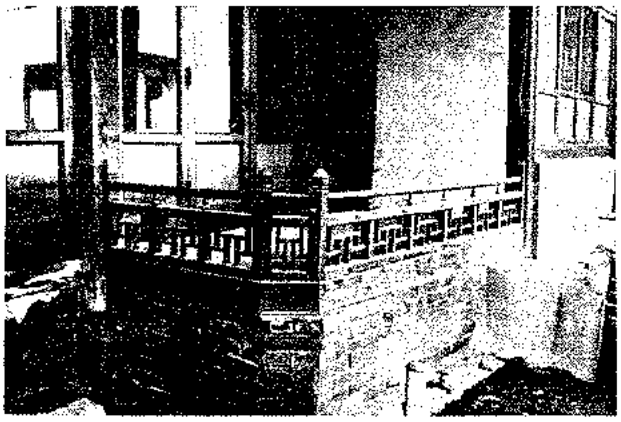

대청동측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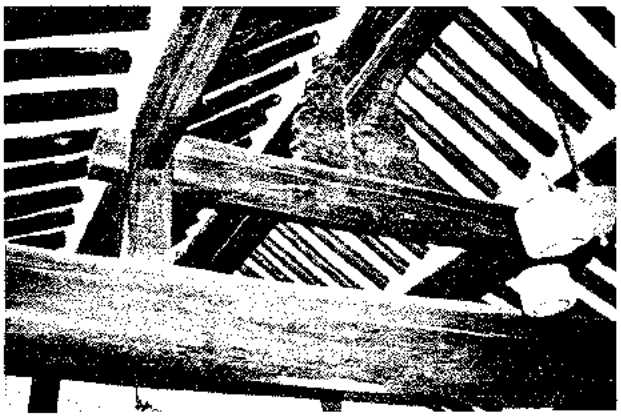

대청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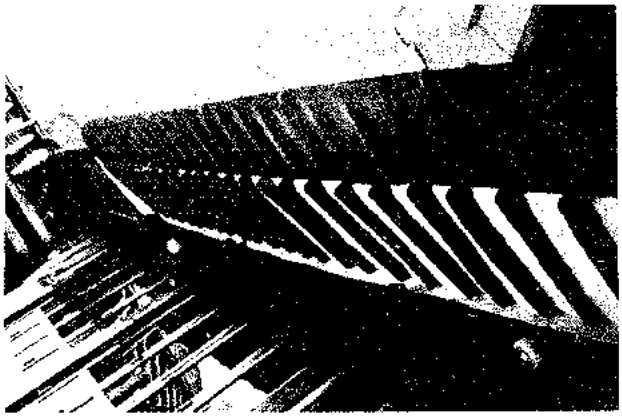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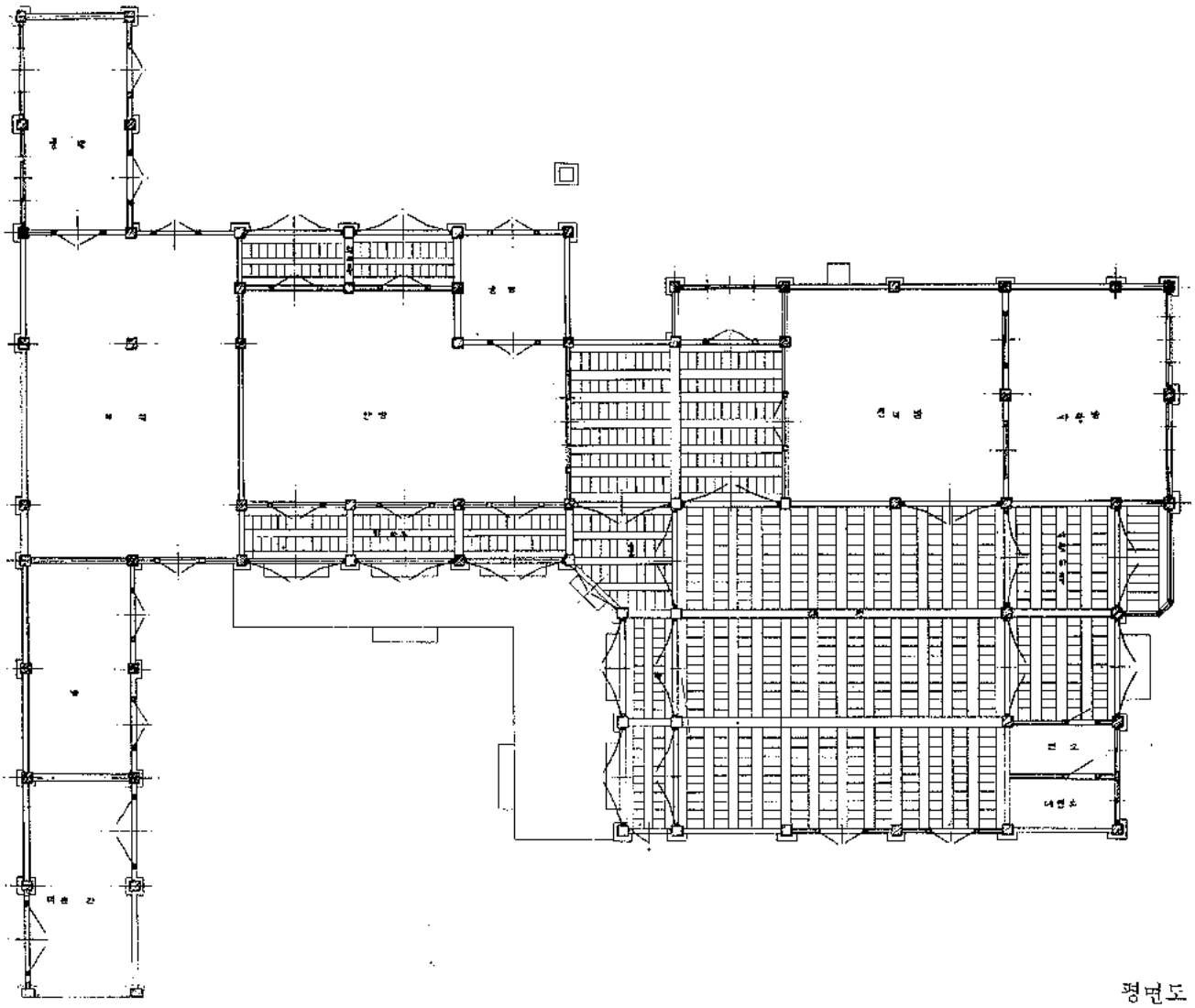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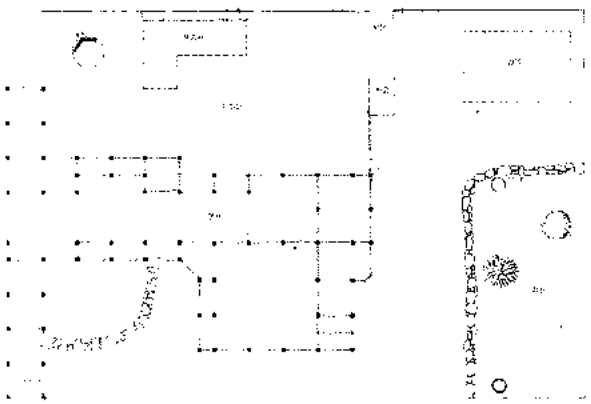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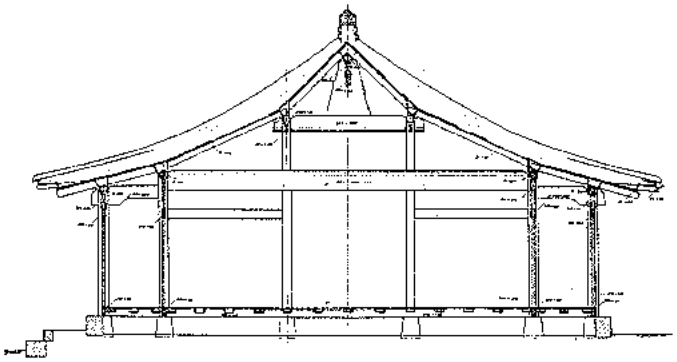

단면도

볼 수 있다. 집은 전체적으로 工字型 몸체에다 앞으로 一字型 행랑채를 달고 부엌 옆으로 역시 一字 모양의 부속사를 둔 형태이다.

몸채 안채와 사랑채가 붙어 있어서 편의상 工字型이라 부른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자면 工字型은 아니고 工字型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집은 부엌, 안방, 대청, 마루 순으로 배열되는 一字 모양의 평면구성을 근간으로 하여 뒷쪽부엌에는 부엌과 뒷방을 만들어 날개를 삼고, 건너방 양쪽에도 방들과 마루, 현관 홀, 응접실 등을 두어 다른 하나의 날개를 삼아서 王字型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현관은 중앙축을 연결하여 앞으로 지붕을 덧달아 내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대문의 행랑채는 일반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맞걸이 3량으로 되었으며 방과 부엌이 있다. 그러나 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방으로 개조된 곳이 전에는 광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부엌 뒤에는 전면 5칸 측면 1칸의 부속사가 있는데 모두 방과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북동248번지 조래혁씨댁 그림 5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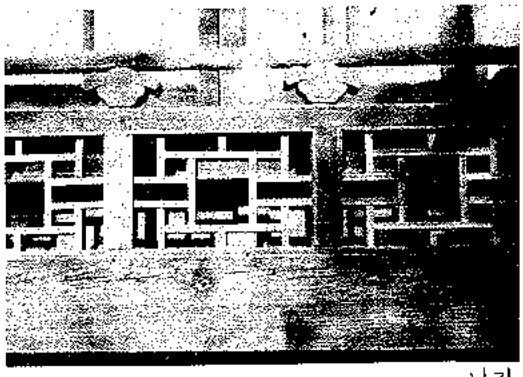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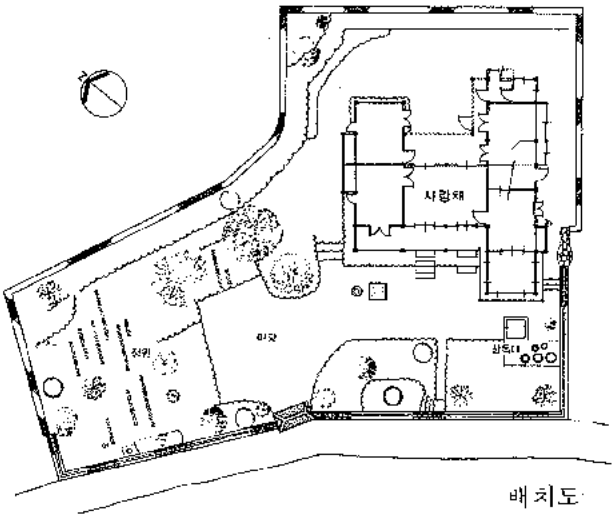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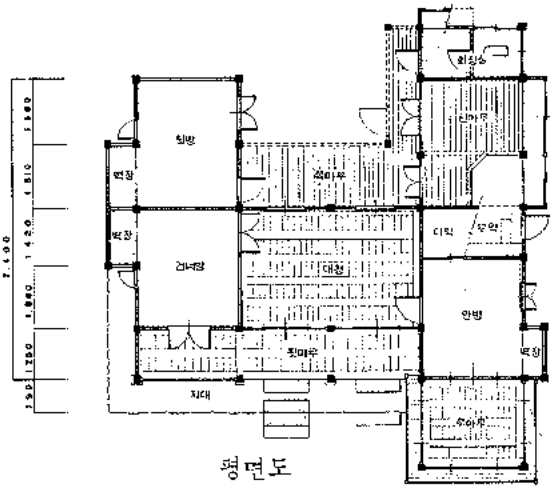

평면도

경운동 66－8번지 민 씨가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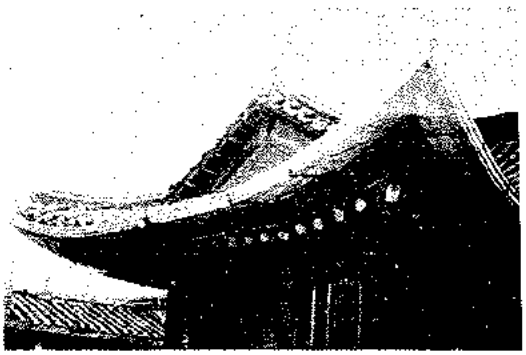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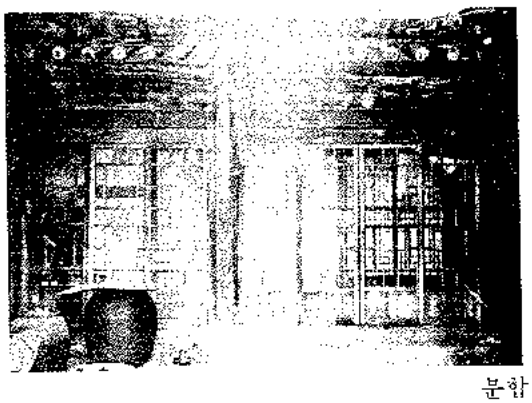

분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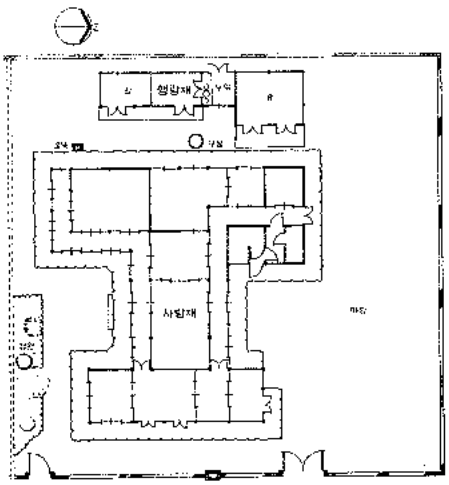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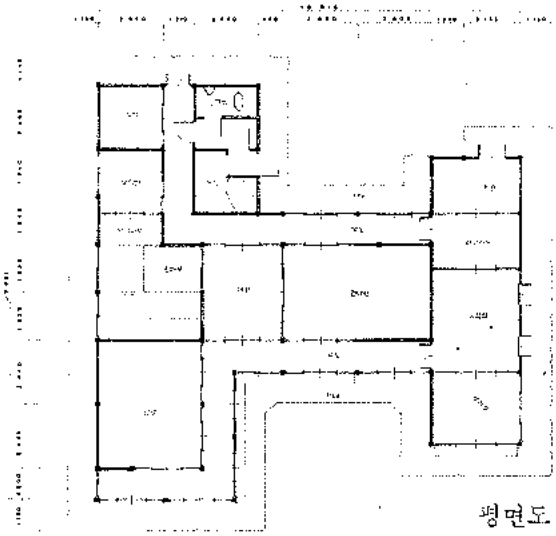

평면도

가회동 178 산업은행관리가 그림 7

대청전면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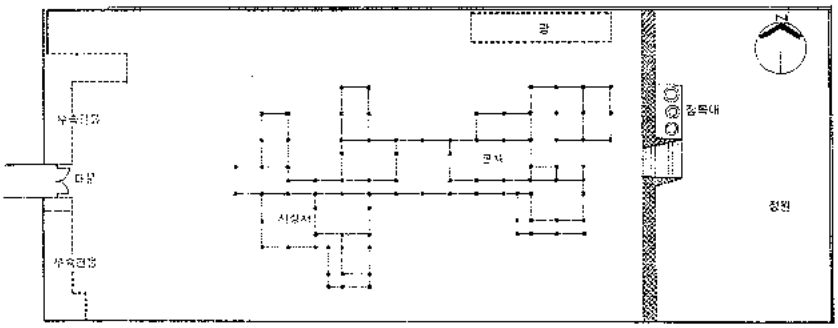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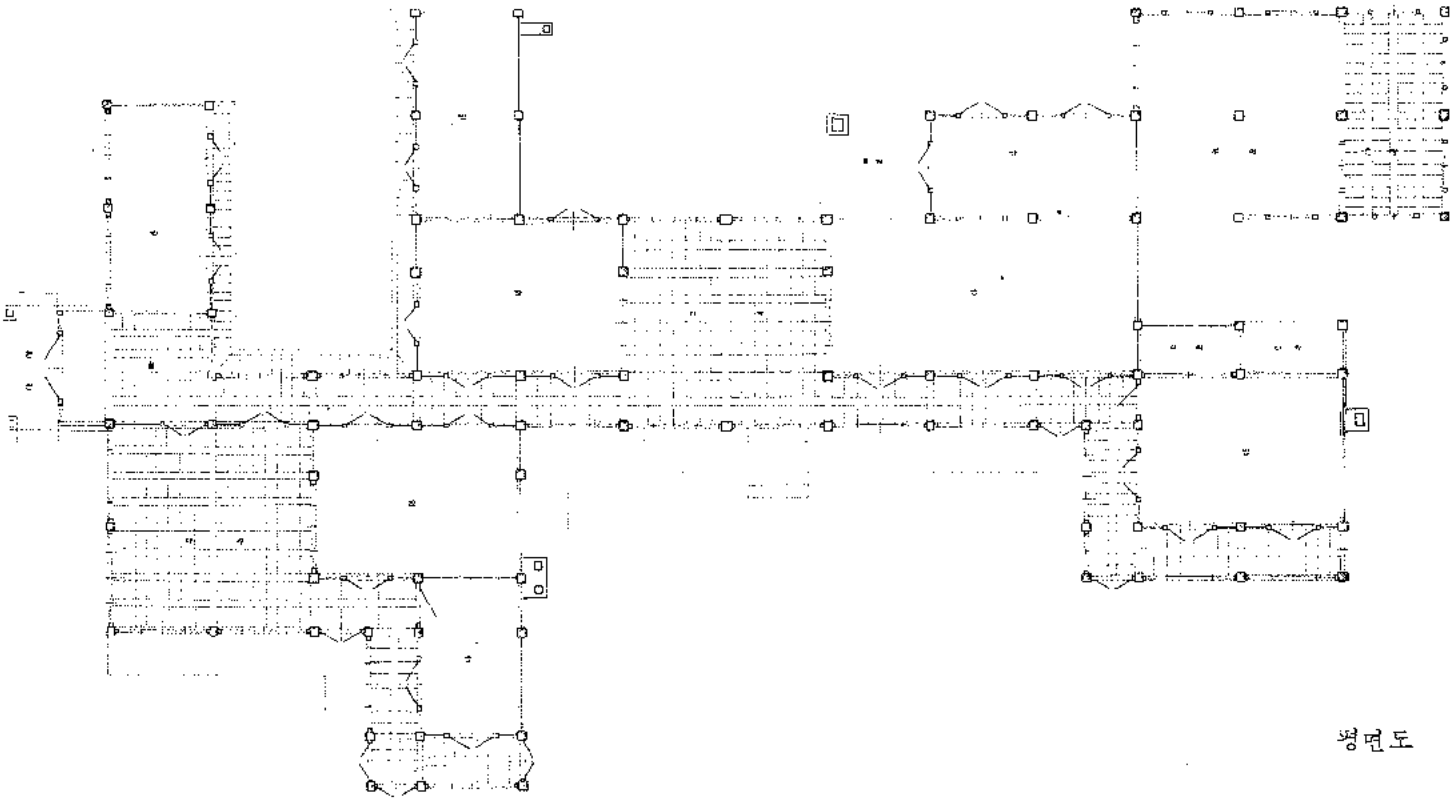

평면도

대문및 사랑평면

사랑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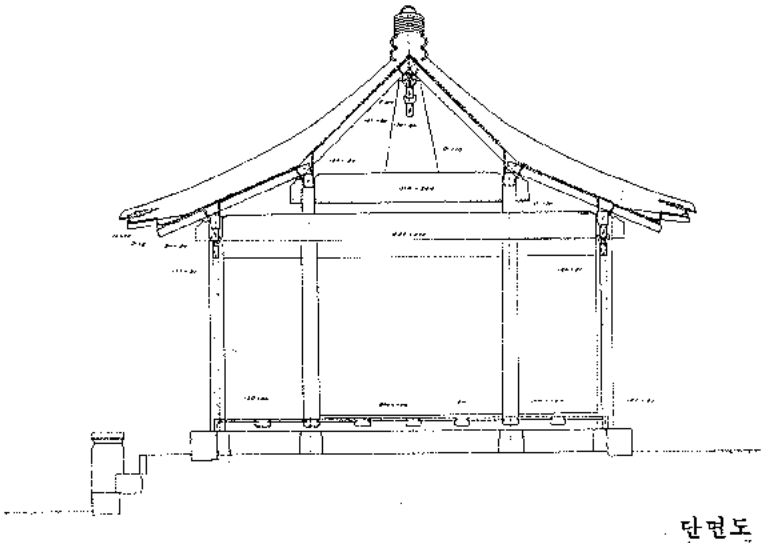

단면도

〈綜合〉

一字, ㄱ字, ㄷ字, 工字집은 규모가 작은 집으로서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집과는 규모, 형태, 공간구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전형적인 一字집과 ㄱ字집은 말로만 설명하고 図示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앞에서 예시한 집들을 보면 ㄱ字모양을 기본으로하여 발생한 집임과 一字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한 집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ㄱ字를 기본으로하는 집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짜임새가 있으며 방의 배열에 있어 일정한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앞뒤가 개방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둔채 건너방 뒷쪽에 방을 들이든지 또는 앞쪽에 누마루를 설치한다. 또한 안방 뒷쪽에는 골방을 만든다든가, 부엌이 뒷쪽으로 갈 경우 안방을 앞쪽으로 빼고 부엌 뒤에 부엌방이나 뒷방을 배열한다. 한편 一字모양을 기본으로 하는 집도 평면구성을 해 나가는데 있어 마찬가지인데 다만 특징이 있다면 방의 크기와 배치에 있어서 자유스럽고 대체로 규모가 큰 상류계층의 집이 대부분이다.

ㄱ字모양을 기본으로 하는 집에 있어서 부엌이 뒷쪽으로 가는 것은 연대가 낮은 집들의 경향이다. 집의 구성 방법은 一字나 ㄱ字모양을 기본으로 하는 집이나를 막론하고 중앙에 대청은 그대로 두고 좌우 끝의 방들에서 앞뒤로 다른 방들을 연결해간다. 일반적으로 마당쪽에서 볼 때 앞쪽은 마루를 달아내고 뒷쪽으로는 구들종류를 연결해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ㄱ字에서(一字도 마찬가지) ㄷ字, 工字(그 사이에 꼬리가 없는 工字 또는 꼬리가 달린 ㄱ字 등도 많이 있다), 王字로 발전해 간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상류주택들이 일부러 평면구성의 기본형 (예컨데 一字, ㄱ字, ㄷ字 등)에 맞추어서 건설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예로부터 그렇게 불러왔던 이유는 집의 규모와 모양을 구분해야만 그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에 분류해 왔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필자가 접했던 수많은 자료들은 문자모양에 맞지 않는 예외가 너무 많고 문자모양에 맞추려는 노력의 흔적보다는 공간을 편리하게 쓰고자 하는 의도만 역력히 보일 뿐이다. 洪萬善이 「山林經濟」에서 이야기 했듯이 ㄷ字, 工字모양이 되어야만 집의 형태가 좋지 않은 문자모양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인 듯싶다.

建築構造 이론의 発展과 課題

李 甲 造

1. 머릿말

건축분야의 탐구는 人間을 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과학, 인문과학계통의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에서 芸術性이 요구되며 構造物이라는 뜻에서 과학技術性이 필요하다.

建築士로서 업무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때, 비록 건축을 설계, 구조, 시공, 설비등으로 편의상 細分하여 취급하기는하지만 建築士는 전분야의 고르고, 광범위한 지식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의 업무가 방대하고, 또한 깊어짐에 따라 자기의 전공분야에만 置重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建築士중에 적지않은 사람은 건축의 芸術性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構造계의 관심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構造分野탐구의 진정한 의의는 난해한 公式이나 복잡한 수치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物体나 構造体로서 構造学的인 견지에서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춤으로써 합당하게 構造計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더큰 뜻이 있다.

現在 적지 않는 경우에 구조분야의 역할은 基本設計가 완성된 project 를 정확히 부재칫수나 配筋를 결정해 주는 "설계의 하녀"이었다.

이러한 構造分野의 没理解는 많은 不作用을 가져 왔으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이 분야의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써 構造이론의 발달과정을 정리하여 거왕에 배운 여러理論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또한 선진국의 새로운 構造力学의 윤곽과 우리나라 실정과 과제, 새로운 力学이론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탄성 이론의 획기적인 발달과 실험기재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일반 건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분야에 대한 理解를 돕고, 특히 관심이 큰 사람에게는 전체 윤곽을 정리한 資料로 提供코져 한다.

"우수한 건축은 構造的으로도 우수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태리 Nervi교수의 수많은 작품에서나 丹下健三의 1963년도 東京올림픽 실내수영장등에서 실감할 수 있다.

2. 構造理論의 発達과정

비록 오늘날의 構造계 資料는 난해한 기호와 복잡한 数式으로 머리를 혼란시켜 아예 손댈 엄두가 안날 지경이지만 원래는 自然에 대한 소박한 好奇心에서 出発하여 오랜 세월에 걸친 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努力으로 점철된 거대한 체제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우리들은 力学교과서를 통해서 이러한 努力의 結果를 무슨法則이다, 무슨原理다 하여 배우고 있지만, 이것들의 歴史이래로 실패와 오류도 포함하여 발전되어 나온과정을 통해서 理解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加速化된 과학기술의 배경과 함께 構造理論이 방대해 감에 따라 한 特定分野의 전반적인 면에서 位置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課題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力学이란 『힘과 변형』을 Numerically, Graphically and Experimentally 규명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 할때 힘과 운동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원시인들에게는 용이하지 않았던것 같다. 기록에 의하면 5500년전 메소포타미아의 Sumer人들이 수레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오늘날 미개인들 중에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 만든 움직이는 장치에 놀라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두뇌를 써서 힘을 절약하는 노력을 한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다.' Egypt의 Pyramid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트등은 당시 힘에 관한 탐구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이었을 것이다.

힘의 평형에 관한 법칙을 발견한 Archimedes(287－212 BC)가 "나에게 지렛대만 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서 이러한 힘에 관한 발전된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힘에 관한 理論은 우선 다른 학문의 始初와 같이 그리스의 Platon(427－347BC)의 論理的 方法論의 전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Aristoteles(384－322 BC)는 自然현상과 힘에 관한 많은 法則을 만들었으며 많은 오류도 내포하였으나 16C까지도 별 修正없이 사용되었다.

物理学의 이름아래 力学이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오늘날 학문체제에 까지 연결된 직접적인 礎石을 놓은 사람은 物理学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Galilei Galileo(1564~1642)이었다.

그는 新科学対話(1636)라는 저서에서 진자의 운동, 낙하운동, 켄티레바시험등 획기적인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力学성립의 완벽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이후의 발달과정을 도표로 작성하면 (도표-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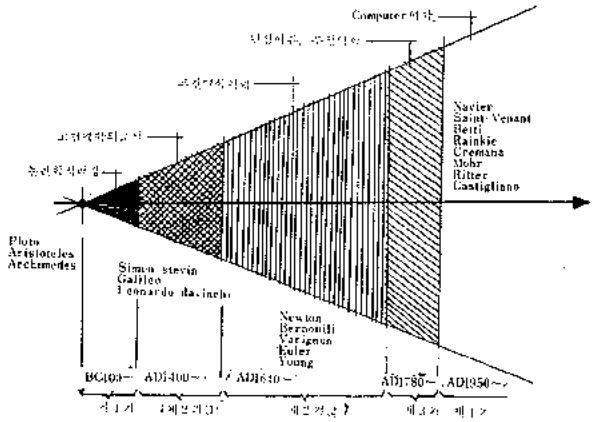

(도표-1) 구조이론의 확장과정표

이후 영국의 Sir Issac Newton(1642-1727)의 큰 업적이 추가되면서 힘에 관한 자연의 탐구는 완전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Newton에 의한 운동법칙, 만유인력의 법칙들은 오늘날 現代構造理論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후 미적분등 수학理論이 活用되어 많은 整理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톤이후 Pierre Varignon, Bernoulli家의 여러학자들(Jacob Bernoulli, Daniel Bernoulli, John Bernoulli등), Leonhard Euler, Thomas Young등이 古典力学의 내용을 充実하게 하는데 공헌을 했으나 이때까지의 연구는 주로 힘의 평형을 중심으로 한 靜定力学이었다.

그러던 중 1825년 Louis Marie Henri Navier가 구조물의 Elasticity를 고려하여 不靜定構造物도 풀이될수 있다고 발표하고 트러스에 이 方法을 적용, 不靜定力学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이 사실이 構造理論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각국의 학자들은 앞을 다투어 많은 연구발표를 하였는데 이때는 주로 탄성체로써 材料의 応力에 관한 연구, 不靜定解法에 관한 것이 위주가 되었다. 이때의 업적을 나열하자면 Mohr(1835~1918독)에 의한 moment-area method, Mohr's circle, Maxwell jane clerk(1831~1879)에 의한 unit-load method castigliano(1847-1884이)의 최소일의 원리, clay peron (1799~1864 불)의 three moment equation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대는 산업혁명이후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되이며, 1824년 영국의 Aspdin이 포트란드 시멘트 특허를 얻었고 1855년 Simens-martin법, Bessemer 법등 제련법이 개발되고, 1867년 프랑스의 monier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착안하였다.

이러한 신재료의 개발로 이론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따라서 意匠면에 까지 큰 영향을 끼쳐 수많은 造型운동이 생겨났고 이어 "바우하우스운동"을통해서 国際建築様式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실 材料의 変化는 構造面에는 물론 건축意匠 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이전에는 주로 石材 벽돌재가 사용되어 Arch, Vault, Pylon, Dome flying buttress등의 제한 된 외장이있으나 근대재료의 변화로 shell, plate, folded plate, Lamera Skew Grid, P. S concrete, 조립식구조, 고층건물등의 새롭고 자유로운 외장이나 설계가 가능하게 된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이러한 발전의 또 한차례의 변화기점을 1950년대로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전자계산기의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규모가 2차원적인 가정에 의해 풀이 될 수 있고 그 오차가 무시될만 했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자 이러한 방법으로써는 합리적인 해석이 어렵고 略算式의 개발에도 한계를 느끼던 중 1946년 2월 ENIAC라는 세계 최초전자계산기가 생긴 이래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변혁을 일으켰는데 역시 건축구조 이론도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얻은 것이다.

즉 1850년 Cayley가 개발한 수학의 matrix이론을 구조이론에 도입하여 computer를 전제로 한 理論체성이 시도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풍부한 탄성역학, 재료역학의 배경과 함께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나아가서 System공학과 관련 최적설계(Optimimum Design)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이 전개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의 발전은 아래(도표-2)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

1950년대 (1세대)	기존 구조해법을 Computer에 의해 풀이, 수동 작업량을 줄이는 노력 (연속보의 모멘트 분배법, 트러스해석, 소형라멘)
1960년대(2세대) 컴퓨터비약의시대	matrix 방법의 대형 program (구조부재 최적설계, Finite element method, 동력학적 구조해석, Topological formulation 등 요소설계의 초기)
1960년중반(3세대)	대형뿐 아니라 소형개발도 눈부심 (최적설계, Finite element method, 고층건물의 진동주기에 관한 문제)

(도표2) 컴퓨터 구조해석의 발달

또한 과학적인 정밀한 실험시설의 개발(3000t규모의 초대형 universal testing machine, 전기저항 strain-gage photo-elastic Apparatus)로 실험역학도 중요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구조이론 발전단계의 年表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년 대	학 자	업 적 및 특 기 사 항
제 1 기 (논리학적 배경의확립)	BC	Plato(1) (427~347BC)	논리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현상 탐구
	400	Aristoteles(384~322BC)	자연현상에 관한 많은 이론-오류 많음
	~	Archimedes(287~212BC)	평형법칙, 지렛대의 원리
제 2 기 (고전 역학이 시작됨)	AD		
	1400	Leoncrdo do vich(1452~1519)	비탈면, 관성의 발견
	~	Simon stevin(1548~1620)	힘의 평행 4 변형 법칙
		Galilei Gahleo(1564~1642)	진자, 낙하운동 단면의 켄티데버 시험
	AD		
	1640	Sir Issac Nawton(1642~1727)	운동법칙, 관성, 작용반작용법칙, 만유인력 미분방정식
		J cob Zarnoulli(1654~1705)	beame elastic curve
	~	Pierre Varignon(1654~1722)	모멘트의 정리
		John Bernoulli (1667~1748)	principle of VirDual displacement
	AD	Leonbard Euler(1707~1787)	column theory(특히 장주의 좌굴이론)
	1700	Daniel Bernoulli(1700~1782)	Elastic curve(Euler식을 근거로 함)
	~	Joseph Louis Lagrange(1736	Principle of virtual work
		Tromas Young(1773~1829)	Torgue, 탄성계수 등 탄성여론의 공헌 이
제 3 기 (부정적 역학이 시작됨)	AD	Louis Marie Henry Navier	(1785~1836) 구조물의 Elasticity그려부정적구조해석
	1780	Saint-Venant (1797-1886)	Navier 지사를 보완한 제자
	~	Cloyperon(1799~1864)	three moment equation, work-strain energy
		Enrico Betti(1823~1892)	Betti의 법칙
		Karl Lulman(1821~1881)	Grafic statics(culman 트러스해법)
		W. J. Macquon Ronkine(1820~1872)	stress transformation equation
		Luigi Cremona(1830~1903)	크레모나 도해법
		J. Clerk Maxwell(1831~1870)	Unit-load method, riciprical displacement them
		Otto C Morh(1835~1918)	Mohr의 circle, momend area methed, williot-mohr
		Agust Ritter(1847~1906)	Ritt법(트러스 해법) diagrom
		C. Albert P. Castigliano(1847~1884)	principle of least work
		★ Bassemer, Siemens-martin	법등 제련법 개발(1885) 1855
		★ Monier(1867)	철근 con.이용법을 개발하기 시작
		★ 1875 미국에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됨	
		Hennebique(1892)	철근con. Stirrup절곡근 보강이론
		C. Wilson(1913)	광탄성 이론에 의한 보의 집중하중연구
제 4 기 (컴퓨터역학이시작됨)	AD	R. W Carlson(1930)	elgctric resistonce strain gage
	1950		matrix structural analysis
	~		Finite element method
			Structural optimization

(도표-3) 구조이론 발달과정 년표

3. 構造分野現況과 課題

전장에서 概略的으로 구조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렇게 이루어진 內容은 建築構造분야로서 아래와 같이 区分할 수 있다.

1.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2. 구조역학(structural mechanics)
3. 연속체역학(Continuum mechanics)
4. 메트릭스 구조분석(matrix structural Analysis)
5. 탄성 안정론(Elastic stability)
6. 동역학(Structural Dynamics)
7. 탄성론(Theory of Elasticity)
8. 판과 쉘(Theory of plates and shells)
9.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10.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11. 최적설계(structural optimization)
12. 고층건물설계(Design of high-rise structure)
13. 철골 구조(steel structure)
14. 철근 콘크리트 쉘(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hell)

그런데 최근의 構造이론발전은 짧은 기간동안에 큰발전을 보여 그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한 지경이고 각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재정지원, 조직적인 Teamwork, 인접분야의 신속한 지원협조체재등 거대한 규모로써 발전되고 관련分野가 함께 수시로 世界的인 학술발표회등을 통해 情報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新理論을 신속히 흡수, 理解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을 지경이다.

이러한 고도의 硏究분위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론의 실험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실제 건축물을 Model로 지어서 3000t의 universal testing machine, 10^{-6}까지도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Electric-resitsance strain gage 등 정밀한 시험을 하기도 하며, 재료에 관한 연구로써 미국에서는 현행 150~300kg/cm²의 콘크리트에서 350~420kg/cm²을 개발사용하며, 연구실에서는 700kg/cm²을 제조할 수 있으며, 장래 1400kg/cm²까지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며, 철근재료도 현행 1600kg/cm²의 허용응력을 4000kg/cm²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Computer를 전제로한 matrix구조이론, 유한요소법, 최적설계도 일련의 관련성을 가지는데 有限要素法은 물체의 要素的 단위의 物理的 성질을 탄성론적인 견지에서 규명하여 미소변형과 응력간의 선형관계식(linear relation)을 이용 기본공식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전체 구조물의 変形및 応力까지 산출하는 방법으로써, 이 이론은 발전을 거듭해서 탄성체가 아닌 연속고체역학에 도입되었고, 다시 고체만이 아닌 연속체(기체, 유체등도 포함)에 관한 이론으로 확대되고, 이제는 물체가 아닌 어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連續系에 까지도 이론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구조해석을 과학적인 관리技法과 관련시켜서 합리적인 구조설계를 추진하는 최적설계(optimum design)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물론 현재 構造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적 최적설계(Conceptual optimization)에 까지 미치지 못하고 수리적인 방법에 의한 최적 断面의 추적에서 최적形状 cost 문제에 까지 도달하고 있으나 아직 이론이 難解하고 관리기 법에 대한 인식도 일반화되지 못해 実用化에는 다소 요원하다고 한다.

이러한 背景속에서 우리나라 現実情上 두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신이론을 신속히 흡수하는 체제를 이룩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현행 기계적인 구조계산 작업과정을 computer에 의해서 시간을 줄이고 일반 건축인의 구조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로히 유도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신이론도입에 관한 문제는 1962년 KIST에 전자계산기가 도입된 이래 많은 computer가 도입, 활용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각 대학을 중심으로 신이론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학회지의 목차를 참고로 하면 1969. 12월 김형걸박사에 의해 matrix구조물해석이 간단히 소개되었고, 간간히 육사출신 학자들에 의해서그 概念이나 人間정도의 글이 소개되고 있으며 73년11월 5일부터 10일간 유한요소법에 관한 Seminar가 개최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 계통에 관한 글이 빈번히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목학회지를 참고로 하면 66년초 김덕현박사의 multiple shell의 matrix해법이 처음 나타났다가 74년 유한요소법에 관한 동경학술발표회에 참석했던 두 학자 (신영기 박사, 유철수 박사)에 의해 유한요소법강좌가 紹介된 바 있으며 최근 토목구조部分은 이 신이론이 주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체재를 갖춘 신이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학 또는 어학배경을 구비한 젊은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뛰어 들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대학에서도 학부에서는 기본이론을 철저히하고 신이론은 대학원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과수준은 외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하나 응용력과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현재 구조실무계를 중심하여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황가운데서 제한된 시공경비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건축주와 그러한 풍토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선 芸術性의 결핍이고, 다음으로 구조물의 安全性에 까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20 C전후 나타 났던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청구대 도괴사건, 와우아파트 붕괴사건등의 사고가 잦었었으나 이를 계기로 72년 이후 각構造別 계산규준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나 특히 구조분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워 설계자가 자신의 해석과

판단으로 정확한 응력을 산출치 못하더라도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구조개념과 원리를 일반화시키는 문제나 현재 구조실무자들이 수동작업과 略算式을 활용하는 절차를 전환하여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program개발과 compsuter를 익숙하게 하는 노력도 급선무일것으로 생각한다.

4. 탄성이론의 発展배경

항상 理論은 실험의 実証的인 妥当性이 比較, 검증되어야 한다.

현재 構造物의 대다수를 이루는 不静定구조물의 解析은 材料力学과 탄성이론의 発展으로 부터 가능했고 또한 有限요소법理論도 이 것을 중대한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삼스러운 시험장치는 아니나 또한 국내에도 여러 곳에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재료의 応力에 관한 시험장치를 소개함으로써 내용을 간추리고져 한다.

우선 "strain gage"는 원자거리까지 미소한 변위까지도 변형측정이 가능하고 또 탄성이론에 의한 변형과 응력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정확한 응력의 解析이 가능한 시험장치인데 정확히는 "Electric-resistance Strain gage" 이고 이는 1856년 영국의 Load Kelvin의 "전기저항 변화는 길이 변화에 비례한다는" 실험결과에서 발전된 장치이며 그 발달과정의 도표는 아래와 같다.

연 대	발 표 자	내 용
1856	영 Lood Kelvin	"전기저항 변화는 길이의 변화에 비례관계이다"라고 발표
1878	Tomlison	단위저항에 추가된 저항의 증가를 정량적으로 측정, 저항변화가 재료 칫수 변화의 원인이 됨을 규명
1920	P. W Bridgman	kelvin 실험을 재확인함
1930	R. W. Carlson	carlson형 strain gage(Unbonded gage) 실용화
1935	A. Block	탄소박판사용 bond gage 만듬
1938	E. E. Simons와 A. C. Ruge(미)	금속저항선 사용한 bond gage 발견(현재 사용하는 것)
1940		① 전자관 증폭기(Brige Amplifier로 10^{-6} 까지 변형 측정—Computer에 의해 전기적으로 해석) ② Society for Experimantal strees anlysis 창립 s

(도표-4) 전기저항 스트레인 게이지 발달과정

이 장치는 静的, 動的시험에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일종의 비파괴시험장치이고 다른 시험장치와 併用될 수 있는데 이 장치의 연결과 외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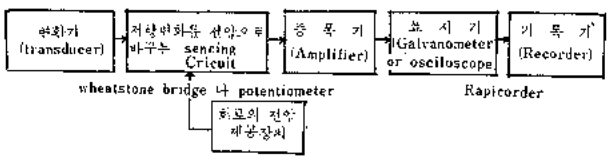

(도표-5) 전기저항 strain gage의 연결도

두번째로 광탄성 시험장치(Photo elasticity Apparatus)는 2장의 직교하는 편광 filter사이에 투명한 탄성체에 힘을 가하면 탄성체 내부조직의 일시적 2중굴절로 인해 내부의 응력상태를 나타내는 천연색사진으로 감광될 수 있는 것이데 이는 원래 불리학자인 영국의 Da' id Brewster가 1816년 이 원리를 발견했으나 이것이 오랫동안 무시되었고 후에 Maxwell에 의해서 이 color pattern과 수학적 이론과의 비교연구가 발표되어(1891) 이것이 Cwilson에 의한 단순보의 집중하중에 대한 응력연구, A. Mesnager에 의한 아취교의 연구에서 활용된 이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시험장치에 의한 資料에 의하면 Strain gage와 같이 정확한 応力측정은 곤란하고 주응력선은 等色線과 等傾線의 分析으로 파악되어 전체 응력분포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바로 일반 구조물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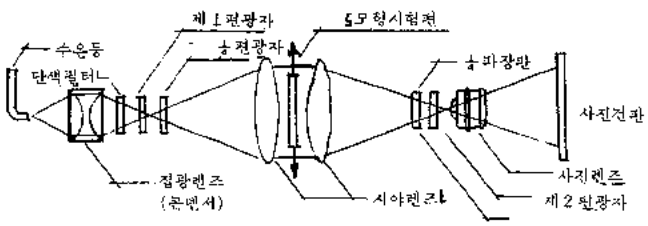

(도표-6) 2차원 광탄성 시험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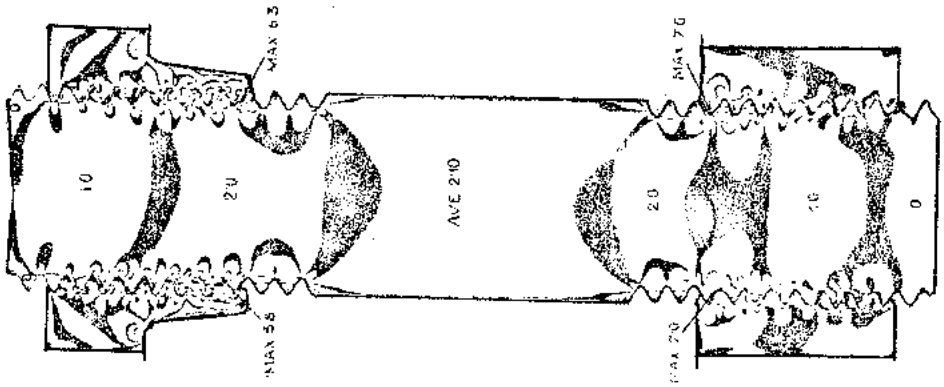

(사진－1) 광탄성 시험장치에 의한 볼트내부의 응력사진

이 시험장치는 2차원적인 응력상태를 주로 하여 개발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reflectiontype이 실용화되고, 3차원적인 structure of elastic skeleton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중인데, 이 2차원 시험장치의 구성과 이장치에 의한 볼트의 응력사진은 다음과 같다.

5.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계는 국가발전과 더불어 과도기적인 현상을 벗어나, 새로운 건축질서의 기틀이 다지어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구조분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또한 새로운 외국의 이론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논문 형식이 아니므로 참고문헌 인용이나 註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끝)

三元社건축설계사무소代表

1期建築士研修教育受講記

三日間의 教訓

安 箕 泰

가벼운 興奮속의秩序

11月21日参加하라는 教育通知書를 받고 事務室 日程을 훑어보니 特別한 일이 없어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하루전날 速達郵便으로 서울支部로 부터 11月 7日로 日程이 바뀌였다는 文書를 받고 協会에 알아보니 急作한 事情으로 教育日程이 変更되었단다.

매도 먼저맡는者가 나았다는 俗言도 있듯이 이왕 教育에 임할 바에야 名譽롭게 修了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事務室 職員들에게 9日 까지의 業務를 指示해 놓았다.

教育場인 建設研究所는 平時 数次訪問한바있어 正確한 位置는 알고 있었으나 大入了備考査日과 같은날이기에 交通便을 留意하여 正時에 到着할 수 있었다.

所定様式의 入所節次를 마치고 知面인 会員間 반가운 人事를 나누면서 教育内容의 意見을 주고 받는다. 大部分의 会員들은 学校教育 以後 成人教育은 別로機会가 없었을줄 안다. 새마을教育 民防衛教育 程度였을것이다. 그러나 이번 教育은 專門人 으로서의 関係法에 依하여 計劃된 所定의 教育이며 試験(評価)을 치룬다는것과 1, 2, 3等의 各其 해당된 賞까지 있다니 어떠한式의 講義이며 어떤 方法으로 試験을 치를것인지 궁금하다.

準備関係인지 予定時間보다 약간 지체되는듯 하더니 講堂에 集合하라는 말이 전해지자 가벼운 흥분속에 질서있는 움직임을 엿볼수 있다.

集合된 会員들을 둘러보니 協会 登録順이여서 그런지 平均年令이 50을훨씬 넘는것 같다. 모두建築界에서 나름대로의 献身과功績의 자취가 역역히 보인다. 白髮과주름살이 無形의 훈장인듯 생각케 하는 기라성같은 元老 大家들 틈에 끼여 不惑의 本人으로서는 스스로 人生을 反省해보며 使命感마저 들게한다.

入所式과 教育

式順에 依하여 国民儀禮와 建設部長官의 치사가 있었으며 훈련부로 부터 教育에 対한 説明이 있은후 式이끝났다. 四節까지 부른 愛国歌 棒唱은 우렁차면서도 엄숙하여 감동적이였다. 嘆棒

教課日程에따라 첫 時間은 建築法과 建築士法을 建設部 김영철課長의 講義로 始作되였다. 이 과목은 改正된 法令및 規則에 対한 内容을 解説하였으며 많은 궁금증을 풀수있는 좋은 기회였다. 講義途中 学生長(姜会長)의 傳言인즉 教材準備가 되지않어 이번 1期生은 教材없이 受講해야 할 것 같다는 説明이다. 受講者들로서는 教材가없어 負担스러웠으나 그런대로 뜻있는 첫 時間을 보냈다.

教課日程을 적어보면

第1日 1. 建築法및 建築士法 建設部 建築課長 김영철
2. 建築意匠 漢陽大教授 朴学在

第2日 1. 古建築(韓国建築) 会員(前会長) 張起仁
2. 建築技法 漢陽大教授 金眞一
3. 消防法計劃 内務部消防局
4. 外国建築 弘益大教授 尹道根

第3日 1. 評価(試験)
2. 特講 東国大教授 민병천
3. 綜合討論및 여론조사
4. 修了式

以上이 教課日程이며

講義内容을 요약해 보면,

○ 建築法및 建築士法건설부 김영철과장(省略)

○ 建築意匠(朴学在教授)

1. 建築表現에 있어서의 모방과形式
2. 建築内容의 象徵的表現
3. 建築表現의 錯覺
4. 建築의 比例論

以上講義内容中「建築内容의 象徵的表現」에 対한 것을 実例를들어 説明하였으며 弟子인 本人으로서는 오랫만에 先生의 持論을 通하여 建築哲学을 들을수 있었다.

○ 古建築(張起仁)

唯一하게 教材가 準備된 科目이다.

1. 韓国建築의 쇠서리 部材의 맞춤 解説에서 翼工 화반운공, 소로, 出日等
2. 周尺 영조척等 3. 年代別 韓国建築의 解説
4. 卍, 亟, 꽃살等 窓살,

大略 以上과 같은講義였으며 흔히 古建築을 論할때 西洋建築을 들먹이며 아는체 하는 本人으로 서는 南大門東大門의 年代差異조차 몰랐던것을 内心부끄럽게 뉘우친다. 不過80分의 講義로서 古建築을 처할때 어느 一部分이 나마 関心있게 観察할 수 있게된것을 큰수확이 않일수없다.

○ 建築計劃(金眞一教授)

人間이 必要한 땅의 面積은? 톨스토이 寓話를 引用하여 展開되는 講義는 2 m²의 땅의 面積이 算出된다.

1. 建築計劃의 目的과 手段
2. 学校教室의 算出의 方法論
3. 尺度에 대한 概念(CGS単位~地球基準과 尺-人体基準) 等等

金先生特有의 論理展開와 断言은 수차에 걸친 講演을

通하여 또한번 強하게 느껴진다. 余談이지만 에게人間 必要한땅의 面積 얼마이며 그기준을 算出하라. 혹시 이러한 試驗問題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会員間의 농담도 오고간다.

○外国建築(尹道根教授)

建築理論과 外国建築物 主로 現代建築(1950. 60. 70年代)을 스라이드를 通하여 解說을 하였다.

1. 建築이란 : 目的 容間

2. 建築의 規定 : 人為的要素 / 自然的要素 — 社会的要素 / 芸術的要素 / 工学(技術)的要素

3. 比例 : 1) 正整比論 2) 黃金比論 3) 動的均整論 4) 피보나치級數論 5) Module

4. 構成

画面을 通한 現代建築의 흐름은 受講者의 感覺 나름대로 判斷이 될것같다.

大略 以上과같은 講義內容이였으며 学術的 理論이나論理的 思考에따라 다분이 講師의 主觀에 依하여 表現 또는 伝達方法에 따라 受講者의 主觀과 交又되는부분이 있었음을 느낀다.

会員들의 受講姿勢는 可히 模範的이라 할수 있겠다. 時間觀念은 基本的인 것이어서 더 말할 나위없고 老年의 会員들은 眞摯하다못해 순진한 学童들과도 같아보였다. 그러다가도 実務에 関係되는 問題에 이르러 서는 날카로우면서도 深度있는 質問이 쏟아져 나온다. 一部会員은지나친 念慮로 뻔히 結末난 問題를 두세번 반복質問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으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休息時間에 指定된 場所에서 흡연을 하면서 주고 받는 雜談속에도 뜻있는 말이 오간다. 話題中의 하나는 張起仁 先生은 先生이면서 学生이나 가르치면서 배우는立場이여서 試驗을 치르면 1等은 따놓은게 않이겠느냐는 말은 同年輩会員들의 농담으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다.

그런가하면 체조시간에 七旬高令인 손민수会員의 参與는 대단한 熱意였다. 数十年来에 처음하는 회원도 더러는 있겠지만 오른쪽을 向해야 할것을 왼쪽으로, 팔을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를 굽히고 그야말로 各様各色이다. 이 光景을二층 室內에서 내려다보는 建設研究所의 젊은직원이, 会員들이 타고온 자동차의 운전사들이 활짝웃는 얼굴을 지켜본다.

이 사람들은 一絲不乱한 学生들의 마스게임보다 더 뜻있게 느꼈으리라. 이어찌 不調和 속의 아름다움이 않이겠는가. 老年의 会員들은 参與의 보람을 더욱 크게 느꼈으리라.

첫날은 研究所의 基本食品으로하고 둘째날은 서울 支部 金萬盛 支部長의 簡食提供이 있었고 마지막날엔 복지회 李奉魯 会長이 中食代및 飲料水를 負担하고 支部長 역시 간식을 나누어 주어 기쁜 마음으로 어느 篤志家가 修了後 대포 선심이 있지 않을까 하였으나 그런 篤志家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1期生의 学生長은 姜奉辰会長이 맡았다. 学生들의 代辯 訓練部에 対한 建議 講師의 人事紹介等 教課進行및 全般的인 教育過程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매번 発言中 너무 자세하여 다소 지루할 程度였다. 会員들이 熱誠들이고 진지한 受講態度에 感動했음인지 学生長은 늘 滿足한 表情이였다. 그러나 蛇画添足의 禍가 미칠줄은 学生長은 勿論 会員들도 想像치도 못했다.

会員들이 関心事인 試驗을 念慮한바 너무 誠意 있고 秩序있는 会員 여러분은 模範的이고 한사람도 落伍없이 教育을 마칠수 있다는 이 自体만으로도 修了의 資格은 充分하니 너무試驗에 신경을 쓰지않아도 좋치않겠느냐는 內容의 言質이였다.

그 結果는 너무 悲慘하였으니 蛇画添足의 禍가 않일수 없다. 다만 学生長의 言質은 善意의 表現인 것만은 確実하다.

試驗(評価)

協会에서 보내준 文書에는 1, 2, 3等의 賞이 있는데 建設部長官賞, 建設研究所長賞, 協会長賞이 各其 해당되게 授與한다고했다. 会員들의 話題는 試驗을 어떠한 方法으로 본다는등 누가賞을 타겠다느니 話題의 꽃을피운다.

첫 講義時間에 学生長이 教材準備가 되지않았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教課에따라 熱心히 筆記하는 会員 傾聽하는 会員 各其 나름대로 受講 하였으리라.

첫날 教課를 마치고 李春相会員과 歸家中 簡單히 한잔하자고하여 몇巡杯中 自然히 教育에 関한것이 話題가 될수밖에 없었다. 李会員이 말하기를 집에서 나올때 自己부인이 이왕이면 1等을 하라고 했는데 教材가 없으니 方向을 잡을수 없다면서 집에가서 徹夜해서 工夫를 할려했는데 포기해야겠다고 농담調다. 其実 本人도 같은 生覺이였었다고 말하면서 醉中 豪快하게 웃고 말았다.

11月9日9時30分 심판의 時間은 다달었다.

深刻한 表情은 別로 없었지만 다소緊張感이 도는듯 하다 약 30分이 지체되면서 答案紙 試驗問題紙가 차 례로 돌려진다. 그러나 答案紙 作成要領 說明및 質問等으로 상당한 時間이 경과되었다. 問題紙를 들여다보니 만만치 않은 問題들이다. 큰일났구나하는 生覺이 문득난다.

試驗을 마친후 나름대로 整理해 본다.

1. 印刷不良으로 問題紙읽기가 어렵다.
2. 答案紙 作成要領 說明으로 因한 時間소모로 解答時間의 負担感
3. 一部試驗問題가 長文이여서 理解 하기 為하여서는 再三 反覆하여 精讀해야 됨으로 所要時間에 対한 강박감.
4. 客観式 試驗은 함정이 많으므로 経驗이 없는 사람은 正答을 알면서도 틀린것을 擇할 境遇.
5. 試驗問題中 応試者가 概念의 差異로 正答이 아닌 자기주관에 答을 擇할 경우
6. 全般的으로 問題紙를 理解하기위하여 3回以上 精讀한다고 볼때 問題量의 過多.

以上에 言及한것은 오히려 枝葉的인것들이며 오히려 가장 重要한것은 評価라는 낱말에 있다.

評価가 試験인지 試験이 評価인지 分間조차 못했으며 試験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試験의 性格 方法 結果의 重要性 等은 一言半句 言及이없이 秘藏되였든것이큰 蹉跌을 낳은것이다.

秘藏할 物件도 아닐진데 依例히 아는것이려니 傳達이 않된 것이 겠지만 이 評価라는 뜻을 가볍게 보았다가 敗家亡身한 꼴이되였다.

너무 믿고 熱意와 努力만으로 될줄알었든 어진 学生들은 마침 가을철을 맞아 秋風落葉처럼 떨어져나갔다.

이 落葉들은 된者나 안된者 떨어진者나 붙은者, 이긴者나 진者 같은落葉속에서 같은 心情이었을게다.

試験을 마친후 教課時間에 따라 特講中食, 綜合討論與論調査 等의 順으로 教課程을 마쳐나갔다.

修了式을 앞둔 中食은 유난히도 기다려진다. 음식맛에 기대되는게 아니라 3日間의 教育을 마치고 卒業(修了)을 몇時間 앞둔 상쾌한 마음에서 일것이다.

부지런히 食堂을 向했으나 配食口앞에 当到해보니 다섯번째가 아닌가 밥먹는데 1等을 하려했는데 朴成圭会員에게 前席을 빼앗기고 만것이다 可히 食堂長? 감이다.

中食後 休息時間에 滿点이 있다는 風聞이 나온다. 滿点을 맞을 수 있을까? 滿点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分明 自己実力 +γ 即 日辰이 좋았든가 幸運의 女神이 보살폈으리라.

修了式의 부푼마음을 안고 기다렸으나 무슨 事情인지 늦어진다. 그사이 建設部 김창권局長이 登壇하여 誠意껏 教育에 임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과 評価에 対한 説明을 한다. 試験結果에 言及하면서 小数이지만 一部会員은 優秀한 成積이 있으며 滿点도 있는反面 半数会員이 基準点数未達이니 未達者는 修了証을 줄수없으며 再教育을받어야 한다는 断言이다.

学生長의 進言도 있었으나 法에 依한 教育이니 만큼 評価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再次 못을 박으면서, 教材, 講義等의 問題点도 있겠으나 一部会員의 成積이 優秀한 것으로 보아서 꼭 그런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説明과 이러한 結果에 対하여 憤感의 뜻을 表明하는것으로 끝을 맺었다. 一瞬 講堂内에는 暗雲이 깔리기 始作했다.

修了式이 宣言된다.

當落半半의 会員들, 반은 글자그대로 修了요, 반은 修了式의 리허설로 끝날것인지, 그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는사람은 아무도없다.

国旗에 対한 敬禮에 이어 愛国歌棒唱이 시작되었다. 아!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우렁차게 부르던 入所式때의 愛国歌를 当落의 공포감에서 목이메였는지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게않인가.

不和音속에서 1節까지 불렀다.

남산위에 저 소나무…… 休息時間에 修了式 때에는 좀 더 잘불러보자고 외치면서 혹시 모르는 会員이 있을까봐 3, 4節의 歌사를 두세번 불러주었던 李奉魯会員이 머리속에 스쳐간다.

가을하늘 공활한데…… 音程이 잡혀간다. 講堂을 中心으로 9時方向에 있는 金源安会員, 11時方向의 李奉魯会員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온다. 3時方向의 本人도 한 音程높혔다. 마음이 갈아안는다.

暗雲은 거쳐갔으며 공포감도 사라져갔다.

새로운 出発을 다짐 하려는지 굳게 다문 입술은 굳은 意志를 나타내는듯 보였다.

式順에따라 修了証이 授與된다. 学生代表로 朴來運会員이 全会員것을 받았다.

이어 施賞順序이다. 1等 金萬盛支部長 2等 姜奉辰 会長 3等 宋학祚会員이 차례로 呼名된다.

幸運의 女神은 金萬盛支部長에게 그랑프리를 안겨주었다. 그 어려운 與件속에서 滿点을 할수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驚愕, 感歎, 祝賀, 暖間的으로 엇갈리는 表情속을 堂堂이 헤쳐나가면서 建設部長官賞을 받는다. 잠시 瞑想에 잠겨본다.

너무나 조용히 제 자리만 지키고 있더니 남 모르는 사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길래 大賞을 그것도 滿点의 榮光으로 차지했을까? 果然金支部長(新任会長)은 幸運児였으며 野望의 사나이 였다.

姜奉辰会長(学生長)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教課進行에 많은 手苦를 했다.

一般受講生은 專念하여 受講했는데도 秋風落葉인데 大事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느틈에 実力을 쌓았는지 次席을 차지한 것을 보면 그분의 手苦의 実力을 높이 平価(試験의 뜻이 않임)하면서 다시한번 경탄해 마지않는다.

試験결과로 自業自得 이라할까 할말은 없으나 理想的인 꿈을꾸어본다면 受賞者를 祝賀해 주면서 全受講生이 名譽롭게 修了했으면 얼마나 多幸일까 生覚하면서 富益富貧益貧의 確実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왜이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建設部 김창권局長은 이번 教育의 큰 目的中의 하나는 精神教育에 있다고 強調했다.

受講中 会員들의 動態로보아 어느 一面이나마 目的한 精神教育의 成果를 達成했다고 느꼈다. 修了式後 修了証을 나누어 받으면서 修了証을 받은会員은 못받는 会員의 눈치를보면서 계면쩍은 미소를 띠우면서 위로한다. 못받은 会員의 表情을 어찌 다 表現하랴 却説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教育의 成果가 무너지지나 않나 念慮해 본다.

三日間의 教育은 끝났다.

不過三日間에 벌어진 일들이지만 배운것도 많았고 느낀것도 많았고 反省해야 할 것도 많았다. 많은 教訓을 던져준 三日이였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生覚이지만 每事를 元亨利貞의 順理로 行하였으면 하고 瞑想에 잠긴다.

同和建築研究所 代表

不条理 克服을 為한 提案

林 潤 東

不条理 克服을 위한 提案

沈鬱하고도 暗澹한 與件속에서도 「밝은来日의 希望과 勇気」를 잃지 않는것이 슬기로운 삶의 態度라고 生覚한다. 우리들 建築士는 이러한 어려운 時代的 状況을 克服하고 밝은未来를 開拓하고 確保하겠다는 높은 理想의 実現을 為하여 盡皆하고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는데서 참된 보람을 찾아야 할것이다. 돌이켜 볼진데 越南이 共産化된 以后 우리社会는 緊張할수 밖에 없었고 온 国民이 能動的으로 安保와 秩序와 生産的인 発展에 参與하고 나선 姿勢를 높이 評할수 있을 것이다. 当時 政府当局의 施策은 社会 各分野의 구석구석을 쳐크함으로서 不正腐敗에 対한 不条理를 도려내는 새로운 条理의 確立方案으로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方案이 国務総理指示 第八号로 76年 6月에 建設部(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부터 公布示達되여 示範的으로 수원, 춘천, 전주, 진주 4個市를 対象으로 実施한 바 비교적 좋은成果로 認定되여 77年 1月 1日부터 全国에 確大実施케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外形上으로는 별로 蹉跌없이 施行되고 있는듯 하다. 이같은 時代的 要請에 依한 住宅建築行政業務에 対한 庶政刷新成果에 対하여 鋭意分析하고 진단하여 스스로 処方까지 提示할까 한다.

「첫째」 前記한 改善方案의 建築許可業務処理는 編成된 連帯責任建築士가 所定書式의 点検表에 連帯署名捺印하여 許可申請하면 許可官庁은 点検表에 依해서 建築法및 其他 関係法令의 諸規定에 適法與否를 検討하여 適法한 許可申請은 8勤務時間内에 許可処理하게끔 되여있음에도 初期에는 迅速処理되던 許可業務가 近来에 와서는 規制時間内에 処理하지 못하였던 境遇가 非一非在 하다는 事実은 누구도 否認치 못할 것이다. 特히 서울의境遇 近来에는 다소 暖和되였으나 住宅建築에 있어서도 建築의 美観및 機能, 構造等을 審議하는 制度가 마련되여 過一回에 있는 審議에서 通過된 연후 決裁権者의 裁可를 득하여야 許可될 수 있는 지연要因들은 刷新을 為한 国務総理指示 第8号에 대한 엄연한 逆行이며 고쳐져야 마땅할 当然之事가 아니겠는가, 晩時之歎感마저 없지않으나 監督官署는 指示된 庶政刷新事項을 수시로 点検하여 消極的인 作業에 머물것이 아니라 새로운 条理의 確立이라는 보다 積極的인 作業까지가 펼쳐졌을때 비로소 庶政刷新은 成就의 과녁에 들어맞었다고 볼것이다.

「둘째」 이와같이 国家의 安保的인 次元에서 추진된 本業務를 우리들 建築士는 附與된 莫重한 義務를 誠実하게 遂行하였는가를 盂省하여야 될줄로 안다. 建築行政의 不信과 不条理의 除去라는 目的下에 추진된 改善策에 따라 連帯責任下에 行政官署를 代身하여 履行된 建築許可 및 竣工検査等을 勤勉誠実하게 그 義務와 权限을 行事하였는가를 냉철히 돌이켜보면 언뜻 自信있는 対答에 주저하게 된다. 勿論 避치못할 原因과 事由야 있겠으나 엄밀히 가름하여볼때 주어진权限의 抛棄요 怠慢인것이다. 이로因하여 많은 会員들이 資格停止 또는 事務所 폐쇄등 不美스런 行政処分을 받게끔 되였으며 앞으로도 처벌받게될 会員은 不知其数일 것이다.

果然 이대로 끝없이 가야만 할것인가 現実이 어렵고 苦痛스러울때 사람들은 흔히 挫折과 絶望속에 몸을 내던진채 長嘆息만을 일삼는다. 그러나 生命의 本質과 価値를 尊重하는 意志力은 한시도 이러한 挫折이나 絶望에 沈没할수 없는것이다. 장차 일어날수 없는 状況을 억지로 일으키려는 非現実的蠻行이나 오직 処分만을 기다리는 식으로 袖手傍観하는 기다림이 希望일수도 없다. 그렇다고 急進的인 冒険主義나 現実을 無視한 白日夢들을 참다운 希望과 혼동할 수도 없다. 希望은 信念과 함께 있는 것이며 사랑과 結合된것이다. 信念은 아직 証明되지 않은것을 믿는 精神力, 참된 可能性을 아는 洞察力, 또는 뜻한바를 体感할 수 있는 智慧의 힘이라 할수 있다.

希望찬 建築士社会를 構築하겠다는 信念은 참다운 勇気의 展開와 不屈의 精神을 要求한다. 그러나 그곳엔 楽観的인것만 存在하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希望은 危機요 不安이며 闘争的인 過程을 前提한 意識의 革命的変化가 要望된다. 그 勇気와 不屈의 精神은 諦念主義者의 無謀性이 아니라 삶에 対한 熱望과 会員相互間 사랑의 実践속에 持續하는 것이다. 그에 対한 提案은 여러가지 形態와 方法等으로 表現할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健全한 風土와 正常的인 条理가 섰을때 우리 建築士社会는 비로소 健康을 누리게 될것으로 본다.

첫째 우리生活의 주변에 惰性的으로 存在하는 行態的 不条理인 設計用役의 過当競争을 止揚할수 있는 高次元的 政策立案과 둘째 現実状況을 充分히 洞察한 合理的이고 法趣旨에 適合한 合同事務所 設立및 運営에 対한 全国的인 汎研究機構를 構成하여 좀더 알찬 方案을 創案하여 推進할때 비로소 누적된 不条理가 除去되고 다함께 잘살수 있는 世態가되지 않겠나 生覚된다. 그런데 어느時代 어느 社会를 莫論하고 무언가 해야할일을 밀고나가는 過程에서 社会構成員 全部가 한사람의 例外도없이 이에 賛成共感하고 나서는 일이란 드물다기보다 거의 없는것이 아닌가 生覚된다. 물론 저마다 個性을 지니고 얽혀사는 人間社会에 있어서 本然의 모습인지 모른다. 그러니 問題의 焦点은 異見이 있어도 한번 方向이 定해지면 「時代의大勢」에 따라가는 順応性에 있는것이 아닌가한다. 이렇듯 会員全体의 意識的 同意로 不条理를 追放하고 総和를 이룩하는 未来에 対한 希望과 勇気를 회복하는 우리모두의 努力이 오늘의 時点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期待된다고 하겠다.

서울支部 代議員

第2政府綜合庁舍懸賞設計競技紹介

位置：京畿道始興郡果川面文原里
規模：垈地 165,000m²
延建坪 115,500m²

審査委員会：委員長　金熙春,
委　員　姜明求, 金正秀, 羅相紀, 宋旼求, 李廷德, 李海成

指名招待作家

金壽根, 金正徹, 朴春鳴, 嚴德紋, 李丞雨

政府는 上記招待作家 5명과 一般公開応募를 包含, 1978년 4월28일～7월28일까지 3個月間에 실시 그中 最優秀作 1点 優秀作 3点을 選定하였으며, 応募한 13個案을 10월 2일～7일까지 政府綜合庁舍에서 公開展示되었었다.

最優秀作　嚴德紋・李喜泰(案)　엄・이建築研究所
優秀作　宋基德　正一建築研究所
優秀作　李丞雨・尹錫祐・姜哲求(案)　綜合建築設計事務所
優秀作　朴春鳴　(案)　朴春鳴建築設計事務所

康炳基(案)　漢陽工大
金基哲・朴宣吉
鄭武雄・李寛永(案)　고려종합＋清州大＋西人建築
金晶東(案)　仁德芸術工業専門学校
金正徹(案)　正林建築研究所
金正湜(案)　正林建築研究所
李汶祚(案)　韓国綜合技術開発公社
張錫雄(案)　아도무건축연구소
許畢鼎・金台植・韓永洙(案)　大韓合同設計公社
金壽根(案)　空間研究所

最優秀作　嚴德紋·李喜泰(案) 엄·이建築研究所

본 제2청사의 건물배치, 조경 및 건립될 건물에 있어서 산세환경, 교통, 방호 및 조경을 의식하며 과거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며 새로운 전통을 창조키 위하여 계획분석 및 계획방향을 설정함에 3가지 방향을 검토하였다.

배치계획

자연환경 보존을 위주로 하여 전원적 환경과 배경은 고산을 창조하여 분산식 저층배열로 정적인 배치계획을 채택하되 대지의 중앙부에 후생시설을 위한 Sunken을 두어 모든 건물은 남저, 북고의 지형으로서 고지대에 속하는 위치를 택하여 배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 배치계획에 임하였음.

내부기능계획

부지이용상 각 기능별 Block으로 구분하여 독립공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휴식공간과 업무공간, 출입공간 등의 구분을 하여 각 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서로간의 유기적 연결을 의도하였음.

가. 동선(차, 보행) 분리로 안락한 작업

나.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구성

① Urban Grid설정(7.2 m×7.2 m)

② Urban Grid에 기준을 둔 건물배치

다. 계획요지

① 분산식 저층은 조경 및 환경상의 해결 이외에도 출퇴근의 [illegible]식 처리로서 혼잡을 피하며 엘리베이터의 의존도도 많지 않으며 유사시의 대비책 수 방호상에 있어서도 유리하도록 계획하였음.

② 분산된 사무동, 부속건물, 설비동을 Sunken을 중앙에 두어 비교적 보안을 요구치 않는 식당, 후생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독립된 Block으로 분리하여 각 사무동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음.

③ 회의장, 강당은 대량으로 사람이 모이므로 지층에 두어 동선처리를 신미하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일반 면회자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면회실과 같은 Block에 두어 계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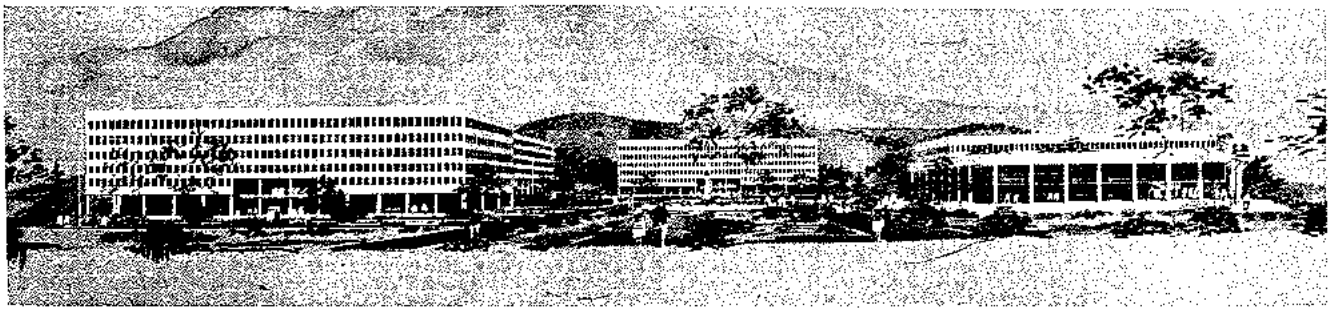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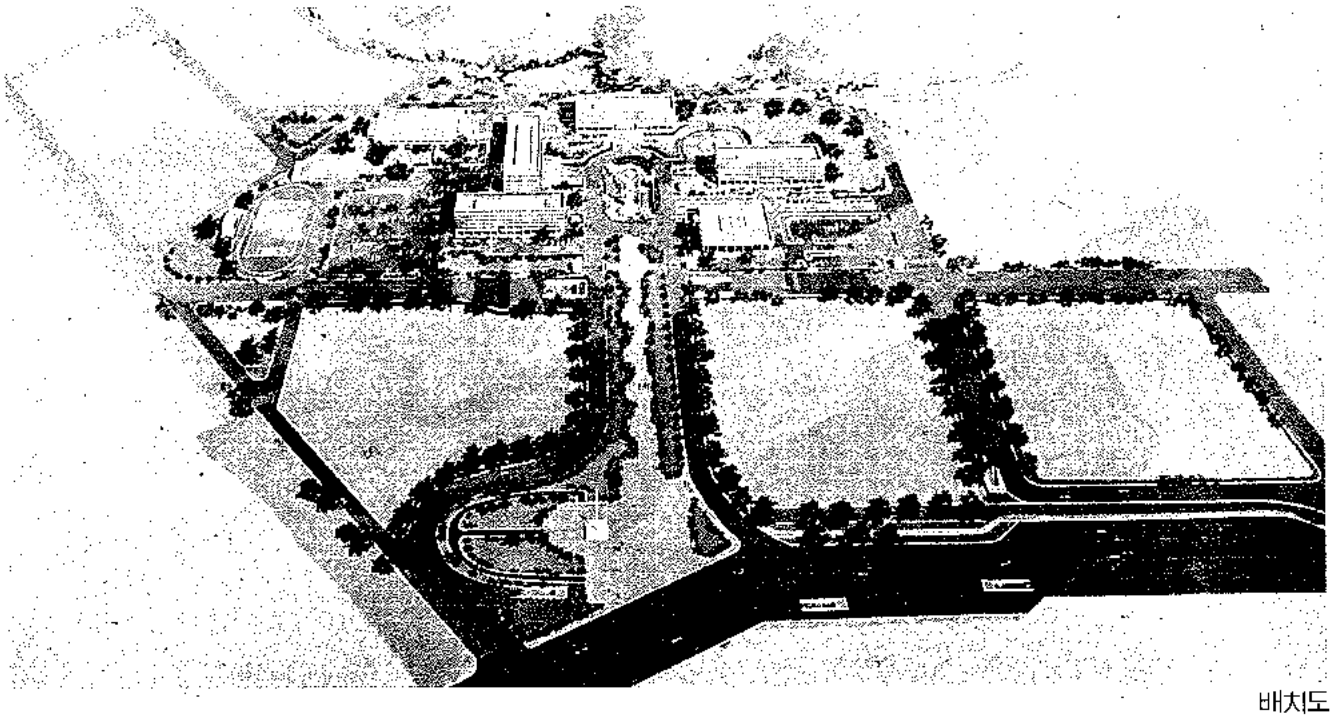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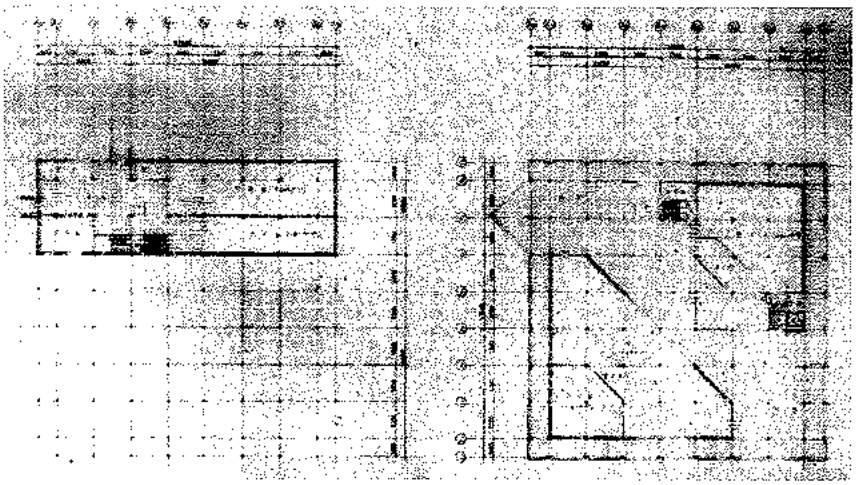

부속동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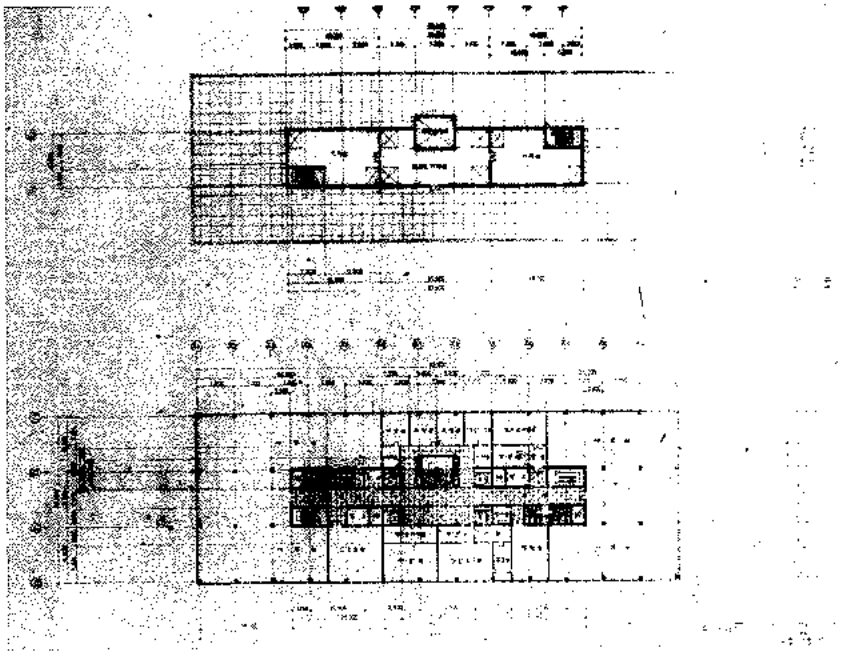

사무동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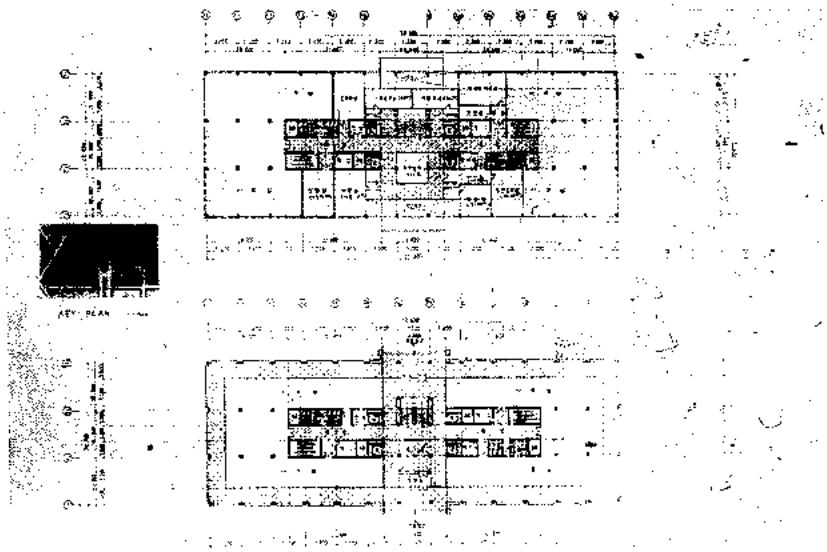

사무동 1,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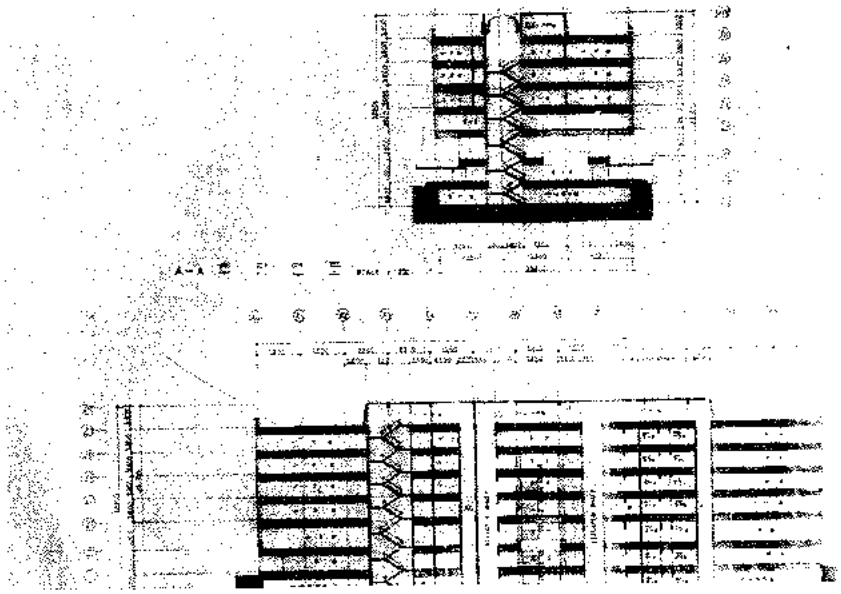

사무동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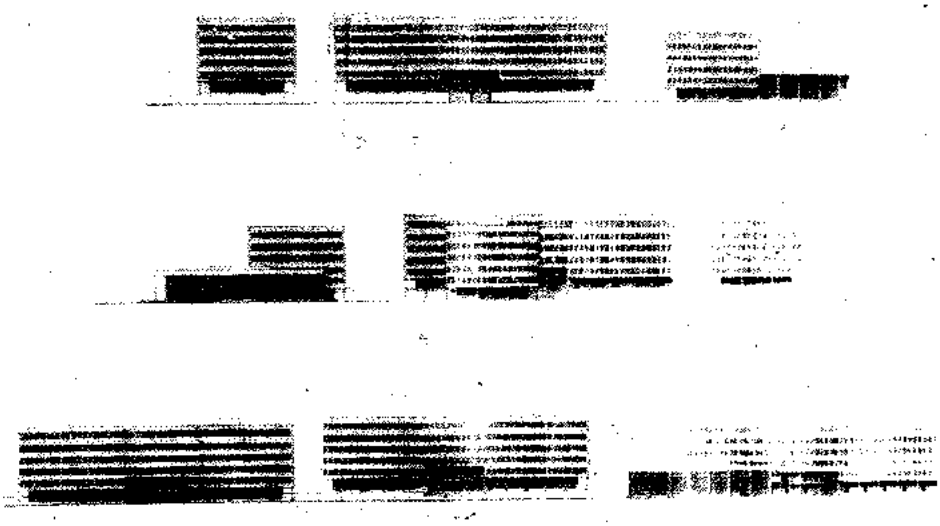

전체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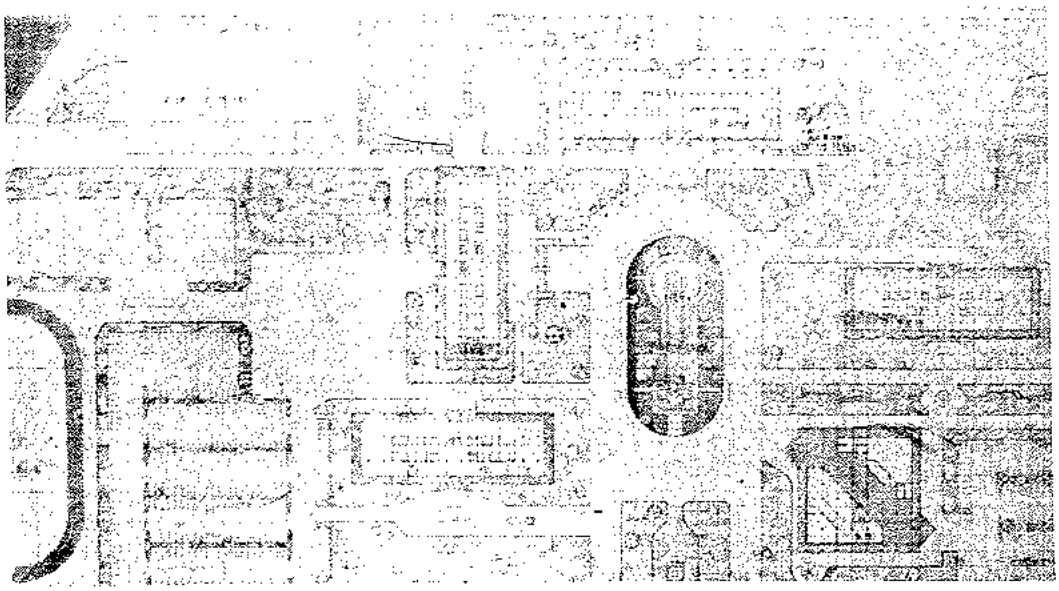

조감도

優秀作　宋基德　　正一建築研究所

건축의장 구조계획

의장계획

1. 현대적 재료의 사용에 의한 한국 건축미와 현대적 건물로서의 조화
2. View의 다양성 부여
3. 기존 정부청사와의 통일감 조성
4. Sky Line과의 조화를 위한 Mass의 분할
5. 정부종합청사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수직부재의 강조

구조계획

1. 6.6m 모듈(6.6×13.2m) Span을 S.R.C 조로 함.
2. 지하 집무장은 비상시에 대피목수 구조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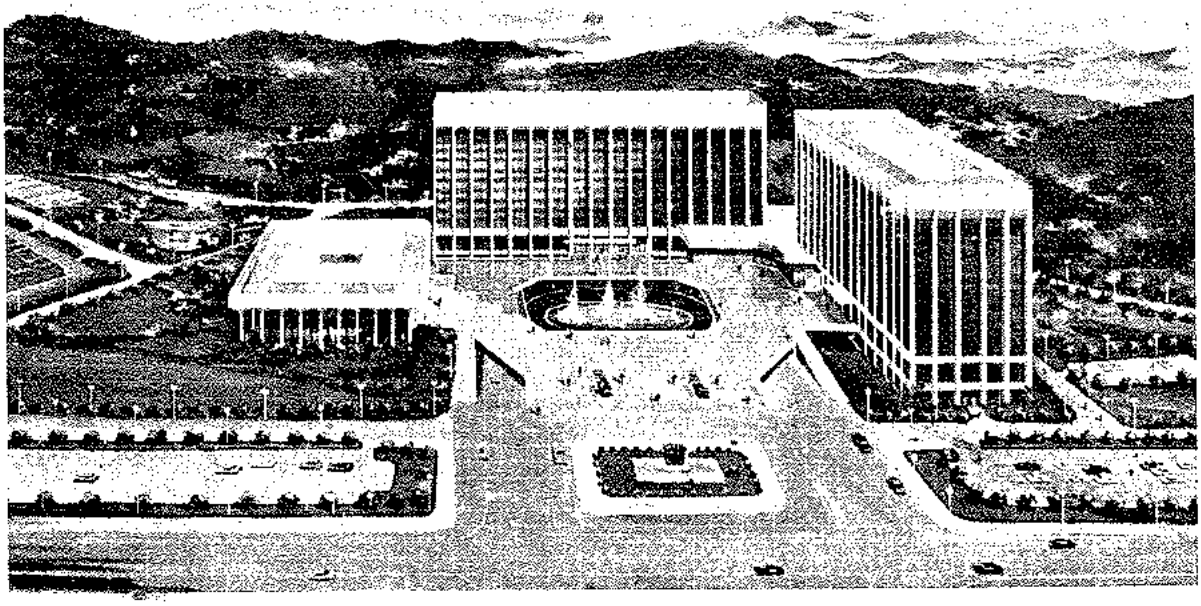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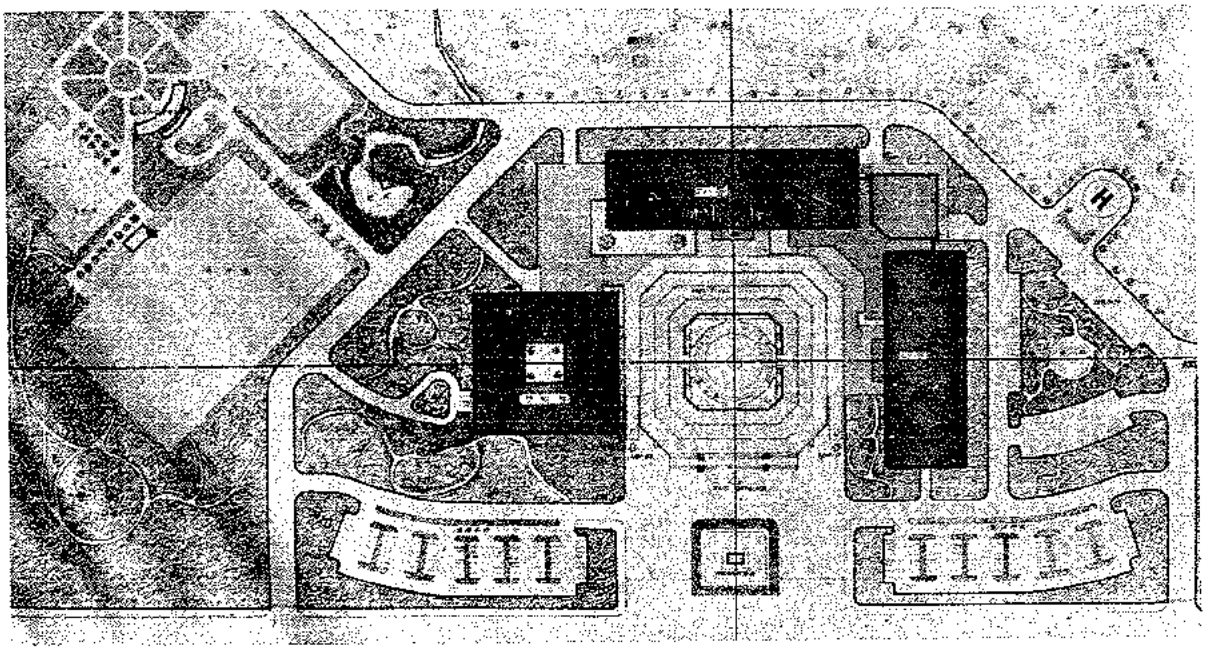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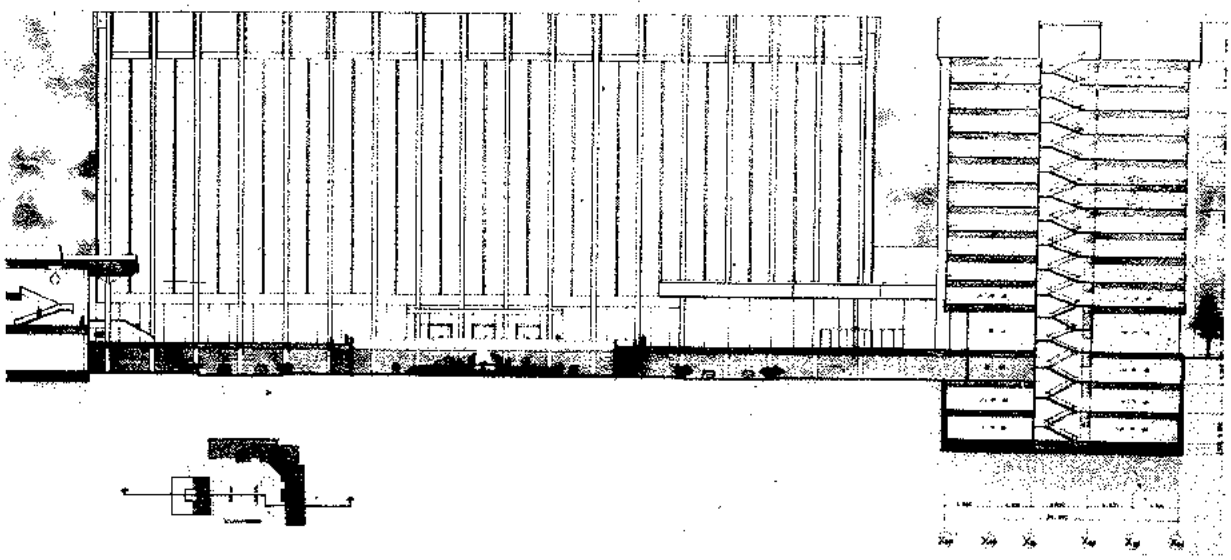

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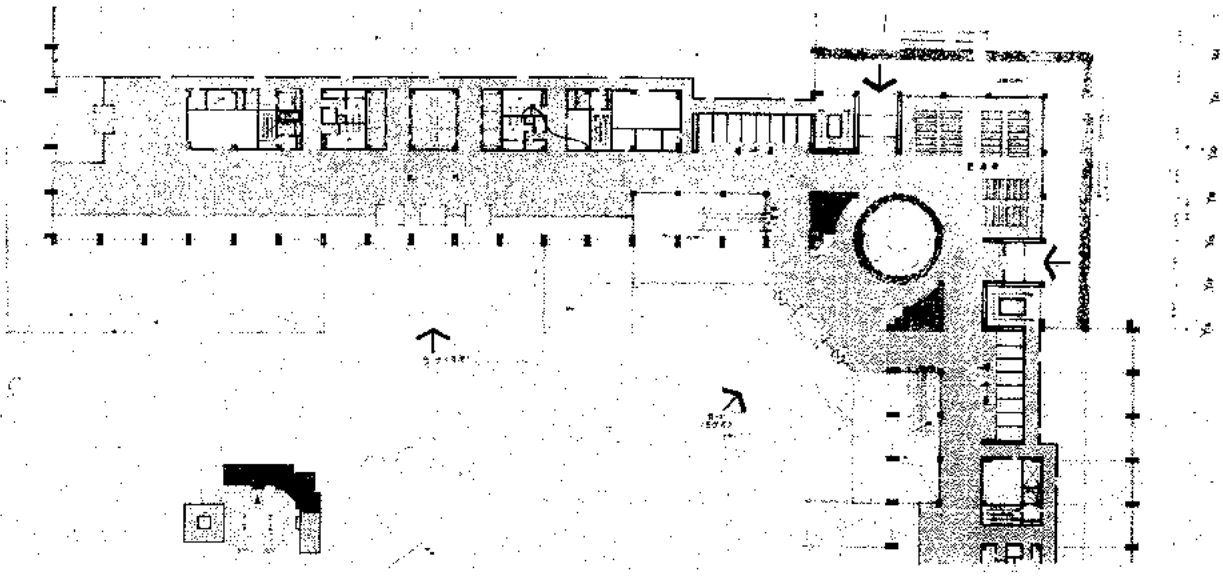

가.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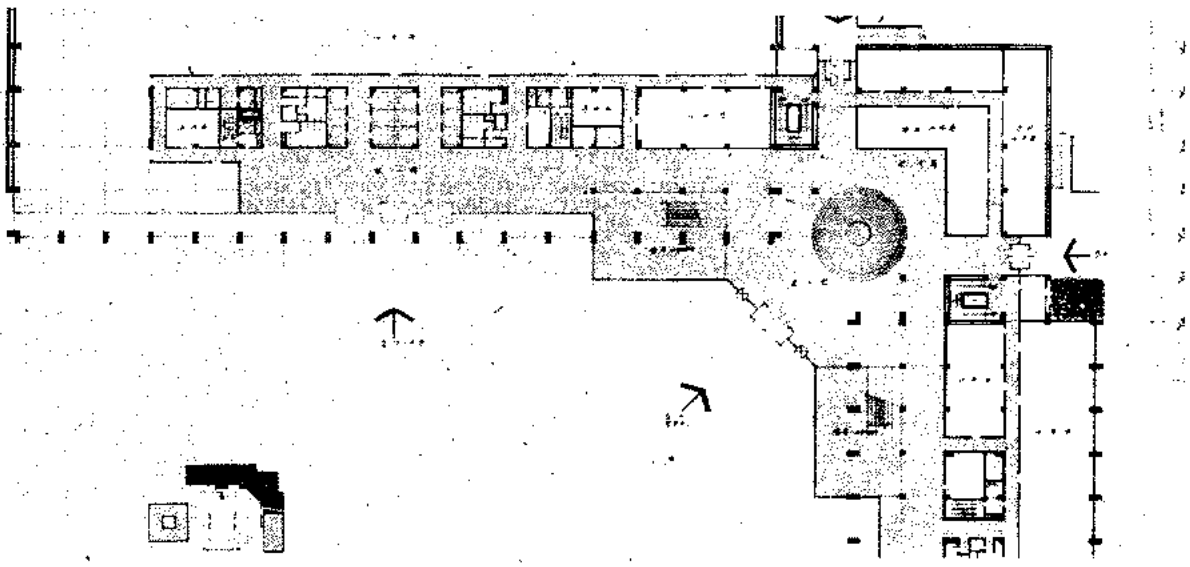

가.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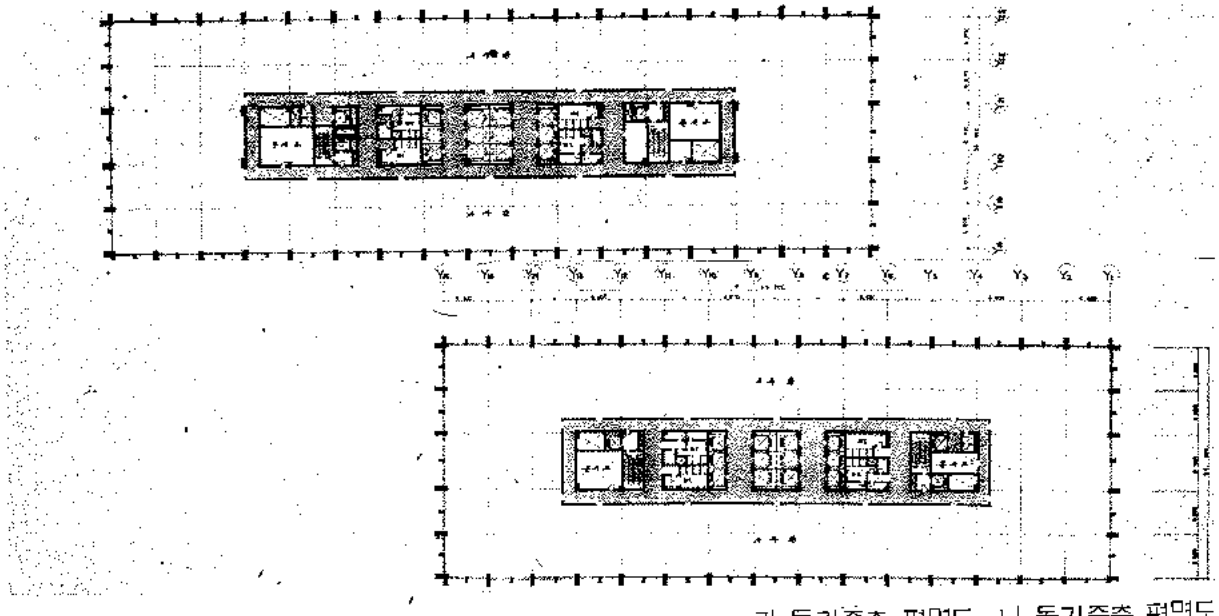

가. 동기준층 평면도 나. 동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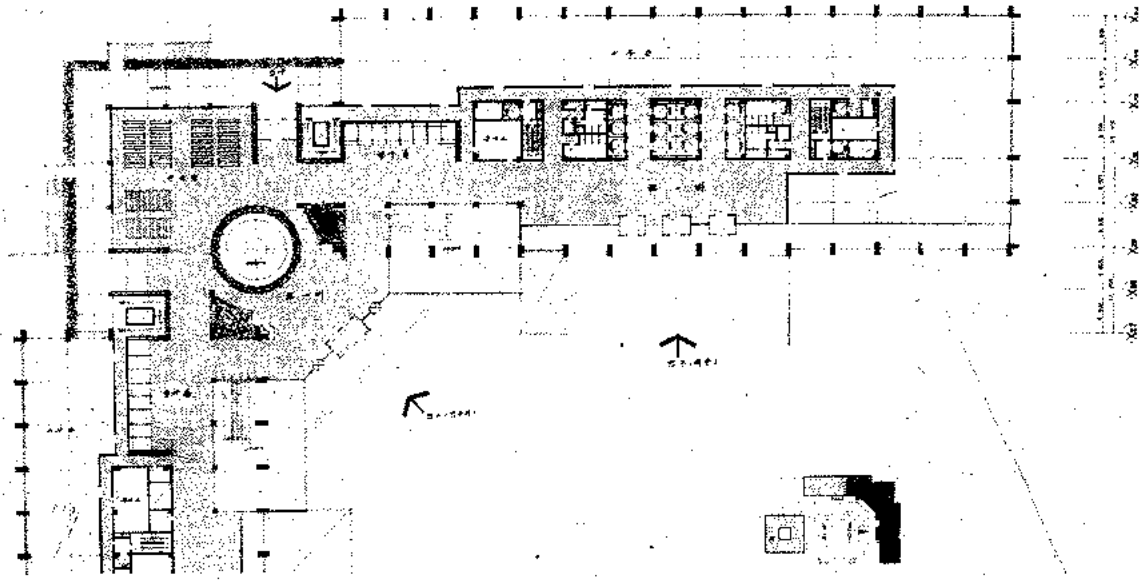

나. 동 2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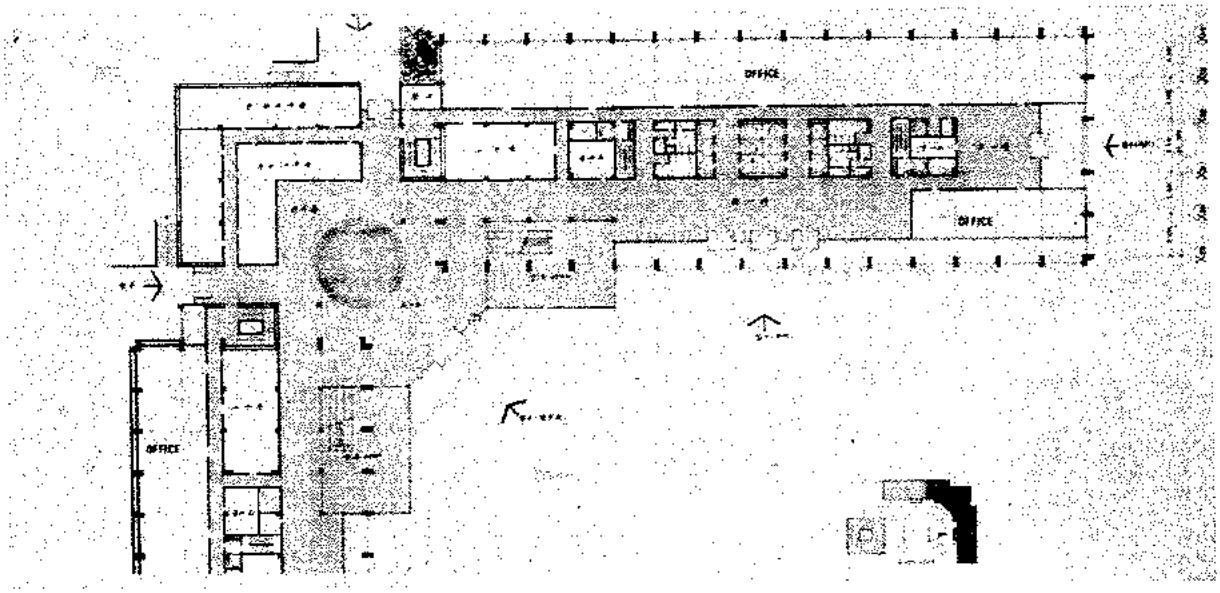

나. 동 1 층 평면도

優秀作　李丞雨 · 尹錫祐 · 姜哲求(案) 綜合建築設計事務所

설계조건 : 1. 現地形 · 地勢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
2. 청사의 관리유지 및 공사의 연차계획 등을 감안

계획 기본 개념

주어진 설계조건 및 설계지침에 의거

1. 자연조건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정부청사로서의 均齊美를 강조한 배치계획
2. 공사의 연차계획을 고려한 배치계획
3. 청사 사무실의 배분계획 및 기능성을 최대로 고려한 사무실 건물계획
4. 주위 환경, 효율적인 청사 관리유지를 고려한 건물 높이 계획 및 입면 처리계획
5. 상기 기능을 충족시키고 또 뒷받침 해 줄수 있는 부대 건물 계획등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계획함.

대지이용계획

대지의 이용에 따른 各施設物들이 차지하는 SAPCE의 대지면적에 대한 比分率은 다음과 같다.

건물 12.8%	주 차 장 7.9%
도로 12.6%	광　　장 17.6%
녹지 43.4%	운동시설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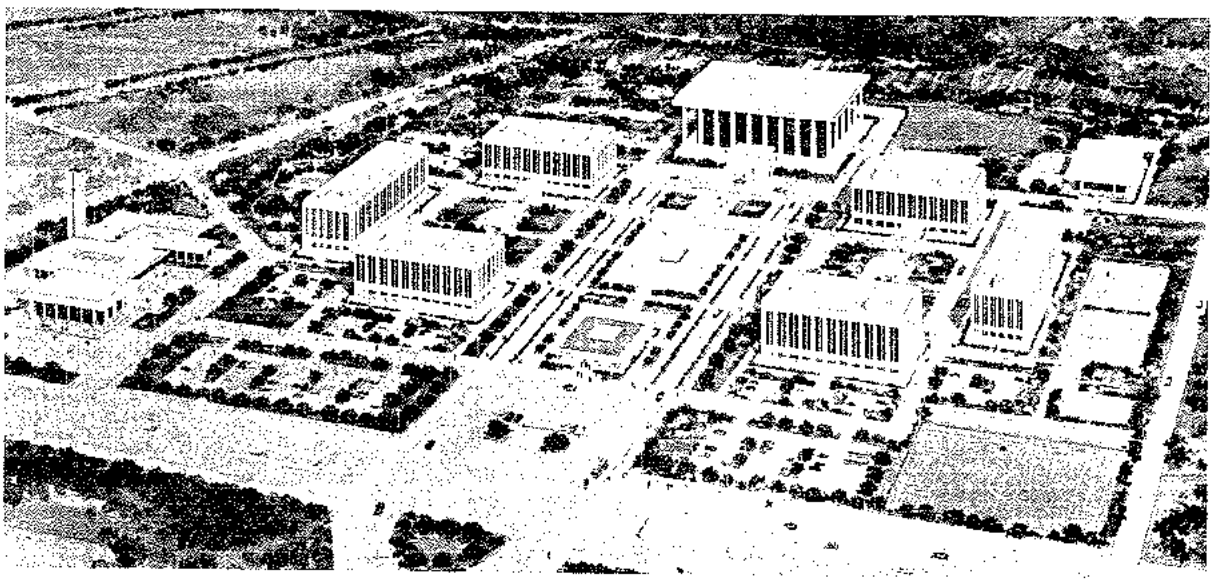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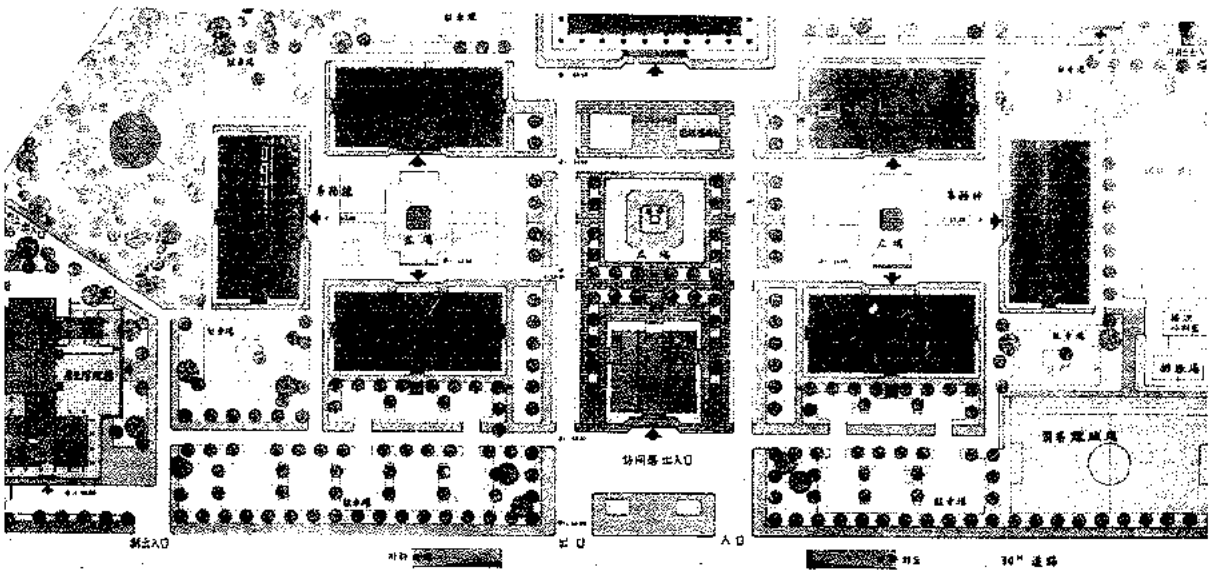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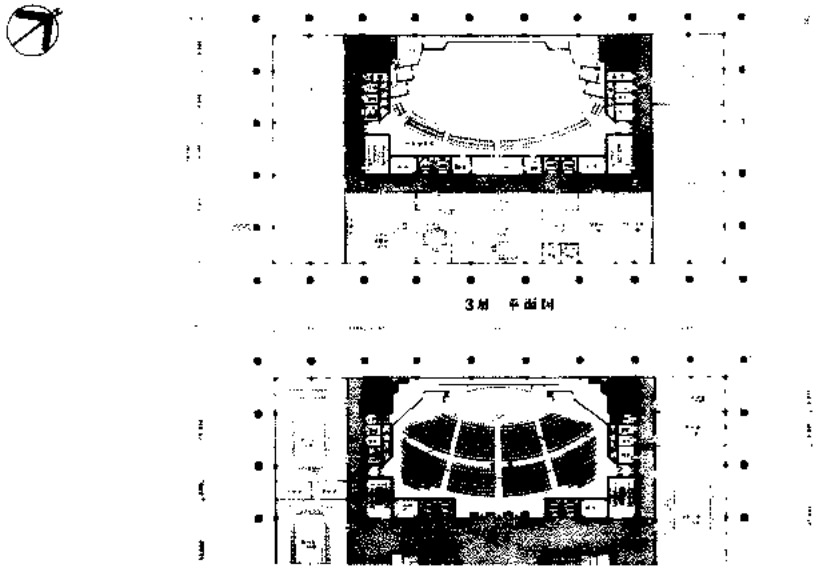

본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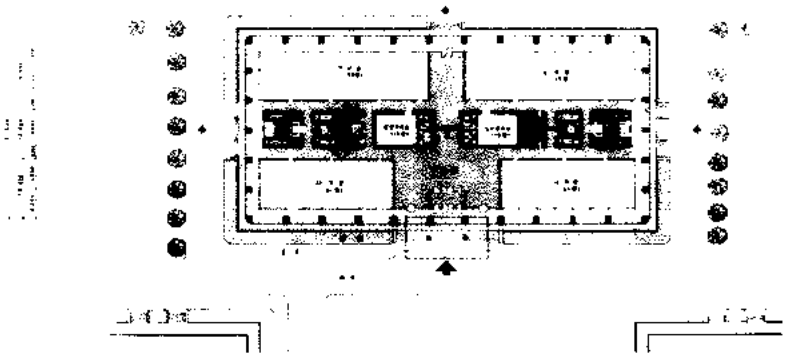

사무동 1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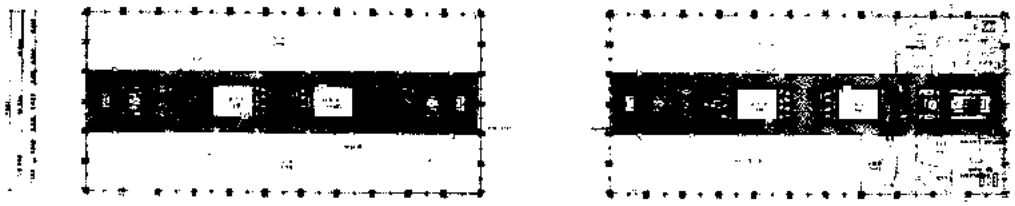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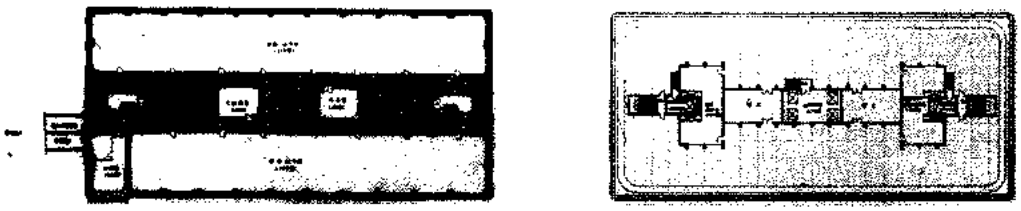

사무동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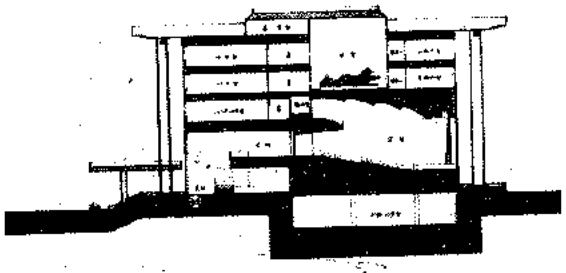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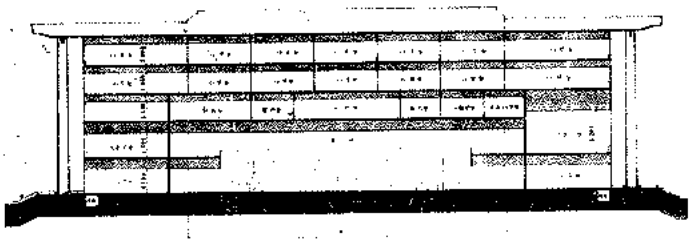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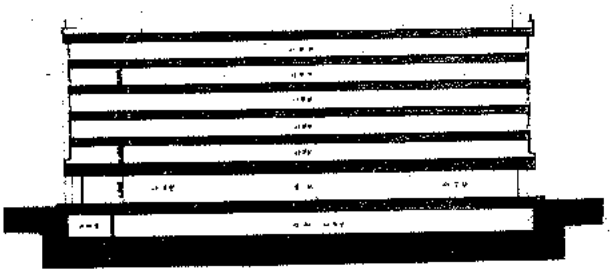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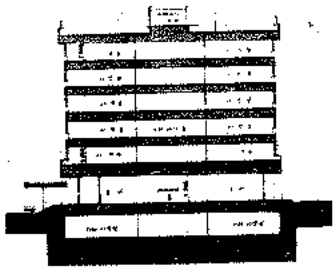

본관 종단면도　　본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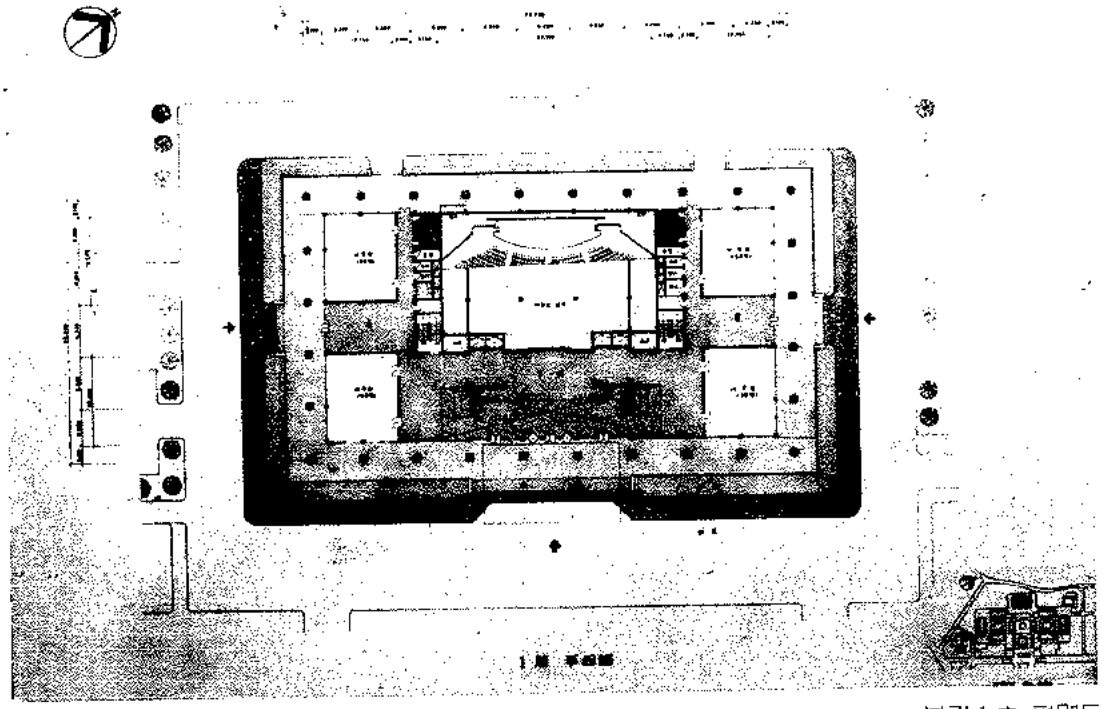

본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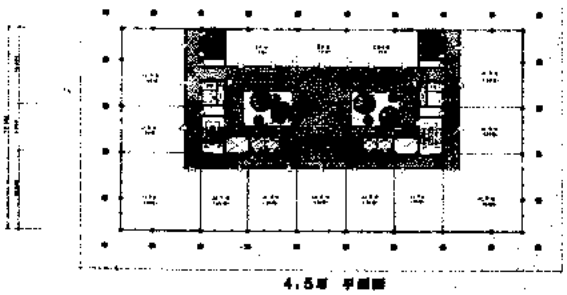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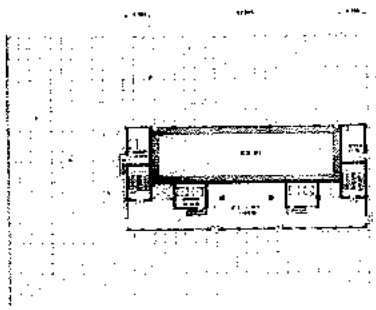

優秀作　朴春鳴　　朴春鳴建築設計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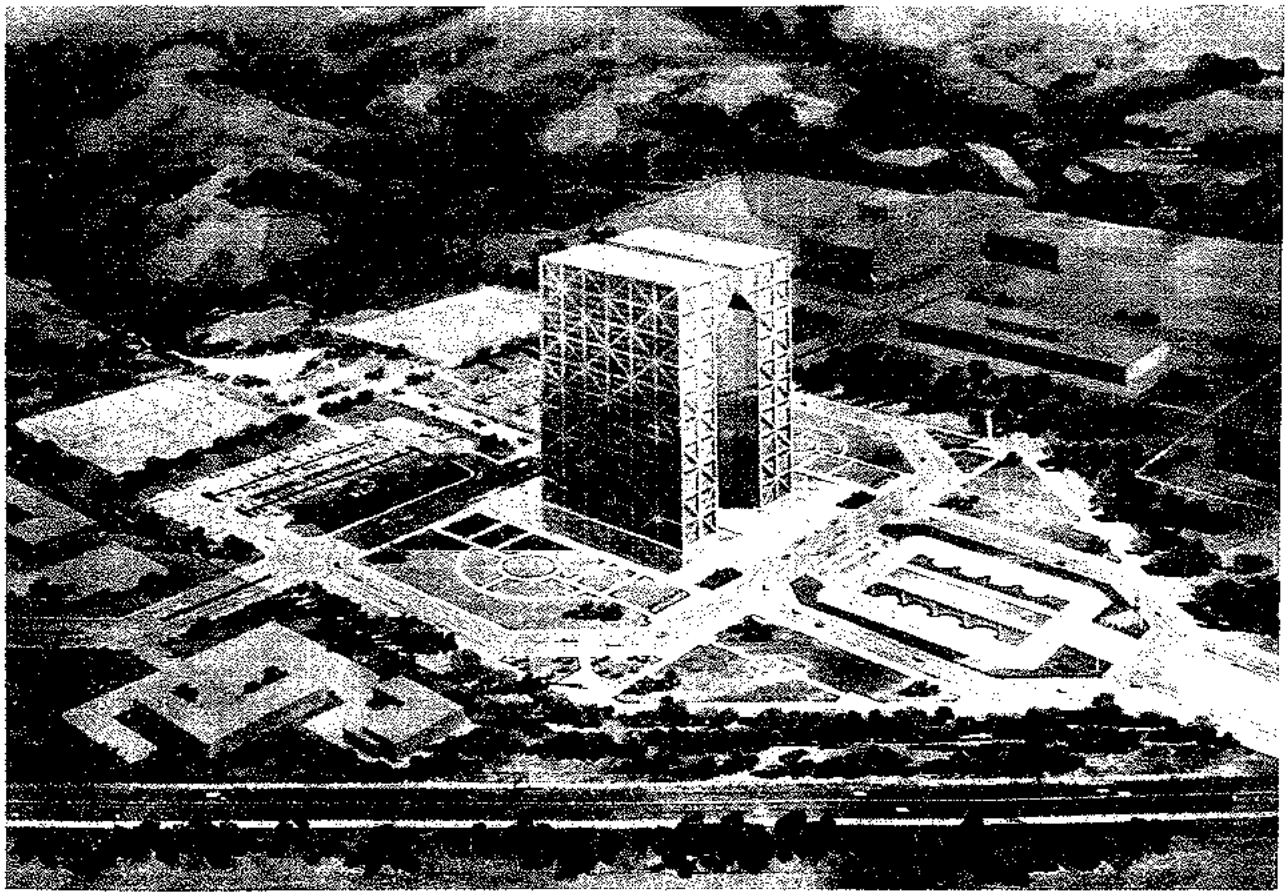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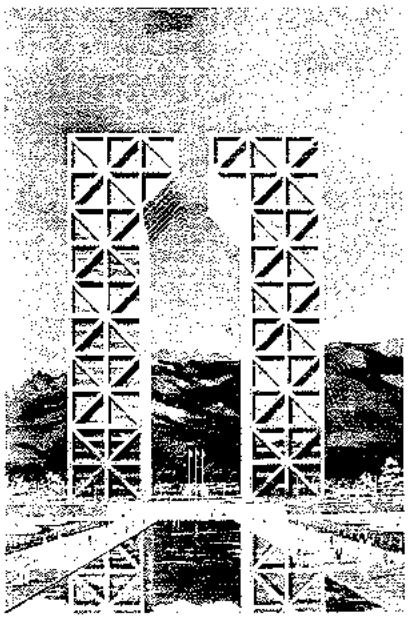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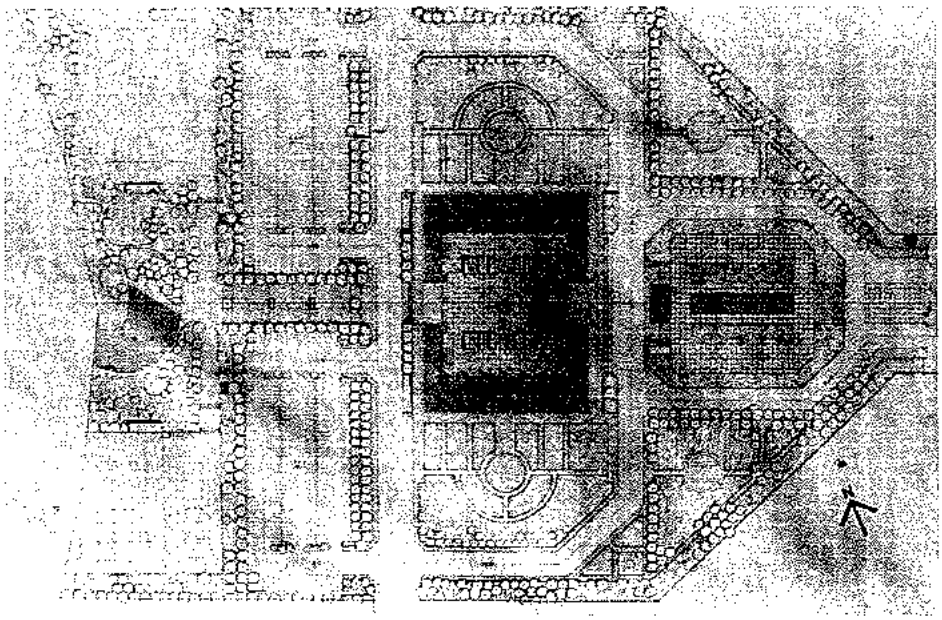

배치도

各大学校 建築工学科 巡訪

本欄은 各大学校 建築工学科를 巡訪 建築科 沿革・教授名単 教課目, 卒業年度別輩出人員, 卒業生作品 및 年例展示作品等을 収録 앞으로 輩出되는 建築学徒들의 社会参與에 길잡이 役割을 하자는데 그目的을 두고 原稿 先着順으로 掲載함을 알립니다.

国民大学造形学部 建築学科

建国大学編

■ 건축학과 연혁

년 도	내 용	비 고
1973년 12월	공학부에 건축공학과 인가	
1974년 3월	제1회 신입생 입학	
1976년	공학부에서 조형학부로 개편	
1976년 10월	제1회조형전(전통의 재인식)	미도파장미홀에서
1977년 1월	건축공학과에서 건축학과로 개명	
1977년 10월	제2회 조형전(한국의 미래상)	미도파 장미홀에서
1978년 10월	제3회 조형전(전통, 주거, 환경)	한국디자인포장센타

■ 교 강사진

교・강사명	담 당 과 목	비 고
서 상 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도학	교수・학과장
이 재 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제도, 단지계획	교수
김 희 춘	서양건축사	강사
김 봉 훈	건축구조역학 및 연습	〃
김 지 태	건축시공 및 적산	〃
금 누 리	조형실기, 입체구성	〃
문 신 규	실내디자인	〃
박 언 곤	한국건축사	〃
박 길 룡	건축설계	〃
우 정 상	조경설계	〃
이 용 하	철골구조설계, 철근콘크리트구조	〃
이 원 택	건축구조학	〃
이 희 욱	건축재료학	〃
전 동 훈	건축설계	〃
조 영 무	근대건축론, 현대건축론, 환경론	〃
조 영 민	건축설비	〃
조 철 호	특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전 영 선	소묘	〃
최 광 수	건축법규	〃

第 1 회 造形展

主題 : 韓国人의 손〈1976. 10〉

■ **傳統의 再認識**

- 住居를 中心으로한 "살림의 멋"發見 ((無形的인 것에서, 有形的인 것에서)
- 大多数의 民家 ← 韓國建築의 特性
  ↓ ↑
  住家의 雰圍氣認識 → 自然과의 調和
- 草家, 瓦家의 殘像(마을 形成, 住空間 의 展開, 살림의 멋, 風水地理, 生活의 知慧, 人間과 自然의 回復)
- 內外空間의 追求(Human scale, 自然과의 調和, 美의 法則 發見)
- 에필로그 : 傳統은 藝術家의 創造的 行爲에 의해서 만이 把握되고 繼承된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감히 傳統을 운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모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것"을 알고 또한 未來의 建築, 環境을 解決하는 方法論的 原理들, 形狀들, 그리고 未來를 豫見할 수 있는建築哲學, 建築言語를 蒐集, 整理하여 創作에로 이어가려는 慾心이었으나, 난생처음 해 본 作業이라, 體驗에 의한 硏究의 不足으로 다 메우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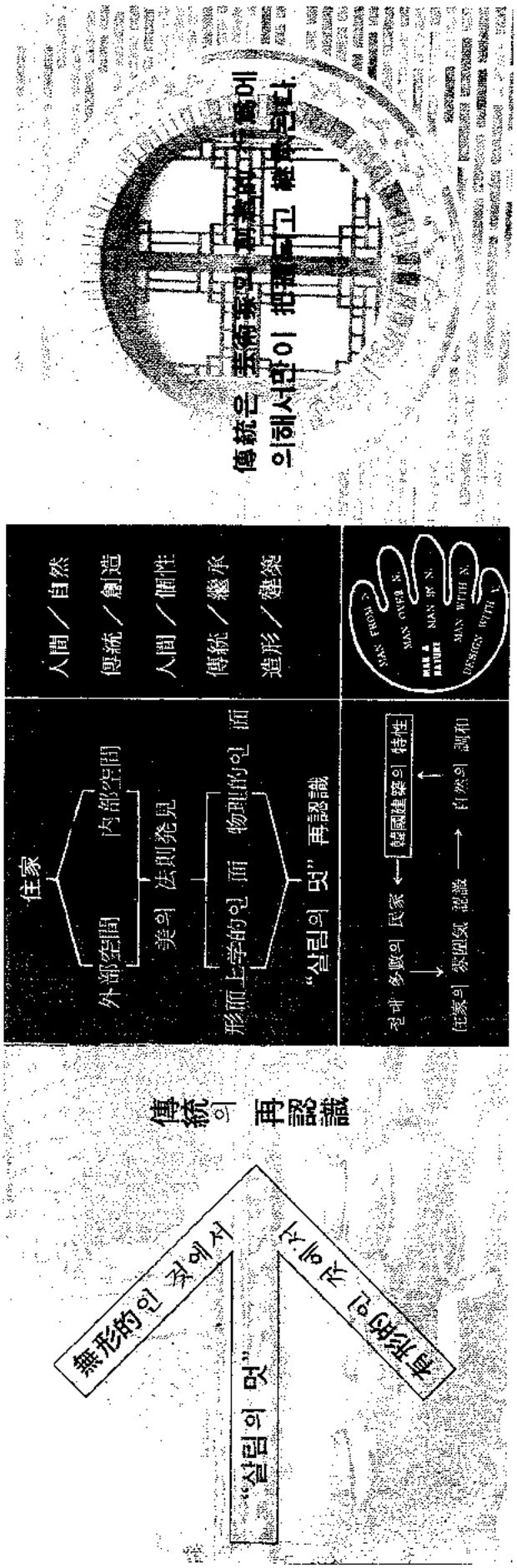

■ 건축학과 졸업생 현황
1978년 2월 제1회 졸업생 6명
3명 R.O.T.C군복무중
2명 설계사무소 근무
(공간사, 엄+이 건축연구소)
1명 학교근무(국민대 건축과 조교)
1979년 2월 제2회 졸업예정자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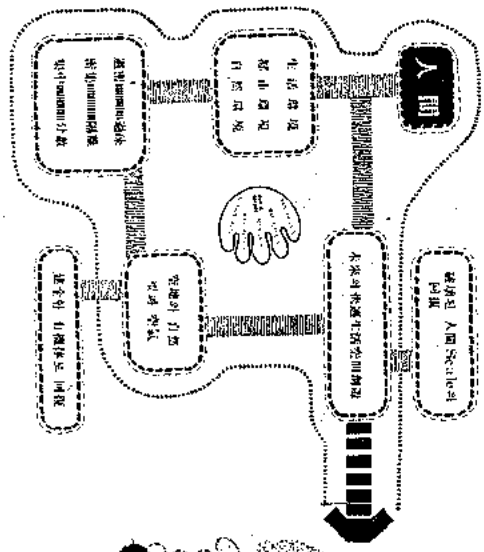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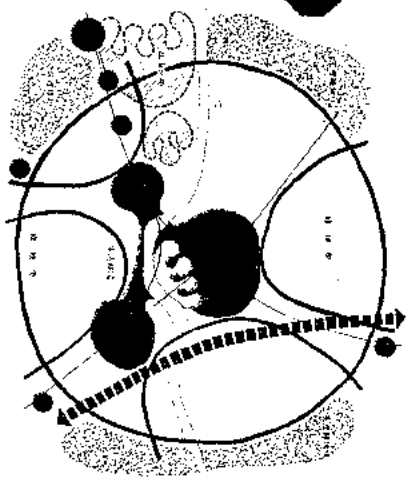

第2회 造形展

主題 : 韓国人의 눈〈1977. 10〉

老人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은, SPHINX의 視線과 같다.

이는 焦点을 잃은듯 하나멀고 永遠한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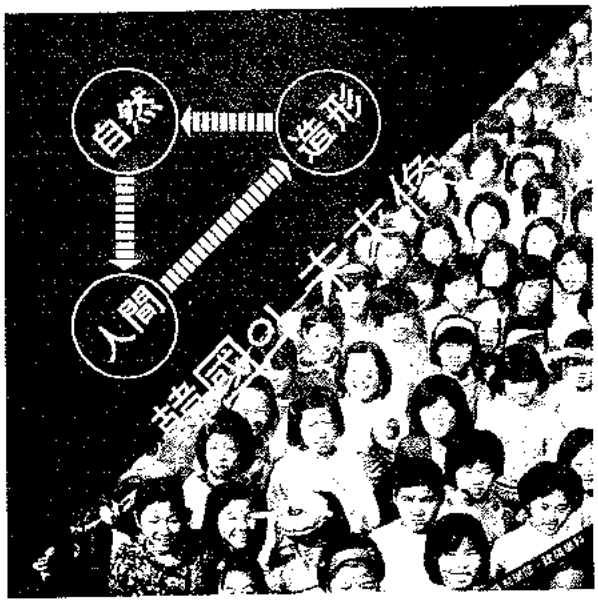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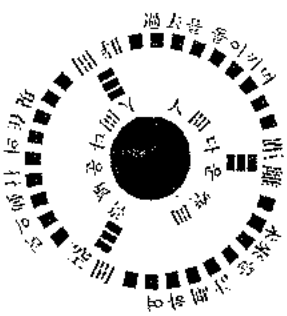

未來의 生活指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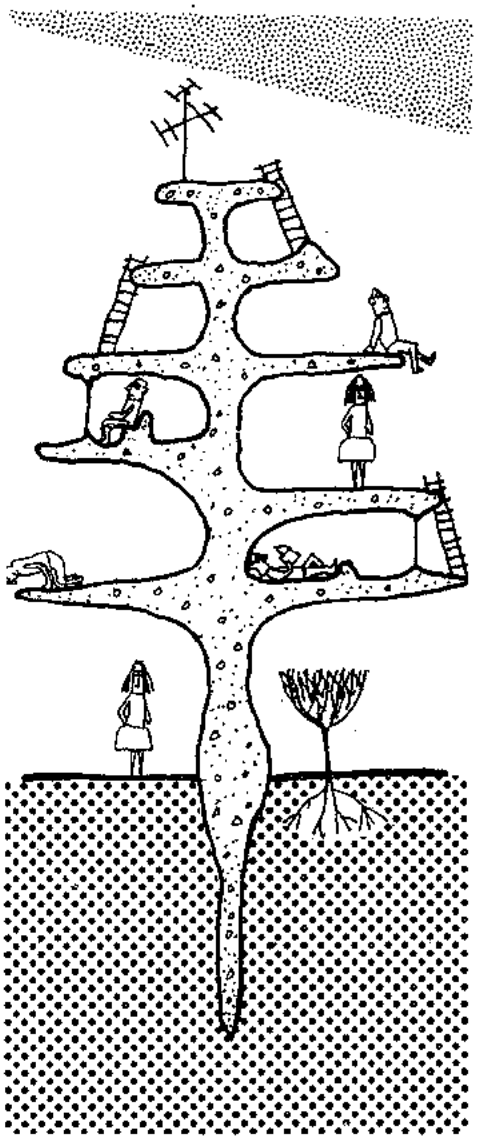

第3회 造形展 主題：韓国人의 造形美〈1978.1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광주 : 1978. 10. 20-24
학생회관
마산 : 1978. 10. 28-31
학생과학관
대구 : 1978. 11. 3-7
동아백화점
청주 : 1978. 11. 11-14
청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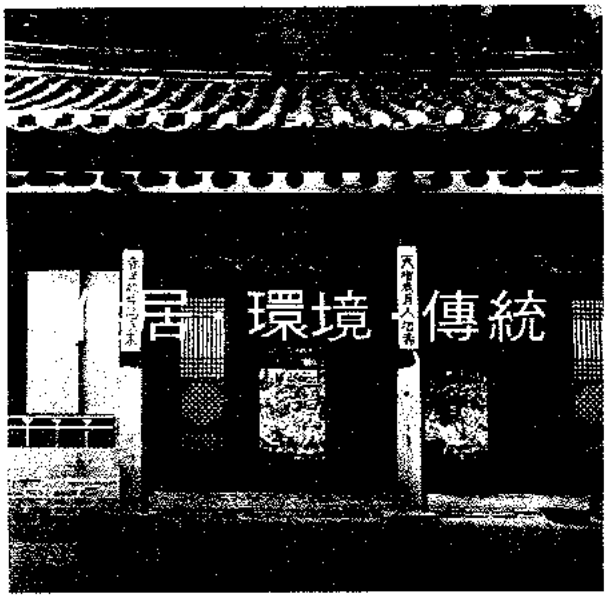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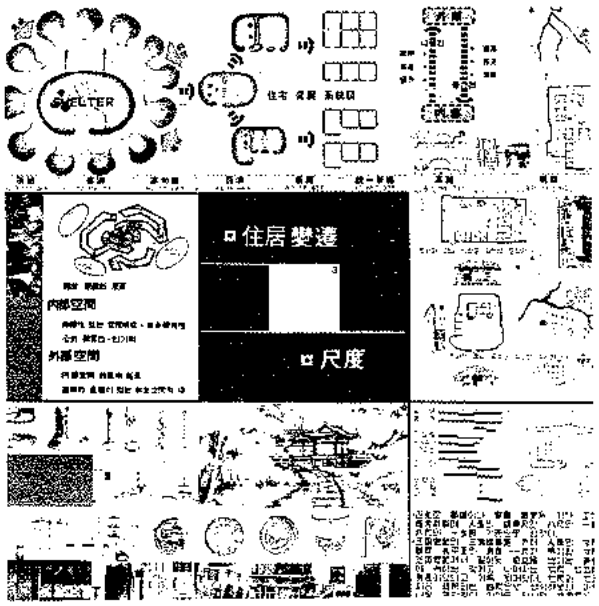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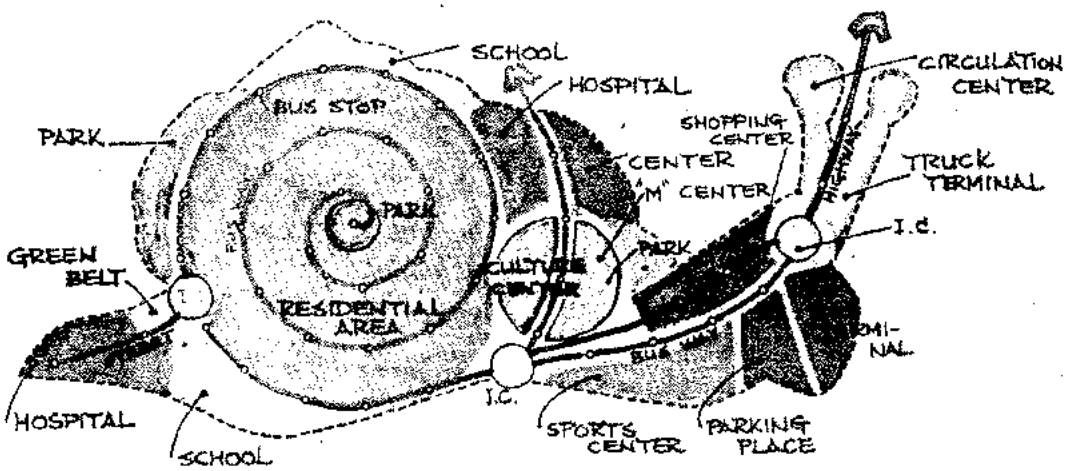
SCHOOL
HOSPITAL
CIRCULATION CENTER
BUS STOP
PARK
SHOPPING CENTER
CENTER
"M" CENTER
TRUCK TERMINAL
PARK
I.C.
GREEN BELT
PARK
CULTURE CENTER
RESIDENTIAL AREA
BUS
I.C.
HOSPITAL
SCHOOL
SPORTS CENTER
PARKING PLACE

▫精神·生活
▫材料·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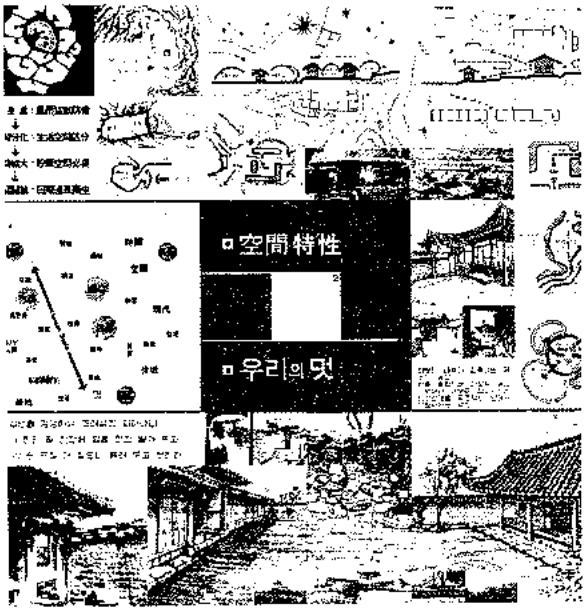
▫空間特性
▫우리의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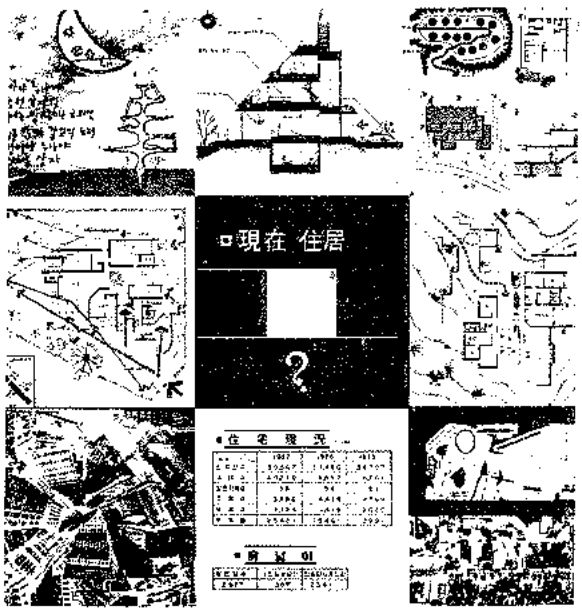
▫現在 住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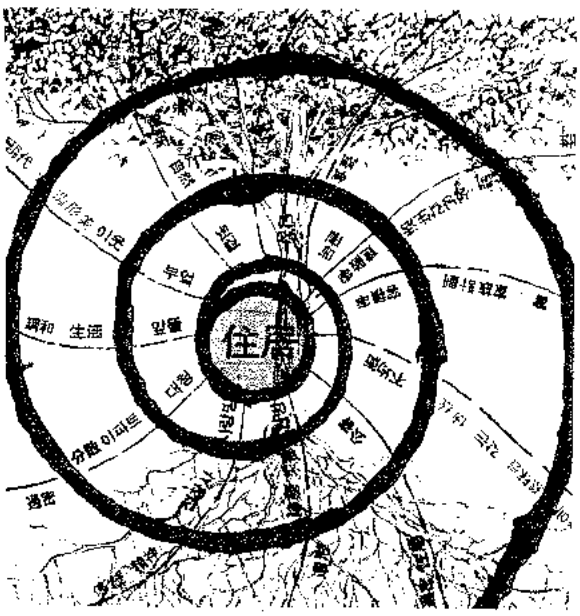
住居

대통령령제9.193호

1978년 10월 30일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13호 "아"목중 "외장을"을 "외부형태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나.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인 것.

15. "부속용도"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14호 각목에 적합한 용도를 말한다.

16.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동일가구 (도로, 하천, 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있는 동일 소유자 (건축을 전제로 사용승락을 얻은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및 공동소유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1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을 일단의 토지의 범위로 본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등기관계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3. 법 제2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⑤ 법 제2조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공동주택·공장·의료시설·창고시설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건축물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쿨링타워 배관휫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의 주차장 또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굴뚝, 계단등 벽체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돌출한 부분이 접한 면의 벽전체의 길이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제목"(직권의 위임)"을"(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제9조의2제2항"을 각각 "제9조의2 제3항"으로 한다.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동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게, 법 제6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및 법 제33조의 2 항의규정에 의한 승인권 재개발지구에 한한다 을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 6 조제 1 항단서중 "설계자의 준공확인서로써"를 "건축법규정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확인서로써" 로 하고, 동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각각 제 4 항 내지 제 6 항으로 하며, 동조에제 2 항 제 3 항 및 제 7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 ·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를 접수한 경우에 합동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8 근무시간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 · 군수는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없다.

⑦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건축사협회 기재,장비의구입,위법 또는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이나 이에 관련된 홍보, 건축물의 안전진단,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용도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제 6 조의 3 에 제 4 호 및 제 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경계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3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1조제 1 항단서중 "군사기밀"을 국가기밀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나"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7 조제 2 항 및 제 3 항과 법 제 7 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 1 항중 "학교 · 병원 · 진료소 · 기숙사 또는 숙박업용 건축물(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학교 · 의료시설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 숙박시설(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실 의 종 류	비 율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교실	5 분의 1
의료 시설의 병실 · 공동주택 · 숙박시설의 침실 및 이와 유사와 용도의 거실	7 분의 1

제14조제 3 항중 "극장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7조제 1 항의 표의 계단의 종류난 (2)중"백화점 ·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을 " 판매시설 ·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에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지장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람집회시설의 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표중 기타의 계단에 관한 사항을 준용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 지장할수 있다.

제22조제 1 항제 1 호중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집회장 · 전시장 · 여관 · 호텔 · 음식점 · 무도장 · 빠 · 카바레 · 유기장 · 공중목욕장 · 공동주택 · 체육관 · 백화점 · 사무소 · 병원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관람집회시설 · 전시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항시설 · 공동주택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창고시설 · 종교시설로 하고, 동조 동항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집회시설과 판매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300평방미터)마다 1 대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제91조 제 1 항제 1 호중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중 "병원 · 숙박업용 건축물 · 아파트 · 기숙사"를"의료시설 · 숙박시설 · 공동주택"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 3 호중 "백화점 · 시장 · 유흥음식점 · 무도장"을 "판매시설 · 위락시설"로 한다.

제91조 제 3 항중 "차고 · 자동차수리공장 · 주유소 · 위험물저장고"를 "자동차관련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로 한다.

제96조 제 2 항제 1 호중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체육관"을 "운동시설"로 한다.

제98조 제 2 항제 1 호중 "학교 ·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 · 시장 · 공중목욕당 · 차고"를"학교 · 관람집회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로 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중 "백화점 · 공동주택 · 기숙사 · 병원 · 창고"를 "공동주택 · 의료시설 · 창고시설"로 한다.

제98조 제 3 항 1 호중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관람장 · 공회당 · 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중" 공동주택 · 기숙사 · 병원"을 "공동주택 · 의료시설" 로 하며, "동조 동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 관련시설

제98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 2 (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람집회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공동주

택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를 겸용할 수 없다.

제102조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03조의 표의 복도의 구분난중 "병원의 환자용 복도"를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로 한다.

제104조 제1항의 표의 거실의 종류난(1)중 "백화점의 매장"을 "판매시설의 매장"으로 하고, 동난(2)중 "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5조 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병원·의원·백화점·숙박업용건축물·아파트·기숙사"를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6조 제3항 및 제5항중 "백화점 "을 각각 "판매시설"로 한다.

제107조 제1항제3호중 "옥내로 통하는"을 "옥내에 면하는"으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백화점"을 각각 "판매시설"로 한다.

제109조 제2항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백화점"을 동조 제3항중 "판매시설"로 한다.

제110조 제3항중 " 병원·백화점·호텔·집회장·아파트·사무소"를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로 한다.

제113조 제1항제1호중 "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을 "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창고·화장장·도살장을 "창고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로 한다.

제1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8조중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로 한다.

제1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 2 (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스배관설비를 위한 피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2. 가스공급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3조 제1항중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호텔·여관·기숙사·정거장"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29조중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한다.

제134조 제1항 단서중 "학교·병원·공동주택·여관·호텔·기숙사"를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숙박시설"로 한다.

제139조 제2호중 "백화점"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1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2. 위락시설
3. 숙박시설
4. 관람집회시설
5. 판매시설
6. 창고시설

제1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건축물
2. 교육 및 연구시설

제155조 제3호중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학교·도서관·병원· 박물관·식물원·수족관"을 "근린공공시설·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전시시설"로 한다.

제155조의2 제1항제1호중 "아파트·연립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판매장·공중목욕탕(독탕 기타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목욕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주유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판매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4. 당해 지구내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근린운동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5. 교육 및 연구시설(중·고등학교에 한한다)
6. 근린공공시설

제15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3 (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시가화 조정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내의 건축물

2. 당해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및 생산물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건축물

3.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군사시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제158조의 3중 "별표 8 제 4 항"을 "별표 8 제 2 항 내지 제12항"으로 한다.

제159조제 1 항제 1 호중 "폭 20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를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 미터이상 접한 대지"로 한다.

제160조 제 1 항 제 2 호중 "300퍼센트"를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 퍼센트)"로 한다. 제160조제 1 항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및 새마을사업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제163조제 1 항중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에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와 12미터이상 접하고 또한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이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64조 중 "공원·광장·하천·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을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또는 제 2 조제 5 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으로 하고, "법 제41조 제 1 항"을 "법 제41조제 1 항 및 제163조"로 한다.

제165조중 "법 제41조제 1 항"을 "법 제41조 제 1 항 및 제163조"로 한다.

제167조제 1 항 본문중 "법 제41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법 제41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하며, 건축물중 일부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67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동일대지내에서 공동주택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 수평거리를 6 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 층이하인 경우에는 4 미터)이상으로 한 경우와 공동주택등에 부속되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 2 제 1 항중 "건축선"을 "건축선(제 2 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건축선, 제 3 호의 경우에는 폭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 하고,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동항제 2 호중 "백화점·호텔·병원"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의료시설인 경우 : "로 하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마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 : 6 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제168조의 3 (대지내의 조경) ① 법제 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 미터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기타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제 1 항중 "제 5 조제 1 항"을 "제 5 조제 2 항" 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 4 항제 7 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동항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위원수의 30퍼센트를 과할 수 없다.

7.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제17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 2 (용도변경)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다만, 법 제 5 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으로 본다.

1. 별표 1 내지 별표 9 각항 및 부표 제1항 내지 제30항에 정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
2. 공장부속건축물의 공장용도로의 변경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공원 및 유원지 경역에서 건축허가·구역지정 또는 경역결정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9조를 삭제한다.

제180조 제2항중 "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을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로 하고" "그 적합하지 아니한 건폐율·용적율 또는 높이 제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을 삭제한다.

제180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 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1. 기준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내에서 별표 13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및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 법 또는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게할 수 있다.

별표 1 내지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부표 및 별표13을 각 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건축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영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9년 12월31일 까지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표) 건축물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항 각호에 따라 분류 한다

①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1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관
3. 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

②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2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도록된 주택을 말한다

1. 연립주택
2. 아파트
3. 기숙사

③ 근린생활시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300 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건축자재의 소매점

나.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소개업소, 수리점, 기원, 사진관, 목공소.

2. 약국, 의원, 조산소, 탁아소, 동물병원
3. 간이음식점, 대중음식점, 전문음식점, 과자점, 다방
4. 공중목욕장 (목욕탕중 공동탕에 한한다)
5. 차고 (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공회당 마을공동 작업장, 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7. 공중변소

④ 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 관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우체국 또는 전신전화국· 보건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2. 유치원

3. 국민학교

4.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도서관 및 독서실

⑤ 근린운동시설

1. 탁구장

2. 정구장

3. 체육도장 (태권도장. 합기도장.유도장 요가장. 헬스크럽 실내골프 연습장 등을 포함한다)

⑥ 종교시설

1. 교회. 성당. 사찰

2. 수도원. 수녀원. 기도원

기타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⑦ 노유자시설

1. 양육원

2. 양노원

3. 기타 노유자만 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⑧ 의료시설

1. 병원

2. 종합병원

3. 요양소

⑨ 교육 및 연구시설

1.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3. 연구소

4. 직업훈련소

5. 사설강습소 (자동차운전 교습장을 제외한다)

6. 연면적이 1,000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도서관 및 독서실

⑫업무시설

1. 청사

2. 임대사무실

3. 차가사무실

⑩ 관람집회시설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예 식장. 관람장. 집회장

2. 기타 제 1 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⑪ 전시시설

1. 박물관· 미술관

2. 동· 식물원

3. 수족관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 는 전시장

⑬ 판매시설

1. 판매장의 바닥면적이 300 평방 미터 이상인 슈퍼마켈 백화점· 시장· 점포

2. 도매시장

3. 농산물 · 축산물 또는 수산물전용 판매시설 (제 3 항 제 1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⑭ 숙박시설

1. 여관 · 여인숙· 하숙 (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을 제외한다)

2. 호텔

3. 청소년호텔

4. 자동차 여행자호텔

⑮ 창고시설

2. 하역장

⑯ 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

2. 무도장

3. 공중목욕장 (공동탕을 제외한다)

4. 사격장· 스리트 머신장· 보링장· 당구장 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기장

⑰ 공장

물품의 제조 · 가공 (세탁. 염색. 도장. 표백. 재봉등을포함한다) 및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도시계획 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 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2. 상시 작업인원이 10인 이상인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공해가 없는 작업장으로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공업은 제외한다

3. 공기압축기 전기 또는 아세칠렌 용접기를 사용하는것

4. 한지를 제조하는 것

5. 종이 또는 직물류의 세척· 염색· 표백 및 선별하는 것

6.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것

7. 동력톱나 로라를 사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것

8.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⑱ 공해공장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

1. 독극물질의 제조

2.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제조

3 화학섬유의 제조

4. 석탄가스 ·콕크스·활성탄의 제조 (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합성염료· 안료· 도료의 제조

6.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제빙 또는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 방향유· 인조가죽 방수지의 제조

8. 아스팔트의 제조나 아스팔트 콜탈 콜탈 석유종유산물 또는 그 잔유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9. 비료의 제조
10. 동력뢰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11. 시멘트·석고·소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12.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 (용량 50리터 이하인 용해용기를 사용하는것 또는활자·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을 제외한다)
13.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또는 흑연의 분쇄
14. 중금속의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의 도금
15. 유리의 제조
16. 제지·팔프의 제조 (한지의 제조를 제외한다)
17.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삭마작업 또는 리벳트 치기작업(그라인다를 사용하는 삭마작업을 제외한다)
18. 출력의 합계가 4킬로왓트 이상인 원동기로 가동하는 로울을 사용하는 금속선·금속판 또는 금속관등의 압연
19. 동물사료의 제조
20. 피혁의 제조
21. 염색가공

⑲경도공해공장 공해공장 이외의 공장

⑳ 작업소 공장이외의 작업장

㉑ 자동차 관련시설

1. 자동차수리 공장
2. 세차장·폐차장
3. 자동차매매장·자동차 부속상
4. 영업용 차고 (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자동차 정류장
6. 자동차 운전교습장

㉒ 동물관련시설

1. 도축장
2. 축사
3. 부화장
4. 가축시장

㉓ 장의관련 시설

1. 장의사
2. 화장장
3. 납골당
4. 묘지에 부수되는 시설

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요소 기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자가난방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㉕ 진애 및 오물처리장

㉖ 운동시설

1. 체육관
2. 경마장
3. 수영장
4. 사격장
5. 골프장

㉘ 교정시설

1. 교도소
2. 구치소
3. 소년원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4. 감화원
5.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이용되는 것

㉘ 군사시설

㉙ 공항시설

㉚ 촬영소

㉛ 공원시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안내소· 휴게소·대피소 매표소
2. 운동시설 (근린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유희시설 (사행성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전망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전시시설
5. 도서관
6. 연면적이 300 평방미터 이하인 판매장·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및 다과점
7.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변전시설·양수장·정수장

㉜ 유원지 시설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안내소·휴게소·대피소 매표소
2. 운동시설 (근린운동시설을 포함한다)·유희 시설 전망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전시시설
5. 연면적이 300 평방미터 이하인 판매장·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및 다과점
6. 숙박시설
7. 근린공공 시설 (국민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별표 1〕 주거전용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근린공공시설

④ 근린운동시설

⑤ 노유자시설

⑥ 종교시설(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상 띄우고, 수림대등 처음시설을 설치하고 연면적이 1,000 평방미터 이하로서 타종시설이 없는것에 한한다)

〔별표2〕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숙박시설(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을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③ 위락시설

④ 창고시설(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일차산업에 부수되는 창고와 농산물 보관창고를 제외한다)

⑤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⑥ 촬영소

⑦ 자동차관련시설

⑧ 공장

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지하저장시설을 갖춘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⑩ 장의관련시설

⑪ 진애 및 오물처리장

⑫ 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이하인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3〕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위락시설

②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 자동차관련시설

④ 공장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⑥ 진애 및 오물처리장

⑦ 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이하인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공장(연면적의 합계가 495평방미터 이하인 자동차수리공장을 제외한다)

②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주유소와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③ 진애 및 오물처리장

④ 동물관련시설(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 도계장을 제외한다)

〔별표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공장

② 근린생활시설

③ 근린공공시설(시장·군수가 지역의 지정목적 및 토지의 이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④ 교육 및 연구시설(연구소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⑤ 창고시설

⑥ 자동차관련시설

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위락시설

② 관람집회시설

③ 판매시설

④ 숙박시설

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에 한한다)

⑥ 의료시설

⑦ 노유자시설

⑧ 공동주택

⑨ 단독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별표7〕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공해공장

② 위락시설

③ 관람집회시설

④ 시장·군수가 지역 지정목적 및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 내에서의 숙박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별표8〕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운동시설

③ 교육 및 연구시설

④ 의료시설

⑤ 노유자시설

⑥ 전시시설

⑦ 교정시설

⑧ 군사시설

⑨ 공항시설

⑩ 촬영소

⑪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한한다)

⑫ 장의관련시설

⑬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

⑭ 단독주택 및 2층이하인 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 및 녹지보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별표9〕 생산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③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 및 2층이하인 공동주택

④ 근린생활시설
⑤ 근린공공시설
⑥ 근린운동시설
⑦ 창고시설(연면적이 3,000평방미터이하인 정부양곡보관창고로서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입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군사시설·통신시설·보안시설
⑨ 종교시설
⑩ 공장(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도정공장으로서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⑪ 의료시설

〔별표10〕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경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공원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전투경찰대용 시설을 포함한다) 통신시설 및 보안시설
③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
④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종교시설(개축에 한한다)
⑤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유치원 및 국민학교를 포함하며, 증축·개축 및 재축에 한한다)

〔별표11〕 유원지 경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유원지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유원지 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하고, 당해 유원지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별표13〕 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공장 증축협의 기준

① 당해 입지내에서 계속하여 존치할 공장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이전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공해업체가 아닐 것. 다만, 공해업체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frac{1}{2}$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증축하고자 하는 공장은 기존공장과 용도상·운영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
④ 대지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확보된 범위내일것.
⑤ 녹지지역내에서 기존공장의 대지가 공원경역·유원지경역·자연환경보존지구,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보호구역등의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일것.
⑥ 녹지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주변에 농경지가 산재한 경우에는 공장가동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일것.

改正建築法施行令解說

李 弼 遠

1. 改正에 이르기까지

建築法施行令이 다시 改正되어 지난 10. 30부터 施行되고 있다. 昨年에 이어 9번째의 施行令改正이 되는 것으로서 62년 法制定이래 6次의 法改正, 9次의 施行令改正을 合하면 總 15次의 法規改正이 있은 셈이다. (表-1 參照) 比較的 變更이 잦다고 할 수 있으나 建築法規는 그 屬性이 他法令에 比하여 時事性이 強한 面과 急激한 社会変化에 対処하는 点에 비추어 보면 不可避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趨勢는 現行 建築法体系인 一体의 建築에 対한 市長·郡守의 個別的 許可制度를 改革하지 않는 限 継続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表-1(1) 建築法施行令改正状況

区 分(年度)	改 正	削 除	新 説	条文의数
制 定(1962)	-	-	-	128条
1次改定(1964)	23条	13条	7条	122
2次改定(1965)	-	-	2	124
3次改正(1968)	14	-	6	130
4次改正(1970)	한글화 하면서 全文改正			135
5次改正(1971)	3	-	4	139
6次改正(1973)	全 文	改 正		180
7次改正(1976)	37	-	14	194
8次改正(1977)	40	1	1	194
9次改正(1978)	37	1	3	196

建築士78. 6. P. 10 李文輔教授作成表 引用하여追加함

이번 改正의 主要한 理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7. 12. 30 法改正에 따른 施行令의 関聯条文의 改正이 必要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垈地의 定義補完, 造景義務化, 用途変更節次및 許可対象의 決定 等이 改正되었으며

둘째, 現行規程上 未備点의 補完이 必要했기 때문이다. 垈地안의 空地, 日照権, 垈地의 定義中 一団의 土地의 範囲등에 関한 現定의 改正과 用語의 定義및 面積, 높이 등의 算定方法의 変更이 이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셋째, 새로운 規制条項의 新設의 必要性 때문이다. 文化財周囲 建築의 規制, 都市計劃上 새로이 指定되는 市街化調整地区内 行為制限, 同一建築物内 防火上 有害한 複合用途便用의 禁止가 이에 該当되는 것이다.

2. 主要한 改正内容

우선 이번 改正의 特徵을 説明하면 用途規制의 合理化로서 用途의 系列化및 이에 따른 用途変更節次의 簡素化; 地域地区内 建築物의 用途制限의 合理的 調整이 이루어졌으며, 둘째 從来의 限定된 造景義務의 拡大를 들수 있는데 이는 公害防止, 美観確保, 街路景観造成에 큰뜻이 있지만 建築士의 業務範囲를 拡張시킨데도 意義가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用語의 定義, 面積·높이의 算定方法等 実際 適用上 一部 問題点에 対하여 明白히 한 点이다. 改正의 内容을 説明의 便宜를 위하여 主要한 項目別로 나누어 詳述하고자 한다(建築法, 施行令, 施行規則을 各各 '法' '令' '規則'으로 表記한다)

1) 垈地의 定義等 用語의 定義를 補完함(令 2条및 3条)

가. 垈地의 定義가 地籍法上 一筆地로 된 從来의 規定을 補完키위하여 令2条4項을 改正하여 '同一 所有者의 土地로서 道路, 河川, 緑地等으로 区劃된 土地'로 하므로서 同一所有者의 範囲를 詳述하여 自己의 所有가 아니더라도(建築을 前提로 하여 使用 승낙을 얻은 境遇, 地上権이 設定된 境遇및 共同所有의 境遇에도 該当되는것으로 明白히 하였고 그外에 2筆地以上으로 할 수 있는 例外規程도 細分하였다.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경우 그建築物이 건축되는 모든 筆地의 最外廓線으로 区劃된 土地로 함으로서 所謂 連壁建築이 可能하게 되어 零細垈地活用의 方案이 열렸으나

地籍法에 의하여 土地의 合併이 不可能한 경우를 表

示 土地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 假登記, 予告登記等 登記關係가 다른 경우에는 除外토록 함으로서 可及的 一筆地로 合쳐 建築토록 유도하였다.

나. 역시 垈地의 定義中 法改正에 따라 一団의 土地의 範囲내 그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경우를 從来의 工場 共同住宅外에도 医療施設, 倉庫施設과 公共의 庁舎, 研究所等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되는 建築物等으로 明示하여 大規模複合建築物에 대하여는 垈地에 数棟의 建築이 可能하게 하였으나 隣棟距離, 採光, 避難, 安全等에 대한 別途의 基準이 필요할 것이다.

다. '바닥面積'의 定義에 있어서 一部를 고쳐 人間의 収容 및 出入, 人間活動이 不可能한 設備空間等은 바닥면적算定에 除外토록 하여 승강기탑, 계단탑부분, 망루, 屋上·屋外·地下에 設置되는 물탱크, 기름탱크, 굴링타워, 배관펏트 등 設備의 設置를 위한 構造物이 차지하는 面積을 明示하였고 다락방에서는 반자높이가 1.8m 이하인 것에 대하여도 역시 제외토록 하였다.

라. '延面積'이 '建築物의 各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로 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하나의 建築物의 各層의……'으로 개정하여 延面積와 合計와도 확실히 区分되도록 하였다. 또한 容積率算定을 위한 延面積計算에 있어서 安保上 그 設置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地下의 駐車場, 과法上 義務的으로 設置하여야 하도록 된 地下層(法23条의 3) 등 屋室以外의 用途로 쓰이는 面積을 除外토록 하여 從来에는 아파트에 限定시켰던 事項을 拡大하였다. 다만 동 規程은 바닥면적의 算定에 의한 其他 規制에 対하여는 適用되지 않는 것임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마. '垈地의 定義'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附属建築物'에 대하여는 從前에는 建設部令으로 細付規定토록 되어있던 것을 2条14号에서 明確히 하여 '同一垈地内에 主된 建築物과 함께 位置하지 않으면 主된 建築物의 利用에 극히 支障이 있는 것(주로 用途를 말함)으로서 그 規模가 主된 建築物의 運営에 필요한 適定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는 工場内 倉庫, 보이라실 : 観光 호텔内 나이트크럽, 共同住宅団地内 商街等이 이에 該当되며 同 '附属建築物'은 地域에 따른 建築物의 用途制限, 垈地안의 空地, 日照権規程等에서 適用의 例外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附属用途'의 定義도 '하나의 建築物 또는 2이상의 建築物에 있어서 앞서 定義된 '附属建築物'의 要件에 該当되는 用途를 말하도록 改正하였으므로 逆으로 附属建築物은 반드시 附属用途가 될 수 밖에 없다. 参考로 施行令 別表等 法令에 掲記된 用途는 主用途를 指稱하는 것이나 同主用途 附属用途 역시 同一하게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表-1 (2)9次 改正의 内容別 分析

区分	該当条文	備考
新設 (3)	98条의 2, 120条의 2, 155条의 3	6条3項+6条의3, 4号 5号도이에準함
廃止 (1)	179条	2条12項2号도 이에 準함
強化 (3)	22条, 168条의3, 171条 別表 一部	6条, 6条의3 一部도準함
緩化 (10)	2条, 3条, 11条, 17条, 159条, 160条, 167条, 168条의2, 174条, 180条, 別表一部	
其他 (24)	2条, 3条, 5条, 91条, 96条 103条, 104条, 105条, 107条, 108条 109条, 110条, 113条, 118条, 123条 134条, 145条, 147条, 155条, 155条의2, 163条, 164条, 165条	未備点의 補完字句修正을 말함

바. '건축물의 높이' 算定에 있어서도 從前의 地表面으로부터 計算하여 建築物의 上端까지 높이로 하면 原則에서 一部 완화하는 規程을 補完하여 '굴뚝'계단 등으로서 壁体에서 突出한 部分의 길이가 僅小(50cm)한 것이나, 接한 面의 壁全体의 길이의 1/10이하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에서 除外토록 하였다. 다만이 부분은 避雷針設置를 위한 最高높이 計算에 있어서는 역시 算入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 "標準設計図書"에 関한 規定은 그 定義(令2条 11号)와 運用規定(令179条)이 削除되어 建築士法 4条및 同令 7条에 따르도록 되었고 '아파트'의 定義는 住宅建設 促進法施行令 第30条의 規定을 따르도록 削除되었다.

2. 用途規制를 合理化함(令174条의 2, 別表, 付表)

建築法上 用途에 関한 規制는 別表에 明示된 地域에 따른 建築制限, 用途変更의 節次및 許可対象으로 나눌 수 있다.

從来에는 法令에 各個의 用途를 明示 함으로서 100余個의 用途가 反復羅例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別表等에 掲記된 用途相互間에는 変更許可를 하던 原則을 変更하여 類似用途를 그 性格上, 位置上 系列로 묶어 32個 系列로 分類하여 付表를 新設하여 明記하였다(31, 32 系列은 特殊한 경우임)이에 따라 同項간 即 系列相互間 変更時 法5条의 許可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누어 説明하면 다음과 같다.

가. 用途를 系列化함(付表1項~32項)

類似한 用途를 系列化하기 위하여 從来의 用途名稱을

単位로 하여 "施設"이란 用語를 導入하여 用途의 性格上, 当該 用途가 位置하여야 할 範囲, 從来의 用途規制等을 고려하여 住宅, 近隣施設(Community facilities), 社会施設, 教育文化施設, 商業施設, 工場, 供給処理等 都市特殊施設로 크게 分類하고 各各을 다시 나누어 30系列 로 하였다.

表2 : 用途系列化

大 分 類	中分類 (用途系列)	小 分 類
住 宅		1. 바닥면적 300m²미만의 소매점포.
近隣施設	①近隣生活施設	2. 약국, 의원, 조산소등
		3. 간이음식점, 대중음식점점……
	②近隣公共施設	4. 공중목욕탕……장
		5. 차고(주차면적50m² 미만)
社会施設	③近隣運動施設	6. 공회당……
		7. 공중변소……

用途를 系列化함에 있어서는 多少 無理한 点은 있겠으나 앞으로 充分한 時間을 갖고 施行上 問題点을 감안하여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参考로 美国의 Zonning Code-(우리의 建築法中 所謂 集団規定에 該当되는 것으로 볼수 있음)에서는 住居用, 近隣社会用, 小売業및 商業用, 供給処理用, 休養娯楽用, 工業用의 6개의 use-Group으로 나누고 各各 細分하여 17의 用途系列로 되어 用途를 規制하고 있으며 地域地区内 許容하는 条件에 있어도 自動許容, 臨時許容, 条付代許容으로 区分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別表에서 規模制限, 区域의 指定等이 該当되는것이라 하겠다.

나. 用途変更에 있어 許可対象과 그 節次를 確実히 함(令 174条의 2 付表 別表等).

이를 위하여 令 174条의 2 (用途変更)規定을 新設 하여 用途変更許可対象을 明確히 하고 許可節次는 法5条를따르도록 한 것이다. 특히 既存建築物의 用途変更에 対하여 同令 第22項에 明示하여 從来의 180条5項의 規定에 包含된 内容이외에도 用途変更으로 그 不適合하게 된 程度를 넘지아니하는 範囲안에서는 用途変更을 許容토록함으로서 地域·地区의 変更에 의한 建弊率·容積率등에 不適合하게된 境遇는 물론 同一系列内 用途変更은 地域地区에 関係없이 可能하며 其他 用途에 따라서 制限을 달리하는 規定이더라도 違反된 程度를 悪化시키지 않는 範囲내라면 変更이 許容될 것이다. 다만, 実際로 適用함에 있어서는 事例에 따라 個別的으로 判断되어져야 할 것이다.

1) 用途変更許可対象 : 工場, 特定区域(公園, 遊園地, 開発制限区域)을 除外하고는 改築, 大修繕等을 随伴하지 않는 경우로서 付表에 掲記된 系列(第1項~第32項)間의 変更을 말하나 그 外에도 別表1乃至 9各項에 掲記된 것을 包含시키도록 하였던 바, 이는 付表의 用途表示이외에도緑地地域等의 一次産業에 附随되거나 原資材를 利用하는 建築物等 特別한 境遇를 対備한 것이다.

2) 許可節次 : 法5条에 의한 建築許可節次를 따르도록 되었으나 完際上 規則에서 添付書類및 図面을 簡素化하고 있다.

다. 地域内 建築物의 用途制限의 合理的 調整 (別表 1乃至 9)

現行 都市計劃上 9個로 区分된 地域의 指定目的에 適合하도록 하기 위하여 許容 또는 禁止되는 用途를 区分하여 各各 個別的으로 用途를 明示하였으나, 用途의 系列化에 따른 用途表示에 変更 아울러 緑地地域等 一部地域에서는 本来의 趣旨에 適合하도록 用途의 淳化가 될 수 있도록 調整하여 工場의 立地制限強化, 都市供給処理施設의 工業地域으로 集重, 工業地域内 工場을 為하여 代用途의 抑制등을 期하게 된 셈이나, 中小都市의 都市計劃의 未分化, 用途系列의 硬直性等으로 인하여 住居商業·緑地 地域等은 相当히 多様한 用途가 位置할 수 있게 된 것은 앞으로 解決되어야 住居環境의 保護, 土地利用의 効率化를 期할 수 있을 것이다. 将来에는 都市計劃上 地域의 細分化, 区域別 綜合開発計劃의 樹立에 의한 方案 等이 講求되어야 할 것이다. 参考로 業務에 便宜를 為하여 地域에 따른 建築物의 用途規制内容을 整理하여 作成한 表 - 3을 提示한다.

또한 地区에 따른 用途規制에 있어서도 우선 都市에서 計劃的이고 合理的인 市街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指定된 都市計劃施行令에서 新設된 市街化調整地区内 에서 用途規制를 새로이 定하여 (1) 都市計劃施設의 区域内에서 建築物 (2) 当該 地区内에서 営為하는 農業等 一次産業에 必須的인 施設(住居用, 生産物의 処理 또는 貯藏을 위한 것)과 아울러 (3) 特定한 研究施設, 軍事施設 및 職業訓練施設等으로 정하였다.

아파트地区内 綜合病院許容을 위한 医療施設, 教育및 研究地区, 業務地区内에서 用途表示上 引用用途의 改正에 따른 系列内 一部用途의 変更을 除外하고는 地区에 따른 用途制限은 別로 달라진 점이 없다.

3. 垈地上 造景義務를 拡大함(令 168条의 3)

從前의 '工場의 植樹等 必要한 措置'된 条文의 題目부터 改正 1垈地内의 造景으로 함으로서 建築法令의 適用対象을 넓혔으며 一定規模以上의 垈地에 建築物는 一定比率(10~15%)造景토록 義務를 強化하였다.

特記할 것은 商業地域内에서는 屋上의 造景도 認定토록 되어 있는 点에 미루어 從来의 公害防止를 為한 植樹등 造景에서 発展하여 緑地確保로 인한 街路景観의 美化, 都市美의 造成의 効果를 기한 것이므로 建築物에 設計및 施工에서 形式的으로 지켜야 하는 規定이 되지 않도록 積極的으로 措置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축물의 용도구분 \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전용	주거	준주거		준공업	공업	전용공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관, 장기체류용하숙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90평미만의 일용점포, 이미용원, 수리점, 공회당의원약국등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도서관, 유치원, 국민학교등									
	근린운동시설	탁구장, 정구장, 태권도장등체육도장									
사회시설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수도원, 기도원									
	노유자시설	양육원, 양노원, 고아원등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요양소등									
교육문화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중고교 대학, 연구소, 직업훈련소등									
	업무시설	청사, 사무실등									
	관람집회시설	극장, 영화관예식장, 집회장등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전시장 등									
상업시설	판매시설	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등									
	숙박시설	여관, 호텔, 여인숙, 하숙 등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무도장, 당구장 등									
공장	공장	5마력이상원동기, 작업인원10인등									
	공해공장	독극물질의 제조, 시멘트, 피혁제조 등									
	경도공해공장	공해공장이외의 작업장									
	작업소	공장이외의 작업장									
특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수리공장, 세차장, 차고등									
	동물관련시설	도축장, 축사, 가축시장									
	장의관련시설	장의사, 화장장, 납골당.									
	위험물저장및판매시설	주유소, 위험물저장고 및 취급소 등									
	진애및오물처리장										
	운동시설	체육관, 수영장, 경마장 등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군사시설										
	공항시설										
	활영소										

凡例: 許容 禁止 選択的 許容

4. 共同住宅에 対한 規制를 調整함(令 168条의 2等)

大規模 団地에 建立되어 多数의 世帯가 居住하여 共同生活을 営為하게 되는 共同住宅은 特히 居住環境의 快適性과 安楽함이 要求되는 것이므로 建築法上 '特殊建築物의 범주에 包含시켜 別途의 取扱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이번 改正에서는 道路에 近接하여 건축됨으로 인한 騒音, 煤煙等 公害防止를 為하여 交通量이 比較的 큰 道路에서 띄워야 할 거리를 規定하였고, 適定한 높이는 勿論 適正한 住居密度가 維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地区가 아닌 住居地域에서 建築하는 共同住宅은 그 害積率의 上限線을 200%로 縮少하였다. 이는 外国의 境遇 中層아파트等의 適正住居密度가 100~150%의 容積率로 基準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決定된 数値이다. 다만 共同住宅과 関聯된 規制中 団地内 土地効率을 높일수 있도록 団地内 附属建築物에 限하여는 日照権規程의 適用에 있어 従来의 높은 쪽의 建築物을 基準하여 隣棟距離를 확보토록 하던 것을 自己높이만큼 띄우도록 하였다. 또한 従来의 "同一垈地안에서 建築하는 아파트等"한으로서 建築行為時点에 따라서는 애매한 文句를 '同一垈地内에서 共同住宅等의'로 改正함으로으서 時点에 따른 適用

上 問題点은 解決되어 最高높이로 하도록 되었음을 附言하며 共同住宅의 建築이 盛行함을 감안하여 改正된 規制內容을 整理하면 다음 表－5와 같다.

表4－ 造景의 対象과 範囲

地　域	造景対象	造景面積	備　考
商業地域	垈地面積 1,500m²以上	工場：垈地面積의 15% 以上	1. 造景基準 方法은 地方自治団体의 条例로 定함.
其他地域	垈地面積 200m²以上	其他建築物：垈地面積의 10% 以上	2. 冬節期等 植樹가可能한 경우로条件付 竣工可能

表－5 共同住宅에 대한 建築規制

区　分	改　正	従　前	備考
①隣棟距離			令167条第32項
主된建築物	建築時点이 다른 境遇도 높은쪽을 基準하여 거리확보.	높은쪽을 기준하여 그 높이만큼 距離확보	
附属建築物	自己높이만큼거리확보		
②建築線后退高速囲度	境界에서		令168条第1項3号
退	50m以上 巾 15m 超過道路에서 6m 以上으로서 自己 높이의 ½ 以上	－	
③容　積率	住居地域内 아파트지구가 아닌 경우 200%로 引上	－	令160条
④造　景	垈地面積의10%以上	住促法에서規制	令168条의3

5. 既存建築物에 対한 特例措置(令 180条等)

適法하게 維持되어온 建築物이 法令의 改正等은 他意로 建築法令의 規定에 違背된 既存建築物에 대하여는 既得権保護를 위하여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現行의 規定에 違反되지 않는 範囲내에서는 建築을 許容할 수 있도록 適用의 特例를 条文에 두고 있는 바, 이번 改正에서는 그 不適法하게 된 事由를 補完하여 '建築法및 同令의 改正, 都市計劃의 決定·変更(道路·公園等에 関한 計劃의 決定変更包含)에 대하여도 緩和받도록 하여 急激한 社会発展에 따른 都市計劃의 変更과 頻繁한 法規의改正에 의하여 発生되는 (不適法建築物)의 活用을 保障하고자 하는 것이다. 令 180条中 2項에서 4項에서 違反된 規定에 따라 建弊率等 一般規定(22項), 用途違反(3項), 垈地最少面積(4項)으로 区分하여 容認되는 範囲가 規定되어 있으나 実際는 各規定에 複合的으로 該当되는 것이므로 各規程에 모두 適合한 範囲내에서만 増改築또는 再築등이 許容되는 것임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用途変更에 関하여는 新設된 174条의 2에 包含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이미 説明한 바 있다.

6. 任意的인 建築規制를 止揚토록함(令 6 条等)

建築許可処分의 性格이 束裁量行為이므로 法令의 根據없이는 許可権者가 任意로 規制할 수 없는 것이 分明함에도 不拘하고 往往 各 許可庁에는 地域의 特殊性·業務의 緊急性等을 理由로 建築許可時 임의적 事項의 規制는 물론 法令에 違背될 지도 모를 規制를 하고 있는 実情에 있어 民怒의 対象은 물론이고 法規나 都市計劃의 発展을 沮害함으로서 法秩序를 紊乱시키는 例가 자주 発生하므로 이를 強力히 是正키 위하여 이번 施行令改正에 몇개의 方案을 包含시켰다. 即 美規審議에 대하여는 都市計劃上 美観地区와 令에서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할 수 없도록 못박았고 建築許可事務의 処理期限等도 明示하였으며 建築委員会의 構成에 있어 公務員의 委員数를 全体의 30%는 超過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必要한 경우에는 法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事務承認, 都市計劃의 調整 내지 細分化, 建築条例의 充実한 運営等의 合理的이고 누구나 納得할 수 있는 過程을 通하여 規制될 수있도록 할 計劃임을 添言하고자 한다.

7. 垈地안의 空地規定을 調整함(令 168条의 2)

建築線에서 后退하여야 할 거리를 規制하는 方法은 特定建築物에 対하여 一律的으로, 建築物의 延面積에 따라서, 道路幅에 따라서,用途에 따라서 各各 適用하도록 되어 있는 바 公害가 심한 工場等은 6m를 一律的으로 띄우도록 하였고, 車輛의 通行이 頻繁한 販売施設(종전에는 百貨店), 宿泊施設(従来대로 호텔에 限함), 医療施設(従来'病院)에 대하여는 当該用途에 쓰이는 面積에 比例하여 共同住宅에 대하여는 道路中(15m超過)에 따라서 하도록 하였으므로 相当히 比重있게 取扱되어야 할 規定이다. 이는 外国의 Set-back System에該当되는 것으로서 交通問題, 街路景観의 造成上 不可缺한 規制로서 拡大될 展望이다. 다만 施行上 無理한 点이 있었던 그以上의 道路에 대하여도 建築物의 出入을 위하여 主로 利用된다고 市長, 郡守가 認定하는 道路에만 適用토록 令168条의 2 第1項 第2号를 改正하였다.

8 其他

가. 文化財周囲의 建築을 制限함(令 6 条의 3)

文化財周囲의 景観保全을 為하여 重要한 文化財로서建設部長官이 文化公報部長官과 協議하여 選定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保護区域境界(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약 50m 内外의 距離로 指定됨)로 부터 300m以内에 建築 하는 建築物은 事前承認을 받아 許可토록 되었다.

나. 日照権規程을 一部調整함 令167条)

住居專用地域및 住居地域外에도 緑地地域(自然및 生産緑地包含) 을 追加하였다.

그리고 対象用途에 있어서도 系列化된 用途에 따라 綜合病院, 요양노동이 明示되고 從来의 '其他 이와 유사한 用途의 建築物이란 字句가 삭제되었다. (他条文에서도削除된 例가 많음)

다. 建築物의 높이 制限의 適用上 애매한 点을 확실히 함(令163条164条, 165条)

2以上의 前面道路의 定義를 그 垈地와 12m以上 接하고 대지둘레의 1/6이상 접하도록 하는 等 확실히 하였으며 前面道路가 公園·広場等 建築이 禁止된 空地에 接하거나 建築線이 후퇴되어 指定된 垈地에 接한 경우에 그 道路幅에 의한 높이制限및 令163条의 규정(2이상의 前面道가 있는 경우 높이완화)의 適用에 있어서는 当該空地幅또는 後退된 建築線部分까지를 前面道路의 反対側境界線으로 하도록 明白히 하였다. 또한 令164条의 空地에 類似한 것을 団地内 緑地(令2条5項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도 包含 시켰다.

라. 駐車場設置基準을 強化함(令 22条)

車輛의 通行과 사람의 出入이 잦은 販買施設과 観覧集会施設에 있어서는 当該用途에 쓰이는 바닥면적 200m²마다 2臺의 屋外駐車場(屋外는 300²마다)을 設置토록 基準을 倍로 強化하였고 그외에도 宗教施設및 空港施設을 追加하여 駐車場設置対象에 追加시켰다. 그리고 用途의 系列化에 따라 從来보다 対象이 넓어졌다고 하겠다.

마. 設備의 設置基準을 補完함(令 120条의 2)

現行 建築法令이 가지고 있는 各種 設備에 대한 設置基準이 多種多岐하지만 이번 改正에도 追加된 것이 가스配管펏트의 設置禁止 電気暖房等 他用途의 配管과 分離設置의 規定이 新設되었으며 配管의構造에対하여도 維持管理 安全衛生等을 위하여 우선 壁体에 埋込되지 않도록 하고 其他 構造에 대하여는 部令으로 定하도록 함으로서 날로 增加하는 建築設備의 種類·規模에 따른 建築設計및 施工時 安全하고 衛生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趨勢에 대하여는 法体系上 多少의 論乱은 있으나 能動的으로 建築法令에서 対処하여야 할 必要性이 크다.

바. 中間및 竣工検査에서 特例를 定함(令11条)

国家및 地方自治団体가 市長·郡守와協議한 建築物에 対하여는 앞으로 中間検査및 竣工検査를 省略토록 되었다. (但竣工申告는 하여야 함)이는 地位가 같거나 높은 各機関간의 실제로 発生되는 隘路를 除去하기 위한 것뿐아니고, 自体的으로 適法및良質의 施設에 対한 措置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것이다.

사. 이외에도 国家是策事業等을 支援하기 위하여 自然緑地地域内에서 特定의 경우 垈地 最小面積의 緩和(330m²로 引下 令 180条(적용의 특례), 容積率의 引上(60%로함 令 160条)로 하였으나 이는 特定한 경우로서 認定되어야 함으로 一般的으로 適用될 수는 없는 것이다. 垈地最小面積의 規制에서 垈地가 接한 道路巾에 의한 商業地域内 規制는 폭20m以上의 道路에 6m以上 接한 경우로 확실히 하여 適用上 애매한 点을 제거하였다.

그外에는 用途의 系例化함에 따른 条文巾 用途表示 字句의 修正이 相当数있으므로 関係条文의 適用時 付表를 不断히 参照하여야 할 것이다

三. 덧붙이는 말

用途規制의 合理化에 力点이 주어진 이번 改正作業에 있어 未盡한 点을 提示하면 첫째로 用途系列의 一部調整, 地域·地区上 用途의 淳化, 用途変更節次의 補完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는 綜合的인 検討와 施行上 問題点이 充分히 反映되어 補完되어야 本来의 趣旨가 効率的으로 達成 되리라 믿으며 둘째로 法令의 体系上 示方書的 規制에 対한 과감한 整理이다 영 28조에서 29조에 이르는 条項은 언제든 整理되어 標準示方書에 反映되어 施行되거나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細部的 技術 基準으로 整備될 수 있도록 建築関係機関또는 関係人의 진지한 努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環境権에 関한 条項들의 合理化라 하겠다. 日照権規程의 強化, 垈地안의 空地規程의 細分化, 造景에 対한 基準의 強化 等으로 이 規定들은 居住環境의 質을 決定하는 것이되므로 国民生活의 向上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계속해서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大型建築物의 出現에 따른 垈地의 定義·合同建築의 許容, 建築協定의 問題等에 関한 制度的 検討가 장차 要請될 것이다. 끝으로 法文및 体制의 整備등이 不断히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内容上 技術的 事項이 大多数를 占有하게 되는 建築法令의 性格上 不可避하다고 하더라도 最大한 平易하고 簡闊明瞭하게 表現되고, 関聯条文들의 順序가 整理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建築法令의 規定은 建築에 있어 지켜져야 할 最少의 基準이다' 따라서 이 이상의 建築計画的인 面, 芸術的인 面, 人間의 基本的 要求, 等은 法으로 表現될 수 없는 것이며 表現되어서도 안되는 것임을 恒常 銘心하면서 実務에 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

建設部建築係長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212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8년 10월 18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 영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편물수취함
2. 보안등
3. 관리사무실
4. 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제3조(복리시설) 영 제4조 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텔레비젼공청시설
2. 공동저탄장시설
3. 노인정
4. 교육시설
5. 비상급수시설

제4조(주택건설 계획서등) ①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 총괄을 말한다.

③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 2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2. 건설위치
3. 건설공급대상자의 범위
4. 건설자금조달재원

⑤ 영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장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영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조사)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영 제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 ①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2. 도지사가 발행하는 건축분야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3. 사무실 보유증서(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것)
4. 전화 보유증명서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연1회 3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등록을 실사한 때에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⑥ 등록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⑦ 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 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영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수수료는 1건당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로 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등록업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익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 2서식에 의하여 당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면허증 사본
2. 법인 등기부 등본
3. 주택건설사업실적증명서 또는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증명서
4.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6. 기자재생산능력 증빙자료
7. 장비보유현황서 및 그 증빙자료
8. 지정신청공고일 현재의 예금잔고증명서

②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업자 지정사항 변경사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④ 지정업자는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익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매년 1회이상 지정업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실태조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 등) ①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 도
2. 징구기관명(제출처)
3. 매입자의 성명

② 영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발행일자 및 재발행사유
2. 신청인의 성명
3. 매입금액

제14조(사실증명서) 영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주택상환사채) ①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 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 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영 제28조 제15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의 확보유무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
3. 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조달계획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 등) ①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농어촌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창고 및 변소(본 건물과 분리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계단·옥탑건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8조(주택공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주택의 공급조건과 방법 및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따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택공급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택공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에 게기한 도서를 말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대지증명서를, 사업주체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대지증명서를 말한다.

⑥ 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⑦ 건설부장관은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부·처, 청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
2. 지적도(도시계획시설이 표시된 축척 1,200분의 1인 도면)
3. 도시계획시설도서
4.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에 도시계획결정에 참고가 되는 도서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및 세대당 주택가격은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건설공정이 20퍼센트 이상으로써 분양공고를 행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중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로서 사업비 및 세대당 주택가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
3.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시설의 종류변경

② 사업주체가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시장, 군수가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기부채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기부채납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보·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 1 항 제 2 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선시설의 종류 및 설치한계)법 제 3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 및 설치한계는 별표 5 와 같다.

제25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신청) ① 영 제39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는 별지 3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9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대지증명(시장·군수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시장·군수가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한 것)

제26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세목) 영 제3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세목은 별표 6 과 같다.

제27조(면허증의 교부) ① 법 제41조 제 1 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제36호 서식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가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부본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주택자재생산업자는 그 면허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주택자재의 생산기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생산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30조(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 ① 도지사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0호의 서식에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실태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종합한 후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 제 2 항에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무주택근로자의 주택건설)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당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당해 기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2. 해당근로자의 재직증명서

3.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최근 3개월간 이상 납부한 것에 대한 것)
4.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
5. 무주택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산세, 비과세증명, 주민등록등본 및 가옥대장등본)

②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근로자"라 함은 당해 기업체의 임원급이 아닌 월급 또는 일급에 의한 생활자를 말한다.

제33조(시범주택의 건설) ①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특수공법 및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③ 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시범주택 건설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4조(표준설계도서의 작성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별로 별표8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주택의 형별로 고유번호를 붙여 공고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사협회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설부 장관은 표준설계도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와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1. 인구수 : 최근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증가율을 감안하여 산출할 것.
2. 주택수 : (전년도 주택수+당해년도 건설호수) 당해년도 멸실호수
3. 가구수 : 1인가구 및 준가구를 제외하고 보통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것.
4. 사업비 : 대지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하며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산출할 것.
가. 공공부문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을 포함한다)이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주택자금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포함함.
나. 민간부문 : 순수히 자기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포함함.
5. 주택공급율 $= \frac{\text{주택수}}{\text{가구수}} \times 100$

※ 첨부서류 : 1. 주택 및 택지현황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3.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등록업자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총괄
5. 주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

1. 총괄표 주택 건설계획 [별지1호서식]

구 분	현 황	연도계획	비 고
1. 인구수(천인)			
2. 주택수(호)			
3. 가구수(가구)			
4. 건설호수(호)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5. 사업비(천원)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6. 멸실호수(호)			
7. 주택공급율			

1. 주택 및 택지현황

구 분		합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비고
주택수	① 총 계				
	② 일 반 주 택				
	③ 무 허 가 주 택				
	④ 불 량 주 택				
	⑤ 노 후 주 택				
	⑥ 기 타				
택지	⑦ 토 지 총 면 적				
	⑧ 택 지 총 면 적				

	⑨ 주 거 지 역				
	⑩ 준 주 거 지 역				
	⑪ 주거전용지역				
	⑫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면적				
지	⑬ 아파트지구면적				
	⑭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면적				

※ 인구 5만인 이상의 읍급지역은 도시에 포함 시킬것.

1. 일 반 주 택 : 다음 각호(2,3,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무허가주택 : 건축법상의 허가 및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주택('62년도 이전에 건립된 주택의 경우에는 조선시가 지령에 의한 허가 기타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주택. '34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의 경우에는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
3. 불 량 주 택 : 건축법상의 허가절차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설비의 미비 사용된 주택자재의 불량, 도시미관상 철거대상 주택 기타 주거의 용에 공하기에는 적합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노 후 주 택 : 건축년도가 철근 철골조의 경우에는 50년이상, 불록연와조의 경우에는 30년이상, 목조의 경우에는 20년이상 각각 경과된 주택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시군별	주택형별			사업주체별				⑧ 호당또는 세대당 평균면적 (m²)	⑨ 건설세대수 (전세대)	⑩ 소요대지면적 (천m²)	⑪ 사업비 (백만원)	⑫ 비고
	① 단독	② 연립	③ 아파트	④ 지방자치단체	⑤ 공공기관	⑥ 등록업자	⑦ 기타					

3. 주 택 자 금 조 달 계 획 및 투자계획

시군별	조달계획					투자계획					⑪ 비고
	①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	② 자체부담금	③ 정부보조금	④ 차입금	⑤ 기타자금	⑥ 주택건설사업	⑦ 주택개량사업	⑧ 택지조성사업	⑨ 주택자재 비축사업	⑩ 기타사업	
합계											

4. 등록업자의 주택사업실적 및 계획총괄 (단위 : 천)

시군별	사업실적							사업실적							⑮ 비고
	형별				규모			형별				규모			
	① 단독	② 연립	③ 아파트	④ 계	⑤ 85m² 이하	⑥ 85m² 초과	⑧ 계	⑧ 단독	⑨ 연립	⑩ 아파트	⑪ 계	⑫ 85m² 이하	⑬ 85m² 초과	⑭ 계	
합 계															

5. 주택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시군별	기술자										기능공										비고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소계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소계		
	① 1급	② 2급	③ 1급	④ 2급	⑤ 1급	⑥ 2급	⑦ 1급	⑧ 2급	⑨ 1급	⑩ 2급	⑪ 1급	⑫ 2급	⑬ 1급	⑭ 2급	⑮ 1급	⑯ 2급	⑰ 1급	18 2급	⑲ 1급	⑳ 2급	
합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한국주택은행)

년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 분기별		조달계획 총계	1/4	2/4	3/4	4/4	비고
국민주택자금	①국민주택채권자금						
	②주택복권자금						
	③외국으로부터의 차입						
	④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⑤기타						
	⑥소계						
일반자금	주택부금 및 예금 수입						
	⑧주택채권자금						
	⑨차입금						
	⑩기타						
	⑪소계						
⑫	총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년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 분기별		조달계획 총계	1/4	2/4	3/4	4/4	비고
국민주택자금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차입						
	농업협동조합조성자금						
	소계						
일반자금							
소계							
총계							

주택건설사업계획서

(국가기관)

1. 사업개요

사업주체	건설위치	건설규모 형별	세대당규모	총세대수	사업비	사업기간	건설자금 조달재원 (확보여부)	공급대상자 외범위	비고

2. 사업목적 및 효과

사 업 목 적	사 업 효 과

주택건설장기계획서

1. 총괄표

구 분	현 황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5 차 년 도	합 계	비 고
1. 인구수(천인)								
2. 주택수(호)								
3. 가구수(가구)								
4. 건설호수(호)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5. 사업비(천원)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6. 멸실호수(호)								
7. 주택공급율								

2. 주택 및 택지현황

구 분		현 황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5 차 년 도		합 계		비 고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주택수	총 계															
	일 반 주 택															
	무 허 가 주 택															
	불 량 주 택															
	노 후 주 택															
	기 타															
택지	토 지 총 면 적															
	택 지 총 면 적															
	주 거 지 역															
	준 주 거 지 역															
	주 거 전 용 지 역															
	토지구획정리사업 계 획 면 적															
	아 파 트 지 구 계 획 면 적															
	일단의주택지조성 사 업 계 획 면 적															

3.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구분 \ 연도별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5 차 년 도	비 고
	국민주택자금특별회계						
	자 체 부 담						
	정 부 보 조						
	차 입						
	기 타						
	소 계						
	주 택 건 설 사 업						
	주 택 개 량 사 업						
	택 지 조 성 사 업						
	주 택 자 재 비 치 사 업						
	기 타 사 업						
	소 계						

[별지 5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 무 처:

귀하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주택정책 심의위원장 인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별지 6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
신청자	①대표자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③전화번호	
	⑤영업소 소재지			
⑥자본금				
⑦사무실	면적 (자기소유, 전세, 임대, 기타)			
⑧기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부장관 귀하

⑨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1부

(2) 도지사가 발행하는 건축분야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무실보유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1부

(4) 전화보유증명 (전화가입증명서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5,000원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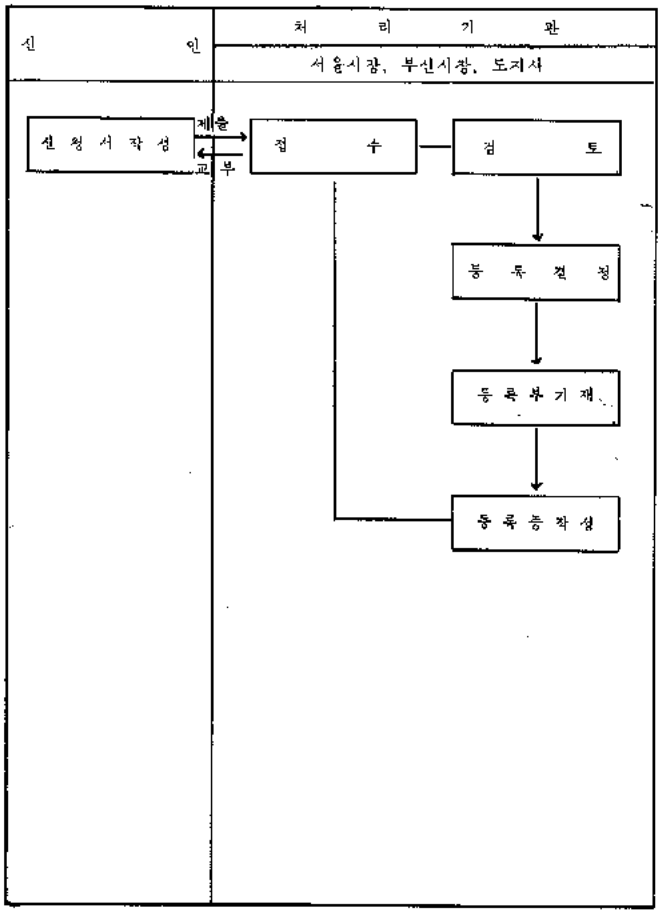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1. 상 호 :

2. 성 명 :

4. 영업소소재지 :

5. 등 록 일 자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 장
도 사 도

〔별지 제8호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원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명	대표자명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자 본	기술·능력	비 고

[별지 제 9 호 서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5일))
상 호	
대표자 (사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자 본			
건 축 기 술 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각종증빙자료 1부

귀하

신 청 자	처 리 기 관
	건 설 부(주택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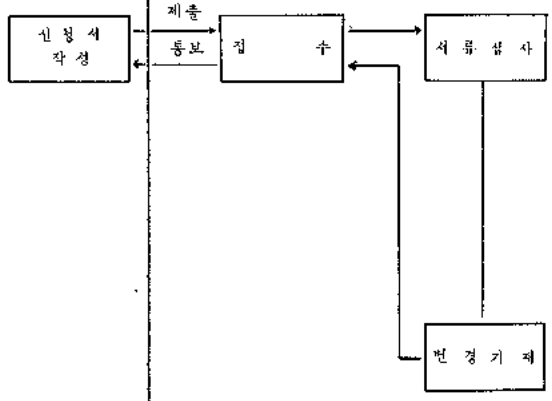

[별지 제10호의 2서식]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서

등록번호 :
등록업자명 :

구 분	형 별	구 조	층수	동 수	세대수	사업비	총대지면적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위 치

※ 1. 구분란에는 임대 · 분양 기타로 구분할것(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2. 형별란에는 단독아파트 연립별로 평수(전용면적 / 건축면적) 를 기입할 것

3. 건설위치는 가능능 상세히 기입하되 확보여부를 명기할것.

주 택 건 설 사 업 실 적 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 도	구 분	형 별	구 조	층 수	동 수	세 대 수	사 업 비	총대지면적	위 치

※ 1. 연도란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기입할것(1년미만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10월말까지)

2. 구분란에는 임대 · 분양 · 기타로 구분할 것(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3. 형별난에는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평수를 기입할 것 (전용면적 / 건축면적)

4. 건설위치는 가능한한 상세히 기입할 것.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1) 대표자	한글 한자	(2) 주민등록 번호	
	(3) 상호		(4) 전화번호	
	(5) 영업소 소재지			
(6) 자본금				
(7) 건설업 면허취득종목				
(8) 주택건설실적신적 주택건설도급공사 실적				

(9) 기술자보유현황	분야별	1급	2급	계
	토목분야	인	인	인
	건축분야	〃	〃	〃
	기술야분	〃	〃	〃
	전기분야	〃	〃	〃
	안전관리분야	〃	〃	〃
	건축사	〃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정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부장관 귀하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
	건설부(주택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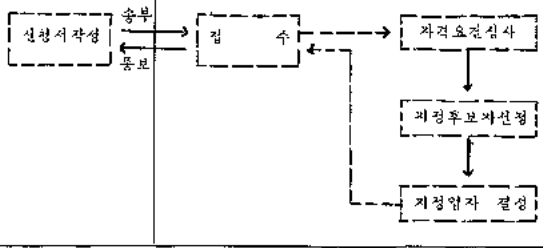

(10)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건설업 면허증사본 1부

다) 주택건설사업실적증명(사업계획 또는 건축허가시 사본 및 준공 필증 사본 미준공된 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사본을 첨부할 것)또는 주택건설 공사 도급실적증명(발주처의 재약확인 서 또는 계약서 사본과 당해 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준공 검사

라) 토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 면허 사본 1부

마)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2부

바)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사) 지정 신청공고일 현재 예금잔고증명서 2부

아) 기자재 생산능력 증빙자료 1건

※ 1. 구비서류중 (가)(다)(라)(마)(사)의 항목은 접수 기간중 발행 된 것일 것.

2. (바)(아)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별지 12호 서식]

지정업자지정서

제 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소재지 :

지정년월일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지정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

건설부장관 인

[제13호 서식]

지정업자지정대장					
지정번호	제 호	지정일자	19. . . .	설립등기일자	19 . . .
상 호					
대표자	(한글)	(한자)			
영업소소재지					

경영상태					
자본금	변경년월일	증자또는감자금액	경영성가	평가년월일	평가기관

기재사항변경					
상호	변경년월일	대표자	변경년월일	소재지	변경년월일

임 원 현 황							
직위	성 명	입사년월일	퇴사년월일	직위	성 명	입사년월일	퇴사년월일

처 벌 및 하 자 발 행 현 황		
구 분	년 월 일	내 용 처벌기관

겸 업 사 항				
업 종	번 호	취득년월일	실 적	면허기관

기타사항

기 술 자 보 유 현 황														
취득	면허	성 명	직위	입사	퇴사	보고	종급		면허	성 명	직위	입사	퇴사	보고
특별	번호			년월일	년월일	일자	특별		번호			년월일	년월일	일자

주 택 건 설 사 업 실 적									
연도별	지역별	건 설 규 모			년도별	지역별	건 설 규 모		
		25평이하	25평초과	계			25평이하	25평초과	계

주 택 상 환 사 채 발 행					
발 행 일	발행지역	발 행 액	발행조건	상환일시	비 고

〔별지14호 서식〕

지정업자지정사항변경신 서			처리기간 15일
상 호		전화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자 본 금 기 술 능 력			

주택건설촉진법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업자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건설 관 귀하

첨부서류 : 각종증빙자료 1부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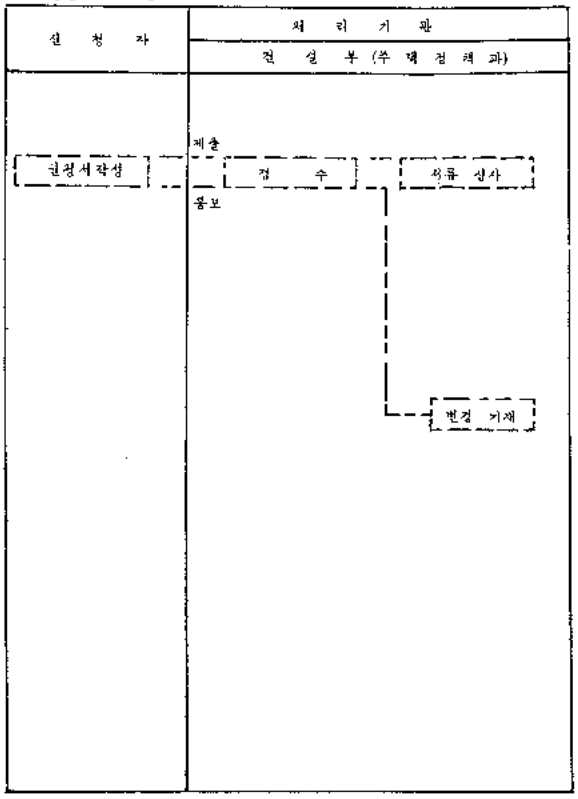

〔별지 제17호 서식〕

지정업자실태조사부

지정번호 : 제 호

상 호		전 화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기 재 사 항 변 경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자 본 금	기술능력

주택건설사업실적

연도별	지역별	형별	세대당 규 모	건 설 총규모	사업비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비 고

〔별지 제15호 서식〕

주 택 건 설 사 업 실 적
(지정업자)

연 도	구 분	형 별	구 조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총대지면적	위 치	비 고

1. 연도란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기입할 것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10월말까지를 기재)
2. 구분란에는 임대, 분양, 기타로 구분할 것(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3. 형별란에는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평수$\left(\frac{\text{전용 면적}}{\text{세대당 건축면적}}\right)$를 기입할 것.
4. 건설위치는 가능한한 상세히 기입할 것.

〔별지 제16호 서식〕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지정업자)

연도	구분	형별	구조	층 수	동 수	세대수	사업비	총대지면적	착공예정 일층	준공예정일	위 치	비고

1. 구분란에는 임대, 분양, 기타로 구분할 것(기타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할 것)
2. 행별란에는 단독, 아파트, 연립별로 평수$\left(\frac{\text{전용면적}}{\text{세대당 건축면적}}\right)$를 기입할 것.
3. 건설위치는 확보 또는 미확보 여부를 명기하고 가능한한 상세히 기재할 것.

[별지 제18호 서식]

국민주택자금조달계획서
(지방자치단체)

(단위 : 백만원)

분기별 / 조달재원별	조 달 계 획					비 고
	총계	2/4	1/4	3/4	4/4	
자 체 부 담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 입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재산의 매각						

[별지 제19호 서식]

국민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한국주택은행)

(단위 : 백만원)

분기별 / 조달재원별	조 달 계 획					비 고
	총 계	1/4	2/4	3/4	4/4	
1. 국민주택채권						
2. 주 택 부 권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기 타						

新刊案內

디자인 感覺 10大要素와 10大原理,
우리나라 아파트의 形成過程과 計劃의 要点
아파트 平面 660種

姜 明 求 編著

建築行政相談

서울지부편

1978년 9월 15일 (금)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위치가 부산인데 기허가 된 은행건물로서 건축제한 조치에 저촉되는지 여부(착공 가능여부)	1. 기허가 된 것으로서 착공 가능함.
2. 시민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매입한 바 공사가 불실하여 해약코저 하는바 해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분실공사에 한계가 명확히 않고 당사자간에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3. 시민 4종 미관지구로서 심의서류 접수부서	3. 현재는 본청에서 접수하나 수일내 관할구청으로 이양계획임.
4. 시민 주거전용지역에서 높이 제 은?	4.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도로측의 부분에서는 도로 반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의 2배까지 가함(8m 이상인 경우)
5. 시민 옥내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 옥내는 150m² 마다 1대 옥외는 200m² 마다 1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6.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는 어떻게 됩니까?	6. 법상 90m² 로 되어있으나 구청별로 지역을 정하여 90m² 이상이면 되는곳도 있고 165m² 이상이어야만 되는 곳도 있읍니다.
7. 시민 2종 미관지구내 연립주택이 가능한지요?	7. 2종 미관지구는 3층 이상 건물이어야 하므로 연립주택은 불가합니다.

1978년 9월 18일 (월)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심의를 신청했는데 풍치지구 대지 최소 미달로 반려되었는데 대지증명상 풍치지구와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것도 대지면적 미달에 저촉되는지?	1. 반려는 대지증명 지적상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봐서 반려된 것 같은데 지적상에 구분하여 주거지역과 풍치지구중 어느 부분이 많은지 보아 주거지역이 많으면 주거지역에 준하는 건폐율을 작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풍치지구에 해당되므로 그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지적상에 표시해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5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 아파트의 건폐율은?	2. 18%~20%입니다.
3. 시민 지목이 임야인데 허가받을 수 있는지요?	3.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목을 형질변경을 선행한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풍치지구 지하실이 약 3평정도 증평되는데 그 증평으로 인한 용적율이 60% 이상되는 경우 허가 가능여부는?	4. 지하실이 약 3평정도 증평된 경우도 APT의 경우는 지하실이 용적율에 제외되지만 그외 용도는 용적율에 포함되므로 증축은 불가합니다.

1978년 9 9월 19일 (화)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주거전용지역에서 높이제한은?	1.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도로측의 부분에서는 도로 반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의 2배까지 가함. (8m 이상인 경우)
2. 시민 연립주택의 대지 최소면적은?	2. 1,000㎡ 이상이어야 하나 1,000㎡ 미만인 경우라도 시청심의를 득하면 건축할 수 있음.
3. 2종미관에서 건축물의 규모제한은?	3. 건축물 앞면의 길이가 12m 이상, 옆면의 길이가 6m 이상 되어야 합니다.
4. 시민 주택채권에 대해서 지하실 면적도 주택 채권을 사야 되는지요?	4. 주택인 경우 지하실은 채권매입대상이 아닙니다.
5. 시민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5. 법상엔 60%로 되어있으나 서울시 방침으로 50%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수도권내이며 용도가 공장으로 변경되므로 건설부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1978년 9월 20일 (수)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40평미만 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지않는다고 하는데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1. 78. 9.19일부터 각 구청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2. 주택건축 허가를 득하여 준공단계인데 별동지하실인 차고 12㎡를 암반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하였는데 수속절차를 알려주십시요.	2. 차고가 10㎡ 미만일 때는 경미한 변경 신고서로써 처리되나 차고가 12㎡므로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3. 그린벨트내 목장에 관리인 거주용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허가될 수 있는지?	3. 그린벨트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주택일 경우 30평까지 건축할 수 있읍니다.
4. 싸이로를 건축코자 하는데 공작물 축조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는지요.	4. 광의로 해석하면 공작물의 범위내에 건축물도 포함됨으로 싸이로의 규모는 벽과 지붕이 있지만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공작물 축조허가에 해당된다고 봄.

1978년 9월 21일 (목)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역촌추가 환지 지구내 50.6평의 대지면적에 건축가능 한지요. 단, 신청대지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음.	1. 구획정리 사업상 공사완료에 미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시 시청, 구획정리과에 환지 지시측량도면 신청의뢰하면 건축가능에 불가능이 표시됨. • 만일 건축가능이라고 표시된다면 건축허가 득할 수 있으나 현장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므로 임산물단속법에 의하여 직경(지금)이 5cm 이상 임목이라면 허가전 관계과 협의(구청녹지과) 후 벌채 또는 이식 후 허가 처리됩니다.
2. 대지10,000평에 기존건물이 288평이 있으며 앞으로 350평을 등록하고자 하는바 가능한지요. 지역지구는 주거지역인 경우,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 현재 기존건물이 발전소건물입니다.	1. 만일 주거지역이라면 건축법시행령 142조의 지역지구용도 제한에 저촉됨으로 도시계획법 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 득한다면 건축법시행령157조에 의거 건축법 31조1항, 2항 제33조에 의거 건역지구의 용도제한을 받지않게 됨으로 건축(동축)이 가능하며, 공업지역이라면 건축(동축)이 가능합니다.
3. 61. 3. 1. 학원으로 된 기존건물을 음식점, 다방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단, 기존건물이 지하층이 없으며, 건폐율이 현재는 61.7%입니다. 그당시는 지역지구는 노선상업지구임.	• 용도변경은 기존건물이 건축 및 당시의 시행된 관계법에 적합하게 건축된 기존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현재의 시행되는 관계법에 구애됨이 없이 변경 허가가 가능하며, • 지하층은 70. 3. 7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물 이라면 지하층이 없다하여도 위법건물이 아닙니다.

1978년 9월 22일 (금)요일

상담자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2종미관지구 내에서 가능여부는?	1. 12m 후퇴하여 배치시 가능함.
2. 건축허가를 득한후 공사기간이 얼마이며 법조문은?	2. 건축법 제42조에 의거 1년입니다.
3. 아파트를 건립코저 하는바 도로면에서 얼마를 띄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단, 높이제한 및 일조권 등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음)	3.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약 2m이상 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민 준공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인바 건물면적 몇m^2마다 주차대수 1대로 계산하는지?	4. 400m^2마다 1대로 계산함.
5. 40평미만 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5. 78. 9. 19일부터 각구청에 서울시에서 시달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읍니다.

1978년 9월 25일 (월)요일

상담요지 :

1. 동회에 3평미만 증축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동사무소의 말로는 2층에서의 증축은 신고처리할 수 없다고 함. 사실인지?

답변내용 :

1. 서울시가 마련한 3평미만 증축 신고요령에 의하면
① 주거용에 한하여
② 1회만 신고를 접수하되
③ 구조안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층의 수평증축만 신고 처리하고 2층이상에서의 증축은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2. 서울시 주차장 정비지구 조례에 용도에 따라 주차 소요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 사무실과 창고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2. 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질문의 경우 사무실이 주용도이므로 사무실에 해당하는 소요대수로 산출할것.

3. 성북동 풍치지구내 대지 240평인 경우의 건폐율? 허용연면적?

3. 질문의 경우 대지로 조성되어있고 풍치지구 지정이후 분할되어 있으므로

$90평 \times \frac{4}{10} = 36평$

$60평 \times \frac{2}{10} = 12평$

$90평 \times \frac{1}{10} = 9평$

140평 =57평 (약23.7%)의 건폐율이 허용되며 허용연면적은 용적율이 60%이므로 144평임

4. 불요불급 건축제한 조치중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은 건축허가 하도록 근래에 건축제한을 완화하였다는데 일반기업의 전용사무실도 이에 해당되는지?

4. 건축제한 완화 대상은 비영리단체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사무실에 국한되므로 일반기업의 전용사옥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5. 건축허가후 착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상의 기간은? 근거조문은? 언제 본조문이 개정되었는지?

5. ① 1년
② 건축법 42조 제1항 제4호
③ 75. 12. 31

6. 가. 온실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나. 형질변경허가후 형질변경과 병행하여 건축허가를 득할수 있는지?
학교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한후 건축 허가에 대하여는 어찌되는지?

6. "온실"이라는 용도를 정하여 건축허가 대상에서 예외시키도록 규정한 적은 없다. 다만 "온실"로서 건축법 제2조로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 안되는 구조라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래 형질변경의 완료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다만 대지조성 작업과 건축공사의 굴토작업의 중복등을 이유로 대지조성 작업의 공정을 보나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이것은 사실판단에 의한 것이며, 형질변경의 허가만으로(공사의 진행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도 같은 사안임.

7. 건축법 제18조 단서의 "상당하는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기준은?

7. 이에대한 기술적 기준은 없음.

8. 연립주택을 4층까지 허용한다고 하는데?

8.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4층까지 연립주택을 허용하도록 건설부에서 추진중임.

9. 대지가 도폭10m와 도폭 6m의 교차되는 도로에 접하는데 가각전제가 필요한지.

9. 필요없음(시행령 제140조의 2)

10. 영동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0. 50평

11. 상업지역 건폐율도 50%라고 하는데 근거는?

11. 서울시는 도시의 공간확보 및 도심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은 50%로 행정조치하고 있음. 즉 서울시의 예규적 성격의 행정방침에 의한 것임.

1978년 9월 26일 (화)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비주거용 건축물 허가서 지하철 채권 매입 여부는?

1. 국민주택 채권만 매입하고 상수도 설치시 지하철 채권 매입하고 있읍니다.

2. 시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지하층 부분에 대한 채권 매입 여부는?

2. 주택에 한하여 지하층 부분만 주택채권매입에서 제외되고 그이외의 용도 건축물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3. 시민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몇%인지요?

3. 건축법상으로는 60%이나 서울시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50% 이하로 행정지도로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

4. 시민
연립주택 40세대 규모는 어디서 심의를 받는지요?

4. 구청에서 심의 처리하고 있읍니다.

5. 시민
경기도 공장 증축할 경우 지하실 설치 규정은 어떠한지요?

5. 여유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연면적의 $\frac{1}{8}$이상) 지하실은 설치 않을수 있읍니다.

6. 시민
등기가 근저당 설정되였을시 건축허가때 동의서 첨부 여부는?

6. 근저당은 동의서를 받지 않으며 지상권 설정만 동의서를 첨부 합니다.

7. 시민
안양에 대지를 구입하였는데 대지상에 가히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허가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7. 대지를 매입하였으며 건축허가권에 대한 사항도 전 건축 허가자에게 명의 변경 동의서를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8. 시민
학교 건축물에 주택채권 매입 여부는?

8. 학교 건축물은 주택채권매입 면제 대상이므로 주택채권을 매입치 않아도 됩니다.

9. 건축사가 자기집을 지을때 건축설계와 명의 연서여부는?

9. 건축사가 자기집을 지을 때는 본인 명의로 제출하며 연서도 하지않아도 됩니다.

1978년 9월 28일 (목) 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주거전용지역에 교회 건축이 가능한지요?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별표1) 8조에 의거 주거전용 지역내에서 종교용 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지경계선에서 10M이상 띄우고 수림대 등 차음시설하고 연면적 1000M² 이하의 타종시설이 없는 종교용 건축물만 허용하고 있으며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70%이하 입니다.
2. 고층건물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29조 및 건설부령에 의거 설치기준은 6동이상 건물로서 학교, 병원,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여관, 호텔, 아파트, 기숙사, 사무실, 기타등으로

승용 승강기 산출기준

용 도	3300~6600M²
집회장, 전시장 호텔, 병원, 백화점	3대
여관, 사무실	1대
기 타	1대

로 되여 있으며 6600이상으로서 3300이후가 될때마 다 1대씩 가산이되며, 상기 면적은 순수거실 면적 합계를 말하며

○거실(6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이 150M 이하일 때는 상기 승강기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읍니다.

1978년 9월 29일 (금)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1. 시민 30평 대지상에 기존 건물단층이 25평 있는데 2층을 증축할수 있는지?	1. 기존건물이 당시법에 부적합하므로 증축할 수 있읍니다.
2. 시민 연립주택 건축시 대지경계선에서 몇m를 띄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2. 2m이상으로 *일조권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함.
3. 시민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몇 %나로 되는지요?	3. 건축법상으로는 60%이나 서울시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50% 이하로 행정지도로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읍니다.
4. 시민 연립주택의 대지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4. 1,000m² 이상이어야 하나 1,000m² 미만일 경우라도 시청 심의를 득하면 건축할수 있읍니다.
5. 시민 2종미관지구내에서 연립주택 가능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5. 12m 후퇴하여 배치시 가능합니다.

1978년 10월 2일 (월)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공장을 건축하는데 있어 지하층 설치규정은? 완화조항은?	1. 60평 이상인 경우는 공장이라면 6층이하일 것이므로 연면적의 $\frac{1}{100}$(생으로) 지하층설치를 하여야 함. 다만 건폐율(50%)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frac{1}{8}$이상이 될 때에는 지하층 설치규정 완화함.
2. 건축물의 설계변형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은 종전건축사가 영업정지를 받었을 경우 계속 임무가 가능한지? 용도변경의 허가신청시 예치금 받는지? 이 경우 가옥대장의 첨부 여부는?	2.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은 처분 이후의 영업에 대한 정지이므로 계속 임무인 설계변경의 업무처리는 가능함? 대수선을 수반하는 용도 변경은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기존 건축물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옥대장 첨부를 요구할 수 있음.
3. 연립주택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세대수인데 처음에는 건설업자 선정없이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인데 이래서 건설업자 선정토록 규정이 구청에 요구하는바 이의처리는?	3. 건설업자 선정의무 규정은 악덕 주택업자로 부터 영세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바 이 취지에 따라 관계구청과 협의 처리할것.
4. '76년도 매입 사용한 주택채권의 재사용이 가능한지?	4. 불가함.
5. 김포가도 공항로변 새로운 고도지구 설정이 요근래 된것은 없는지?	5. 요근래 새로이 고도지정한 것은 없으며 자세한것은 시청 도시계획 1과 지역 1계에 문의할것.
6. 연립주택 건축물의 건축제한? 4종 미관지구 이며 주거지역임. 영농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은?	6. 대지면적 300평 이상 건폐율 40% 용적율 100%(90%정도가 바람직함)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3m이역 후퇴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m이역 후퇴 건폐율 50% 용적율 250%
7. 잠실주거지역 4m도로변에 주택을 건축하고저 하는데 건축선 후퇴는?	7. 구청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한 4m도로이면 적법함.
8. 공사감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건축사 업무및 보수기준"제7은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인정을 받어야 하는지?	8. "건축사업무및 보수기준"은 건축사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에 불과하므로 건축주나 "이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건축사 상호간의 동의와 행정청에 감리자 변경 신고의 접수와 수리만으로 처리 가능함.
9. 천호지구 오금동의 지목이 전답인데 대지조성은?	9. 구획정리지구가 아니므로 대지주가 출장소에 신청하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어 조성하여야 하며 이때 공공용지 부담율은 25%정도임. 천호출장소에 문의하실것.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APT 14층을 건축하는데 50평(세대당)일때 비상용 에레베타설치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1. 14층이 넘을 경우 31M 이상으로써 세대당 방화구획이 되고 내장재를 불연재료로 할때는 비상용 에레베타설치는 안하여도 됨.
2. 고층건물을 설계하는데 계단실, 에레베타, 굴뚝, 다스트 슈트도 각층 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요.	2.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각종슈트, 굴뚝, 에레베타 계단도 각층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연면적 산정하고 있음. 최상층 굴뚝이 펜타하우스에 접하지않고 별도로 있을때는 면적 산정에서제외되는 것으로 봄.
3.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허가 시효기간은 얼마이고 건축법의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요.	3. 착공신고서는 공사를 착공하고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를 득하고 1년이 경과 하여도 착공치 않고 건축할 가망이 없다고 할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건축법 제42조규정에 의함.
4. 기존시장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일부 철거되고 580평에 건축코저 하는데 건물규모는 얼마나 건축 할 수 있는지요(불광동 통일로).	4. 도시계 획선에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대지의 50%를 건축 면적으로 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를 감안하여 층수 연면적을 정하여야 함.
5. 관철동 1종미관지구 상업지구에 63평 대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풍치지구내의 건폐율 용적율을 말씀해 주시지요.	5. 1종미관지구내에는 5층이상이고 대지면적 200평 이상이므로 주차장건물이라도 불가함.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frac{2}{10}$ 및 용적율은 60%가 원칙이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700M² 입니다. 그러나, 풍치지구 지정이전에 기허분할된 것으로서 대지조성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대조정 받은 것은 아래와 같이 건폐율이 완화하여 누진율로 산정되겠읍니다. 즉, 상기 말씀드린것으로서 최소한 230M까지도 허가가 가능하겠으며 230~300M² 까지는 $\frac{4}{10}$이고300M² 이상 으로서 200M² 초과할 때는 $\frac{2}{10}$가 적용되겠으며, 200 이상 100M² 초과할때에는 $\frac{1}{10}$이 적용되어 이상과 같이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제각기 누진율로 적용되겠으며, 용적율은 60%가 원칙이나 다만 학교인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하고 높이는 15M까지 되겠읍니다. 기타 건물의 높이는 8M까지 되겠읍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법 시행령 129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높이 31M 이상 건축물에 설치대상이 되겠으며,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0M² 미만일때는 1대이며 1500 M²이상 3000M² 까지는 1대가 가산되고, ① 높이 31M 이상으로서 각층 면적합계가 500M² 이 일때, 높이 31M, ② 이상이 거실 이외의 용도일때, 31M 이상이 100M² 마다 갑종아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었다면 상기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이 아니되겠읍니다. 비상용 승강기가 2개 이상 설치시에는 소화상 필요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1978년 10월 6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회원 대지 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1. 건축허가 가능함.
2. 시민 주거지역내에서 여인숙 건축이 가능한지요?	2. 숙박업용 건축물로서 불가합니다.
3. 시민 연립주택 건축시 1층에 점포, 2층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	3. 복합용도 건물로서 불가합니다.
4. 시민 연립주택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시종미관 지구이며 주거지역임)	4. 대지면적 300평 이상 건폐율 40% 용적율 100% 190%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1978년 10월 10일 (화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상업지역내에서 여관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1. 상업지역에서 여관건축이 가능합니다.
2. 시민 재개발 지구란 무엇인지요?	2.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난립된 지적이나 건축물을 정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개발 사업입니다.
3. 시민 풍치지구내 기히 용적율 91.6%로 허가(74년도 허가) 받아 준공된 건축물인데 증축을 하여 98%가 됩니다. 건축이 가능한지요?	3. 풍치지구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된것으로서 그당시에는 용적율 300%까지 허용 되었으나 풍치지구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용적율의 한도는 60% 입니다. 그러므로 증축허가는 되지 않고 다만 당초 허가된 용적율인 91.6% 범위내에서 개축은 가능합니다.
4. 시민 폭 4M도로 새길이 32M인 막다른 도로인데 건축할때 몇미터를 후퇴해야 됩니까?	4.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하면 됩니다.

1978년 10월 11일 (수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주거지역에서 영업용 창고 건축이 가능한가?	1. 영업용 창고는 불가하며 165평방미터 미만의 창고는 가능합니다.
2시민 가스배출기 구입및 설치 방법은?	2. 구입은 동네건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 : 개자리 부분의 설치는 시공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도와 연탄가스가 공기보다 질량이 무거워 지면쪽으로 낮게 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권장할 수없고 굴뚝끝부분에 설치하여 풍력에 의하여 멀리 확산시키는 것이 좋읍니다.

3. 시민 1종미관지구 상업지역에서의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소정거리는?	3. 상업지역에서 12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높이가 H라면 $\frac{H-12m}{4.0}+0.5m$ 산정된 거리 이상을 띄어야 된다.
4. 시민 추인허가의 경우에도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필요한가?	4. 추인허가의 경우에도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필요 합니다.
5. 시민 ① 연면적 40평 이상 건축물의 해제시기 ②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경우의 건축가능 여부? ③ 상담실의 위치는?	5. ① 해제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읍니다. ②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불구하고 건축가능 합니다. ③ 청계천 입구 광교에서 동아일보사 쪽으로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4층건물 대한건축사협회 입니다.
6. 시민 74년도에 허가된 건축물인데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허가분임)	6. 가. 서울시청 건축지도과에 래방하셔서 허가대장 열람하여 허가 취소여부 확인 나. 담당직원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열람한후 허가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확인(허가서 분실했을 경우) 다. 허가대로 건물을 시공완료 하였다면 준공신고서 를 제출하면 준공가능하며, 마. 만일허가대로 시공하지 못했다면 재 선정된 감리자로 설계변형허가 득한후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준공가능 합니다.
7. 시민 도시계획 확인원에 기재내용이 철도 중앙에서 30m 이내의 지역은 도시계획 미확정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철도 중앙에서 30m 이내에도 가능한가요?	7. 철도중앙에서 30m 이내 지역에 건축할수 있도록 설계하여 허가 신청하면 철도연변 계획을 수립중인 서울시청 도시계획 2과에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정되면 건축가능함.

1978년 10월 12일 (목)요일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주거지역내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나 거리를 두고 건축하여야 하나요?	1.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처마끝에서 30cm, 외벽에서 50cm.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처마끝에서 1 M 이상, 외벽에서 4 M 이상. 공장은 지역지구 구애없이 처마끝에서 3 M이상, 외벽에서 4 M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합니다.
2. 시민 주거지역내에서 제거식 변소와 우물과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2. 제거식 변소는 우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하에 배설된 폐쇄된 우물로서 그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3 M 이상으로 할 수 있읍니다(단 그 도수관내경이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시민 공덕동에 철거된 2종미관 지구에 대지 45평인데 건축이 가능한가요?	3. 서울시 미관지구 조례에 의하여 제 2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대지면적 최소 한도는 100평 이상이어야 하므로 45평대지 가지고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4. 시민

남부 순환도로(신림동)변에 대지 150평인데 건축이 가능한가요(점포 및 사무실).

5. 시 민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기존 건축물을 지붕만 개량할수 있는지요(즉 기와지붕을 스라브로 개조하고 싶은데요)

6. 시민

자동차 정비공장을 건축할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요?

7. 시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건축규제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요?

4. 질문하시는 위치는 제2종미관지구에 상업지역이므로건축법상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오나 78. 5.22 6, 262 차에 걸쳐 규제된바 있는 불요불급 건축억제지침 관계로 사무실 및 점포 건축은 불가합니다.

5 기존 건축 불건축 준공 당시시행된 건축법에 지장없이 건축된 적법 건축물이라면 지붕만 수선하는 대수선 건축허가는 가능하겠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라면 전폐율 용적율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신축허가도 가능하겠읍니다.

6. 건축법상에는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내에서 가능하오나 상업지역내에서는 300M² 이하의 자동차 수리공장만 가능하겠읍니다마는 당 서울시에서는 한수이북 및 4대문안에서는 교통체증등 인구분산책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외곽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7. 해위치는 상업지역 업무지구로서 건축법상에는 상업지역 건축제한을 받고 있으나 당서울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여의도 개발지침(76. 3.10 시행)에 의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500평 이상이며 건축바닥면적이 최소한 250평이상이고 1종집단 미관지구이므로 5층이상 건축하여야 하며 건물높이는 표고 60M 이하이 나 국회 정문앞 100M 도로변은 40M (건물높이)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용도는 일반 사무실용 건축물만 허용하며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호텔인가된 사항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전면및 100M도로변은 건축허가시 국회사무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폐율 50%이하 용적율 900% 수도경비사령부 협의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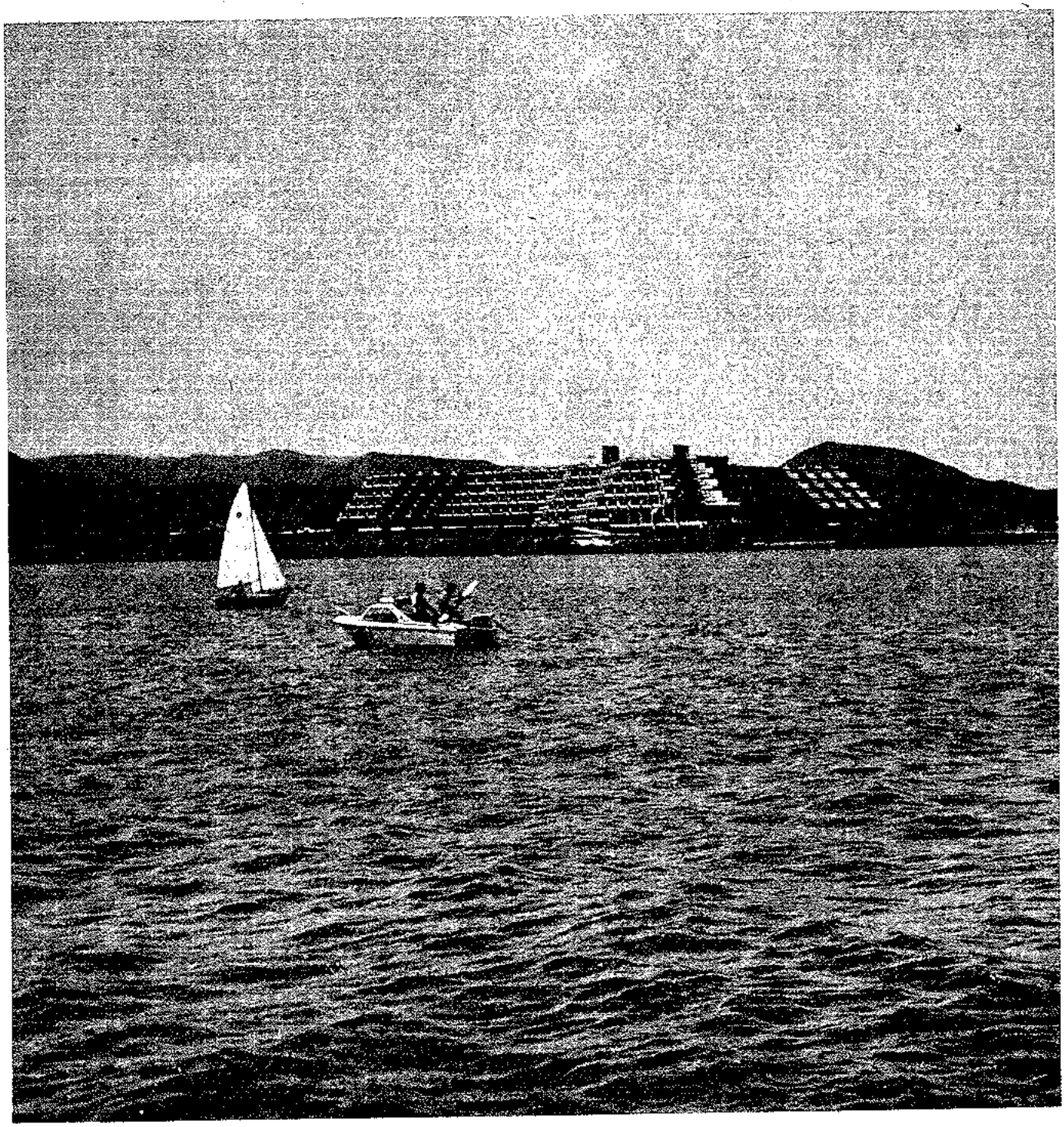

라 · 사리나스 호텔 가나리아諸島 란사로테이 섬

HOTEL LAS SALINAS

設計 : Fernando Higueras

大西洋上에 우뚝솟은 常春의 火山諸島 가나리아,섬은 유럽리소트존이며, 免稅購入 地域이다.

라스 바루마스는 遠洋漁業基地이기도 하다. 란 사도데섬은 이諸島北端에 位置하는 面積 795km², 人口 40,000人의 섬이다. 또한 觀光開発붐에 오염되지 않은 이섬의 荒涼한 濃褐色의 溶岩原을 背景으로, 푸른바다를 向해, 호텔, 라·사리나스는 하야케 水平으로 뻗어있다.

鉄筋콘크리트造, 5層建物,客室数 336室의 高級호텔 이다.

中心軸에서 45°方向에 兩翼이 뻗는 Y자型의 平面이며, 이것은 3.5m의 크리트를 基準에 두고 있다.

断面的으로는 客室이 피라밋 과 같이 階段模様으로 싸아올린 形態로 되어있다.

別個의 발코니는 花壇의 組合에 의해 他室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루어져 있다.

花壇에는 草花가 繁盛한 階段式 꽃밭과도 흡사하다. 階段式의 客室의 裏面에 해당하는 部分이 復道로 利用되어, 여기에도 花壇이 連結되 있다.

양쪽의 1層部分은, 제각기 바다를 向한 食堂과 라운지로 利用되고있다.

이곳에 天井한쪽은 鉄筋의 位体트라스 위에 유리를 올려 놓은것으로, 밝고 開放的인 空間인 것이다.

食堂과 라운지의 뒷部分은, 소규모의 정원(Patio)을 겻더리고 있다.

厨房과 事務室等의 써-비스 部分이 후퇴되어지고 있다. 세날개의 接点部分에는 에레베터와 階段室이 있어, 1層에서는 여기서부터 出入口가 突出되어 있다. 이곳의 天井은 露出되어진 보가 壁에 対해서 45°方向에 格子 模様으로 交差하고 있어, 3種類의 데밸差가 부튼 톱라이트인 시린다를 꽂고 있다.

이홀을 벗어나면, 中心軸에 沿하여, 하늘을 向해서 뻥뚤린 구멍이 吹披Patio가 있다.

여기에는 火山性의 植物이 繁盛해서 물이 흐르고 시원한 雰囲気를 만들고 있다.

各層의 同廊은, 順次的으로 앞으로 내밀어, 이 庭園을 감싼다.

画廊의 거둥과보에는 홈이 파지며, 이것이 기둥에서 보쪽으로 흐른다. 보는 枝分되여 天井을 달음질쳐 다시 合流해서 기둥으로 돌아온다.

기둥과 보는 一体가되어 被膜化해 있어 고딕을 생각케 한다.

이 정원에서, 主翼의 先端 部分의 카페테라스를 통해서, 바다가 멀리 보인다.

또한 이테라스에서 꽃이 満発한 外部階段이 바다를 굽어 最上層까지 뻗어있다.

建設은 原住労動力에 의해, 途中施工業者의 変更等이 있어, 数3年의 工期를 要했다.

外壁은 主로 現場生産의 푸레콘이 使用되었다.

内部 庭園및 海水 Pool 의 造園은, 이섬의 画家 세사-롱·만리케의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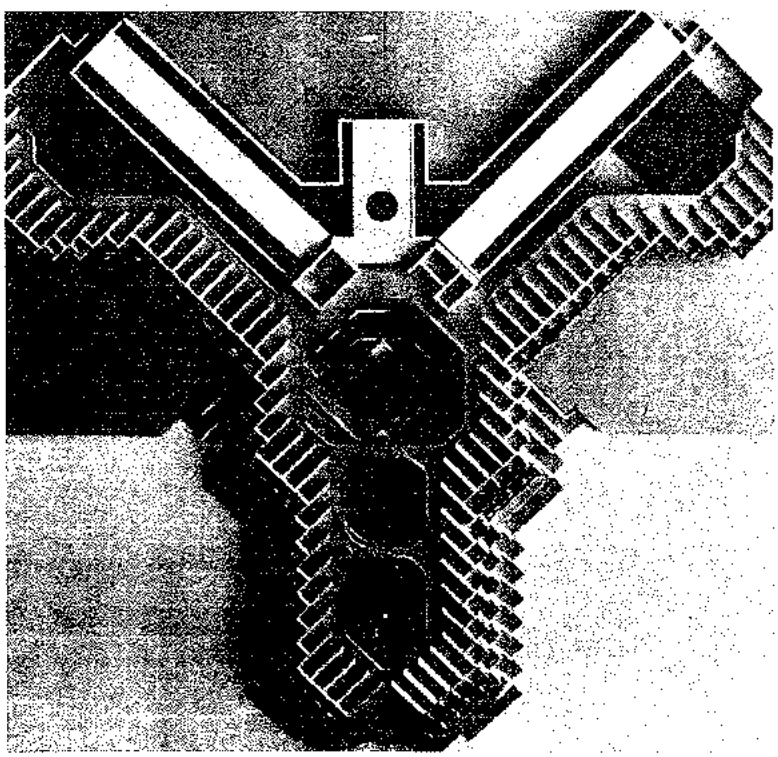

②-模型
③-外壁詳細
④-段状의 外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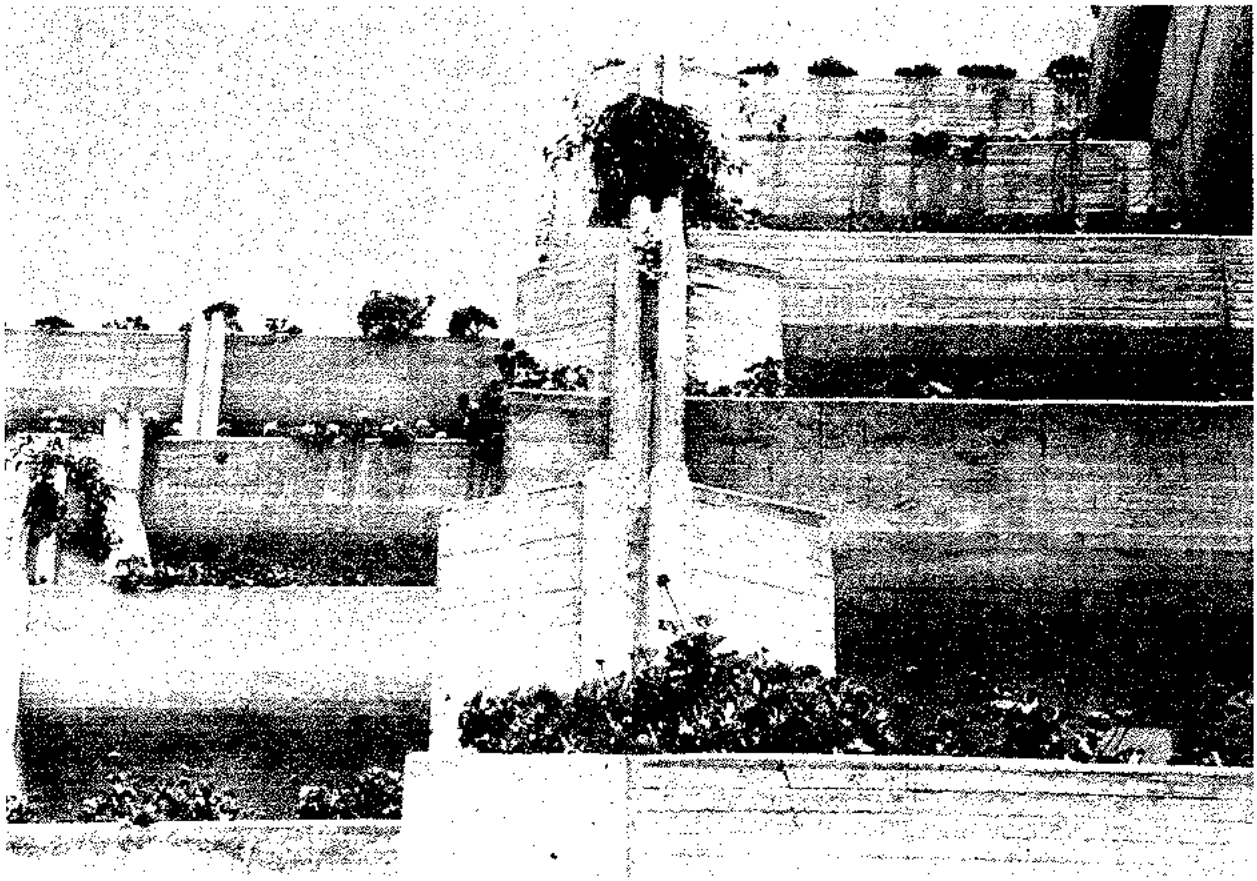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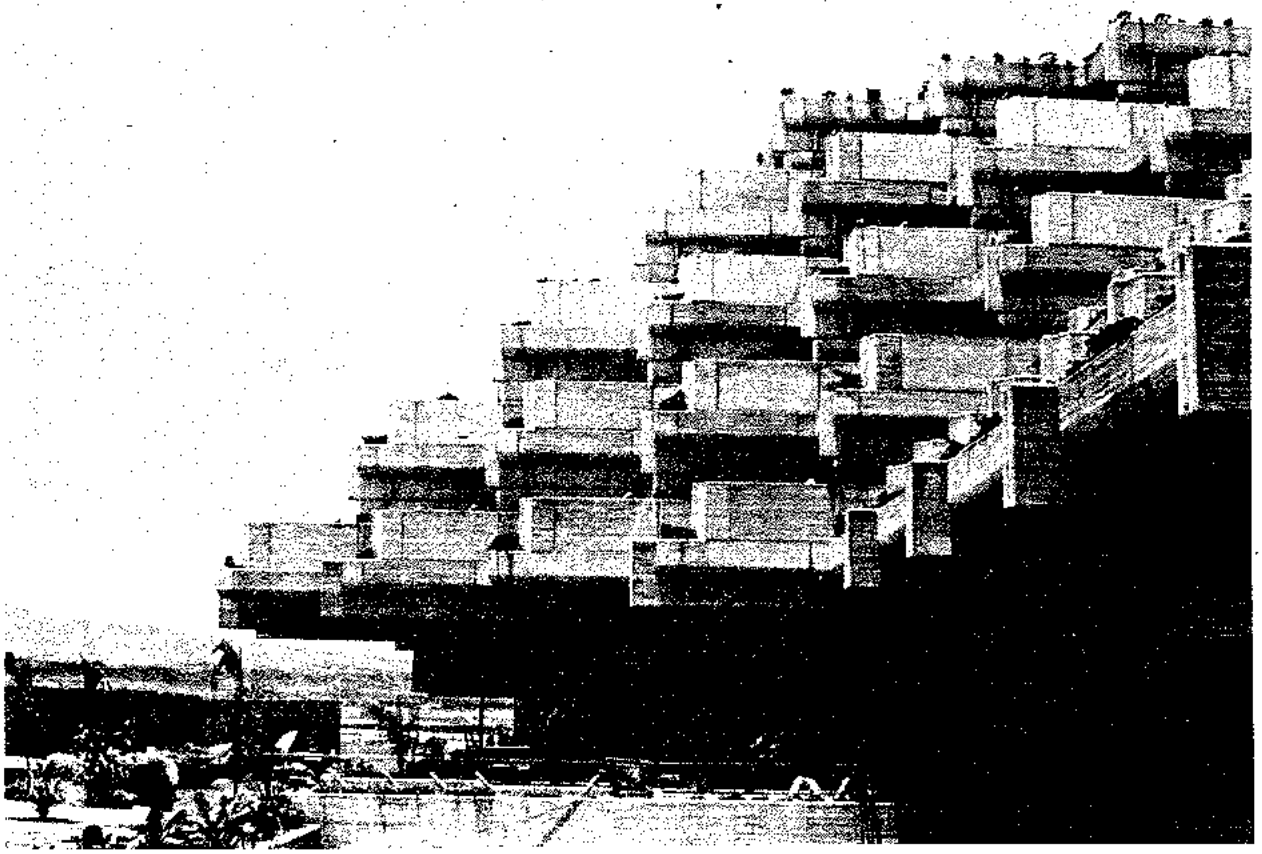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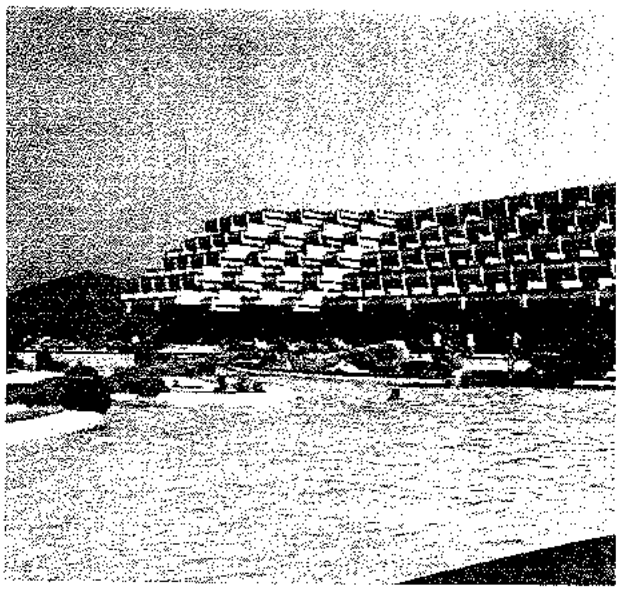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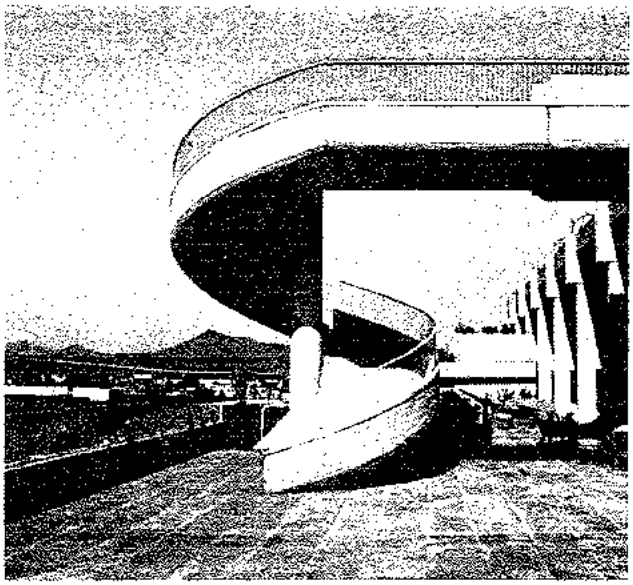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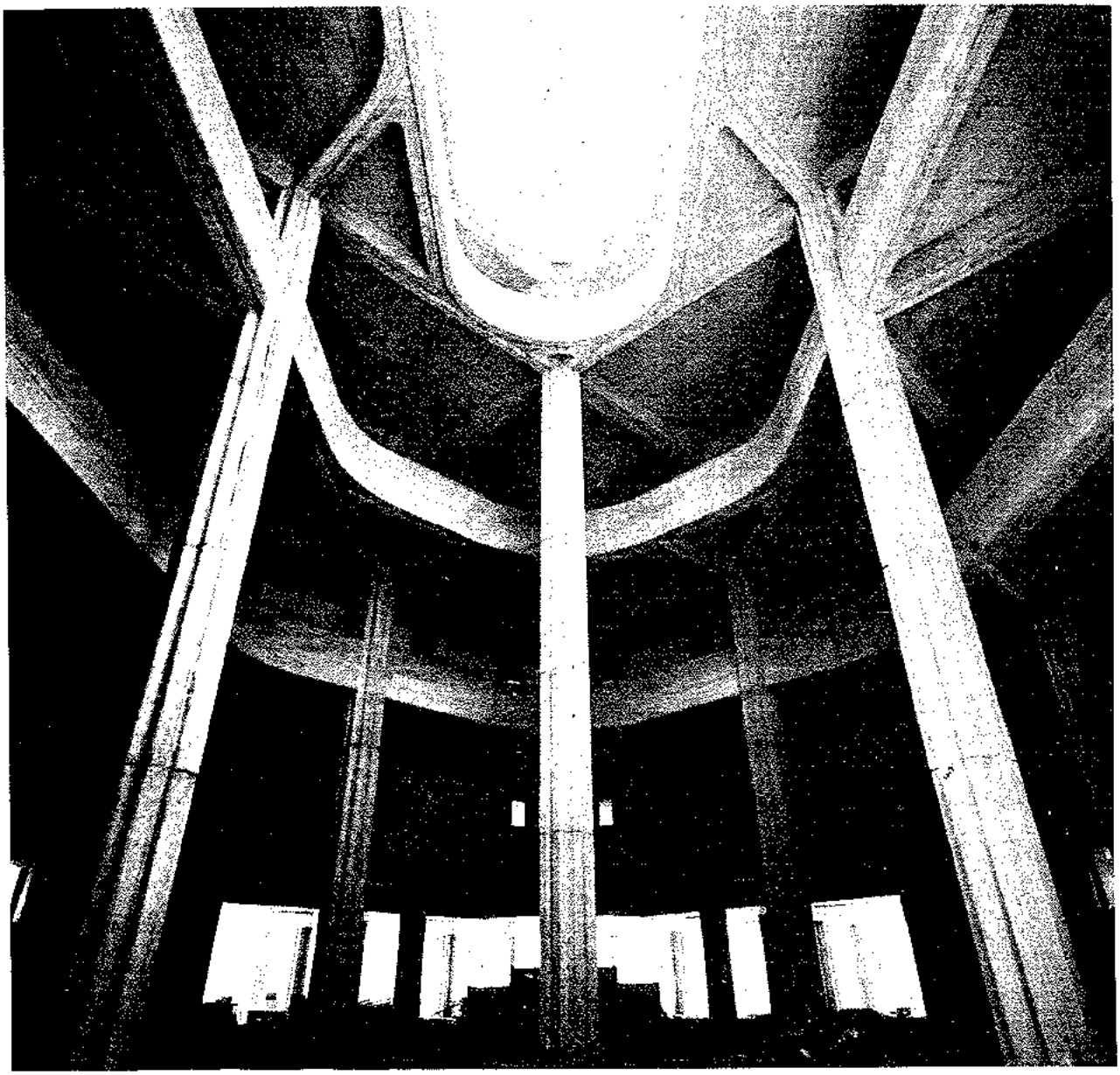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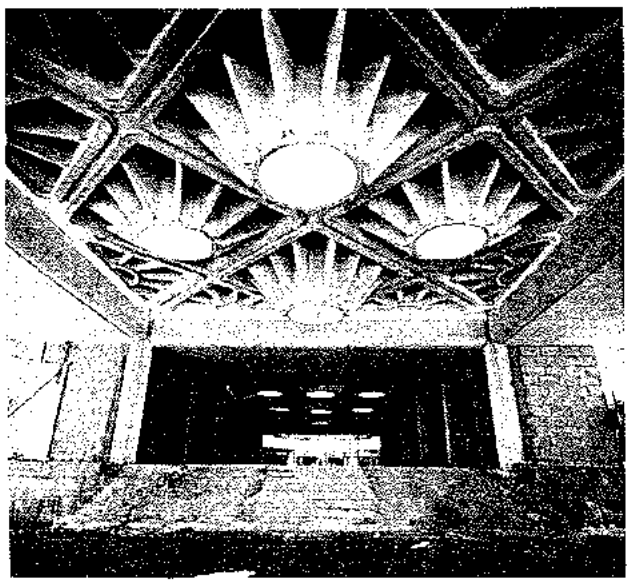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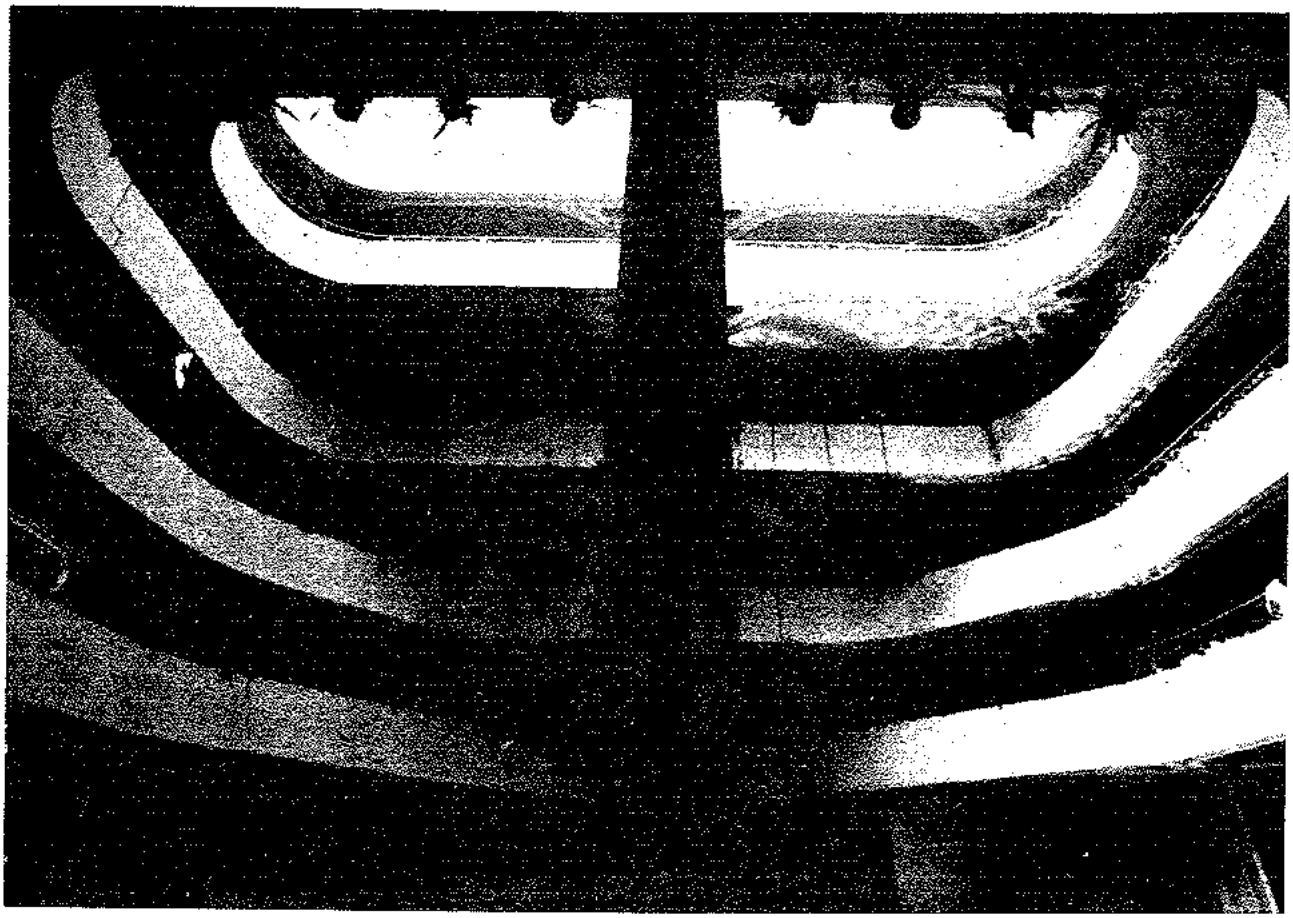

⑤⑥－中庭吹抜部分
⑦－中庭을 본다
⑧～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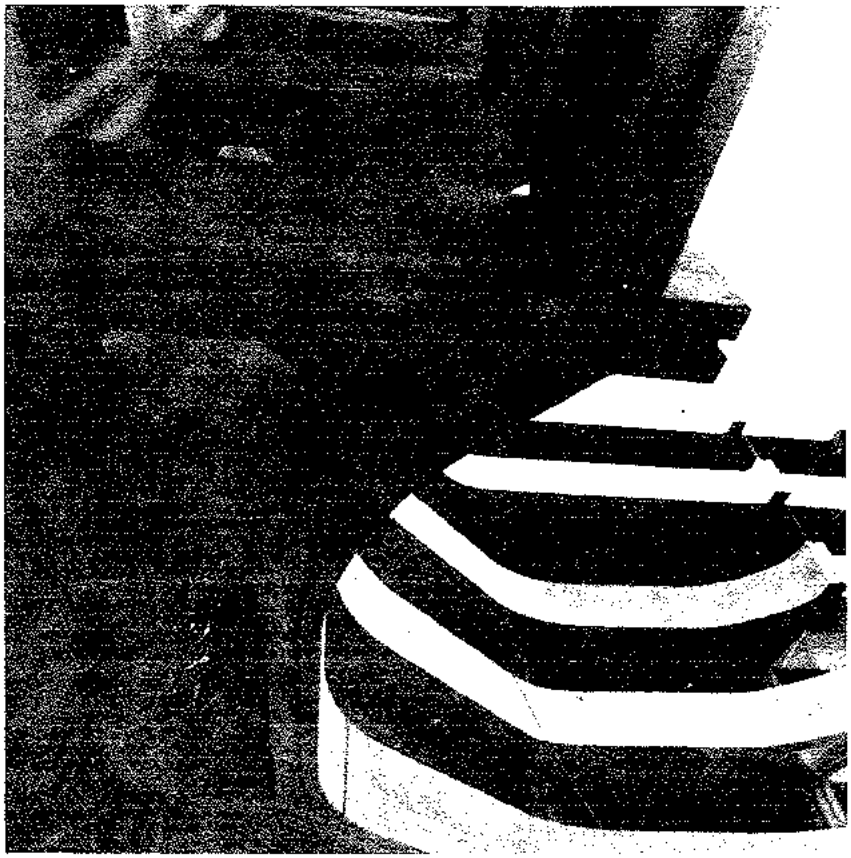

⑨－食堂天井
⑩～食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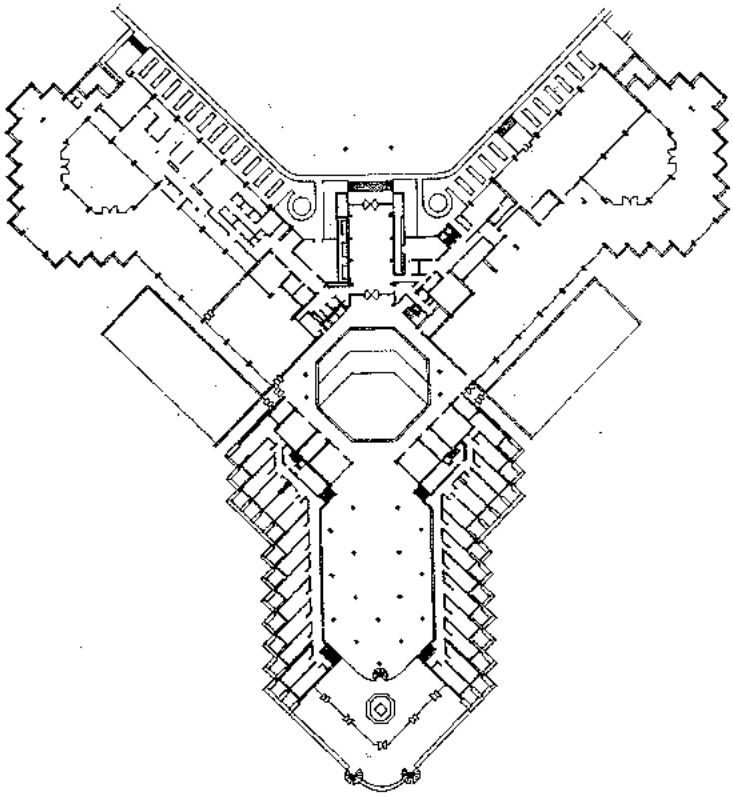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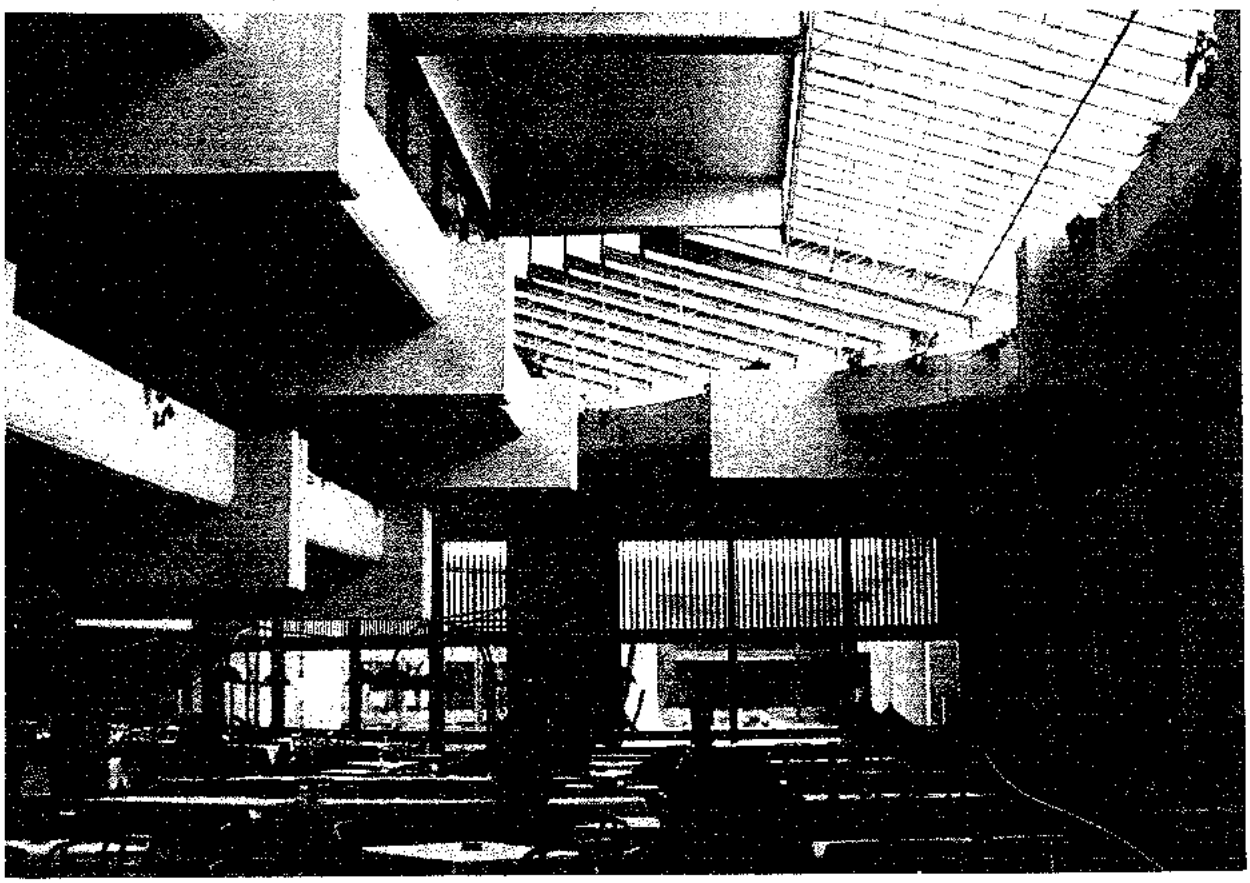

리소트호텔 西部독일 부라이사하

設計 Wolfgang Lauber

이 호텔은 南部독일, 라인江을 끼고 있는 古都부라이사하에 있다. 河畔의 野山 구릉위에는 市庁舎等 歴史的建物이 現存하며, 또한 이곳에 서면 라인江의 흐름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渓谷 저멀리에는, 뷔-쥬山脈이 보인다. 이런 연유에서 当然히, 이 호텔은 歴史的環境, 自然条件을 計劃속에 考慮치 않으면 안된다.

客室42(但 bed 数는 64), 로비, 식당, 카페테리아, 쇼핑센터, 아케이트, 풀, 보-링場과 같이 호텔에서 빼수없는것, 施設, 設備以外에 会議場, 講演室과 같은 公共的 施設도 要求된 이 機能의 複合을 어떻게 消化시켜, 다시 어떠한 方法으로 諸社会的 要求에 応하느냐가, 이 호텔의 設計의 더 한층 重要한 포인트인 것이다.

라인江은 가데도랄 언덕 서쪽을 渓谷지게 하여 흐르고 있으나, 江의 흐름을 眺望할수 있게끔 튀어나온 湾曲되어, 한편 東쪽은 움푹패인 가데도랄이나 市庁舎의 広場과 呼応하고 있다.

建物의 높이도 그렇지만, 層数도 3層으로 받아, 지붕棟의 水平線은 가데도랄이나 市庁舎 塔의 높이를 넘는 법이 없다.

다시 지붕을 棟에서 1層까지 勾配를 만들어 周辺의 民家의 勾配지붕과의 異和感을 避하고 있다. 이와같은 配慮는, 保守的이며, 保存主義의 독일에서는, 建築家에게 특히 要求되여지고 있다.

平面計劃은 대체적으로 4個棟으로 나누어진다.

이 4個棟의 세가지 点에서 제가끔 135°, 75°, 75°로 꺾이어 굽어, 湾曲되면서 4辺形을 이루고 있다. 4個棟中에 제일큰것이 라인江에 平行하고 있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 4개棟에 둘러싸인 곳이 말하자면 이 호텔의 主要人口와 그것에 붙는 로비이다.

가데도랄広場에서 조그만 나무다리로 길을 건너 들어오는 아푸로치와 広場의 한쪽을 질러 自動車 道에沿해 들어오는 아푸로치가 있다.

이 入口둘레는 周囲건물과 높이를 나란히하고 있으며 特히 広場에서 비스타에는 配慮의 흔적이 보인다.

이 호텔의 로비는 特히 設計上 苦心의 흔적이 역력하다. 로비는 1層높이이고 그 지붕에는 植栽를 하고 있다. 이 로비의 層高의 얕음을 메꾸기 위해, 로비 구석에 地層에서 3層까지의 吹抜을 만들어, 이 吹抜을 유리로 처리하고 있다.

太陽光線은, 따라서 地層까지 깊이 내려쪼일수가 있고, 吹抜에 의해 建物内部를 概観할수 있으며 무엇보다 空間의 깊이가 内部空間体検의 中心으로 되어 있다. 다시 이 吹抜両端에 2個의 둘레 階段을 만들어, 한쪽 階段는 開放하여, 한쪽은 리후트를 内蔵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되면 이 로비는 오목凹面型을 한 建物의 焦点인 것이다. 또한가지 로비에 隣接해서, 会議場이나 講演室에로의 길이 있으며, 그곳을 레벨 高低差를 두고 있어, 로비를 통한 空間体験은 다시 変化에 찬것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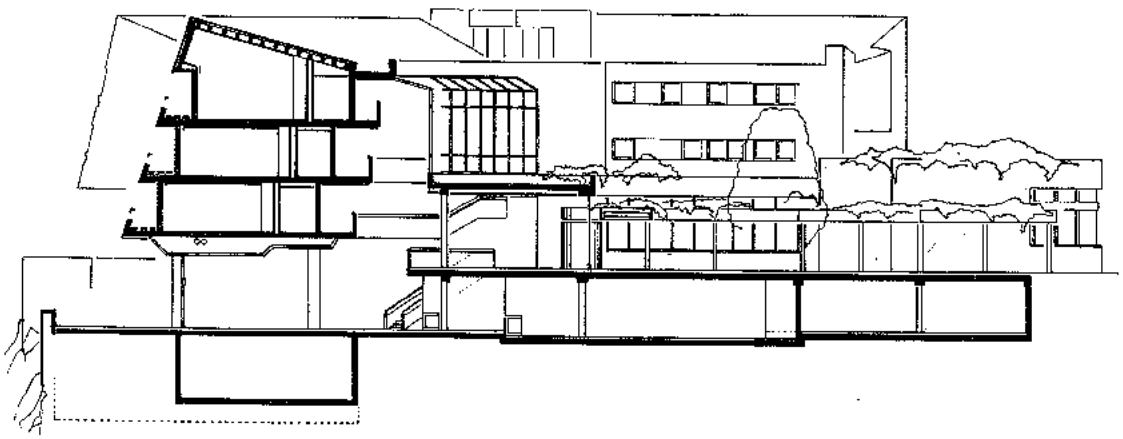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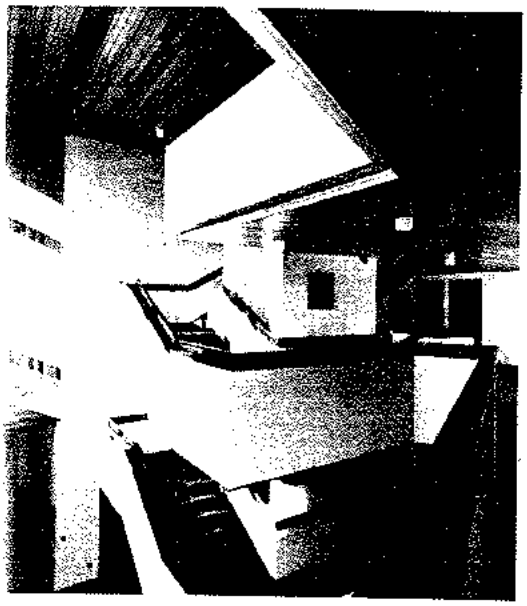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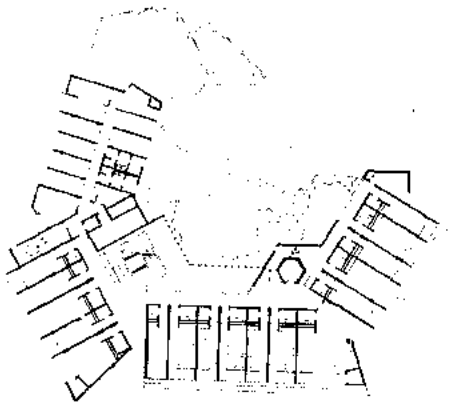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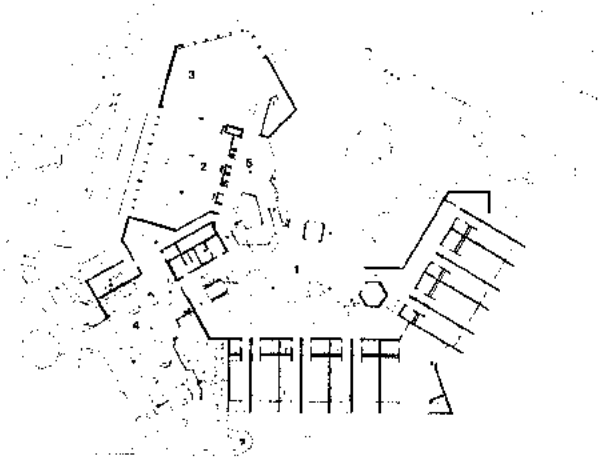

① - 断面図
② - SKY LIGHT 에서 吹抜에 計히는 光線
③ - 3層平面図
④ - 2層平面図
⑤ - 1層平面図
⑥ - 地層平面図

1. 大홀
2. 会議室
3. 講演室
4. 카-페
5. 리-비
6. 식당
7. 게다
8. 厨房
9. 機械室
10. 당구장
11. 보-링장
12. 풀
13.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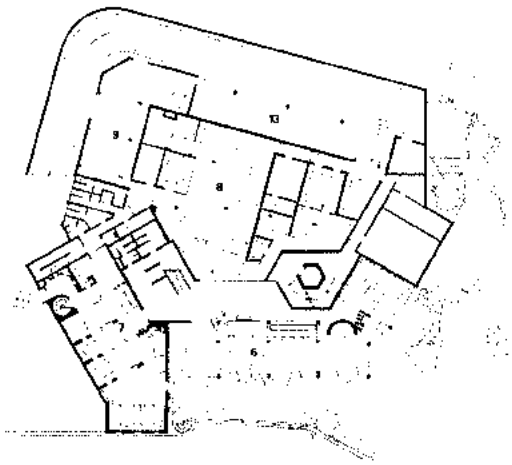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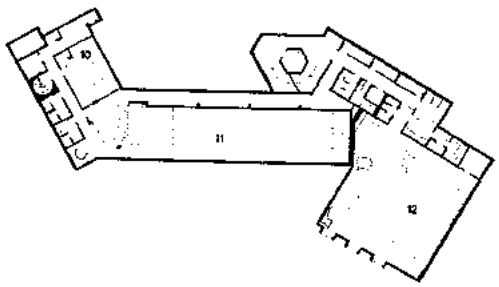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8年6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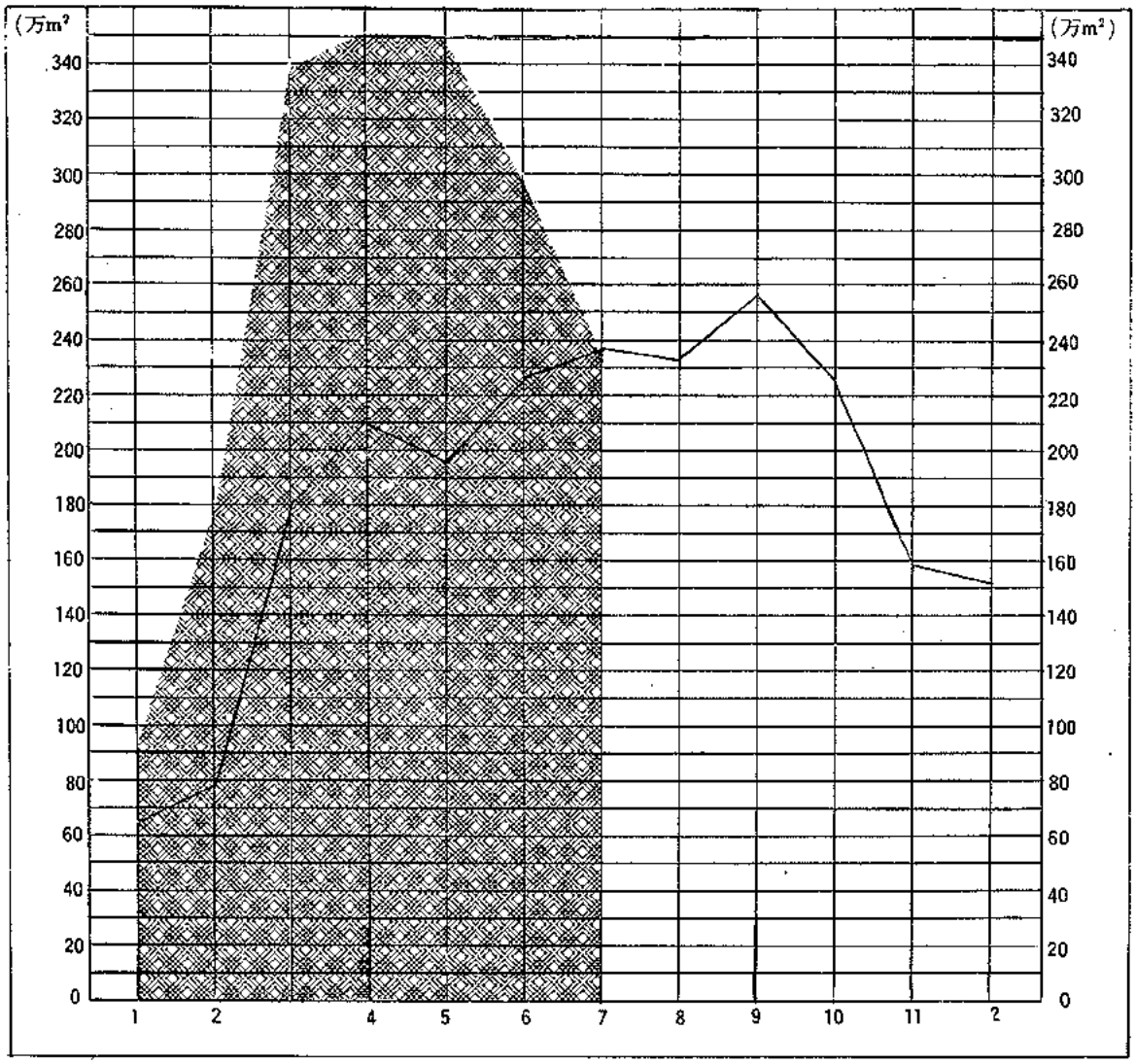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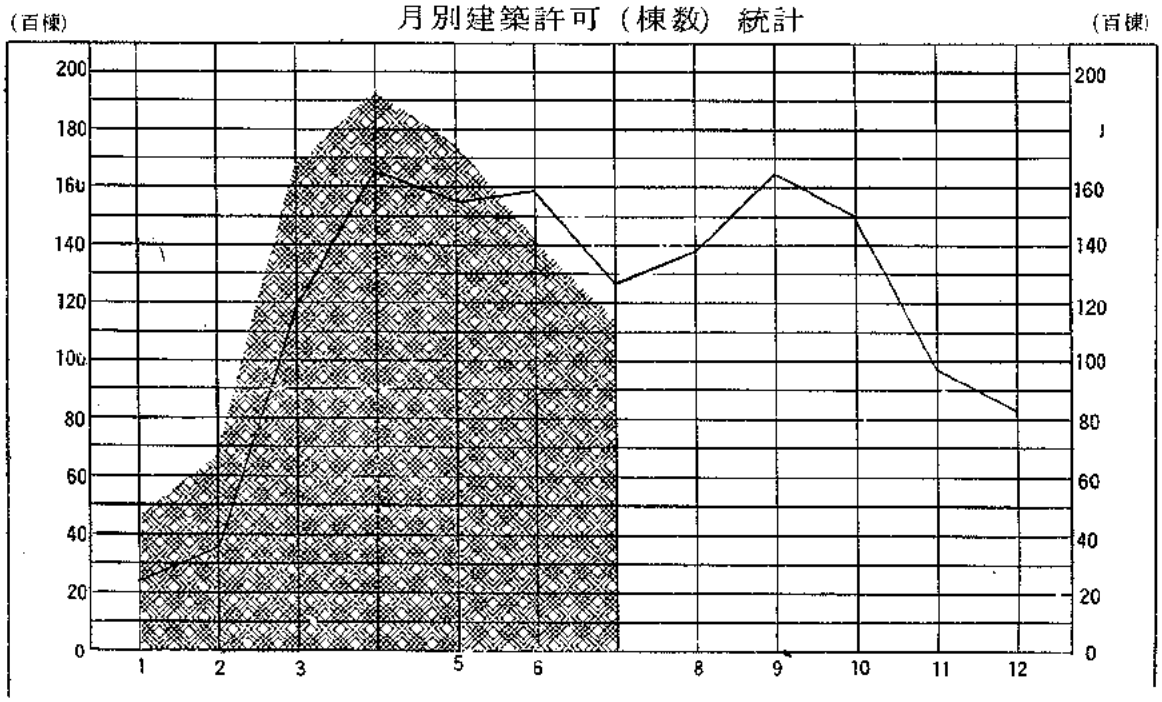

1977
1978

構造別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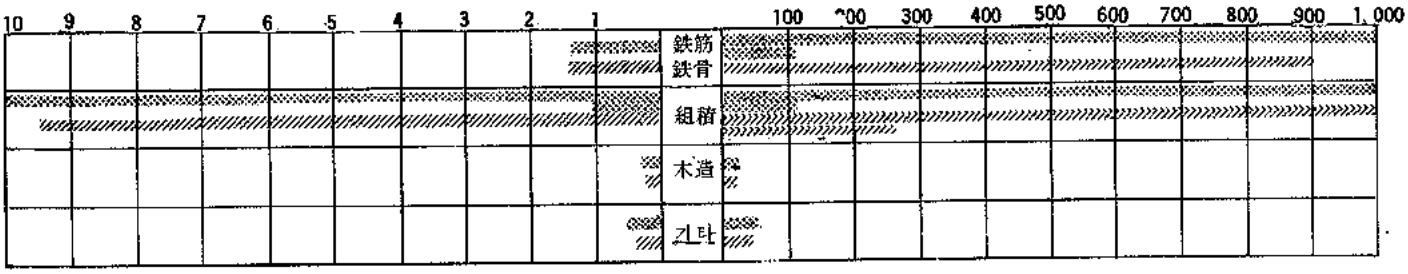

用途別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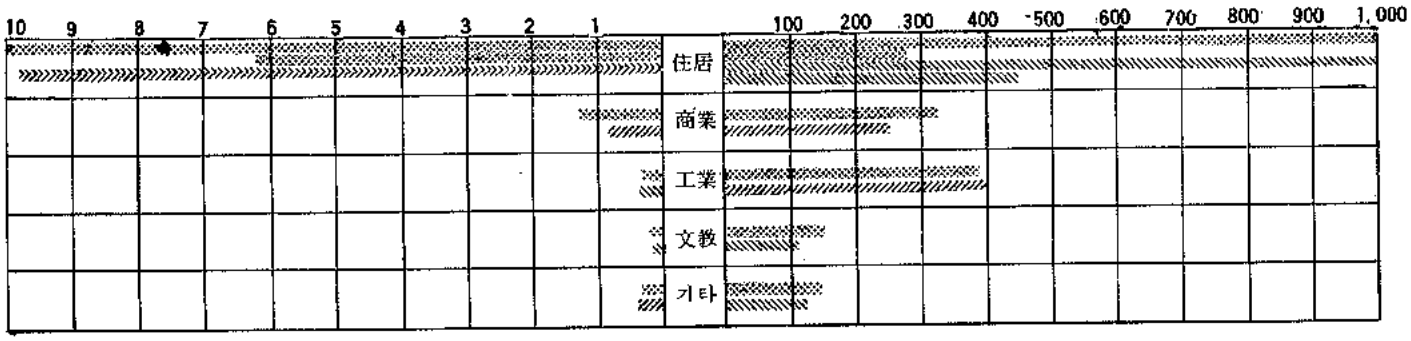

市道別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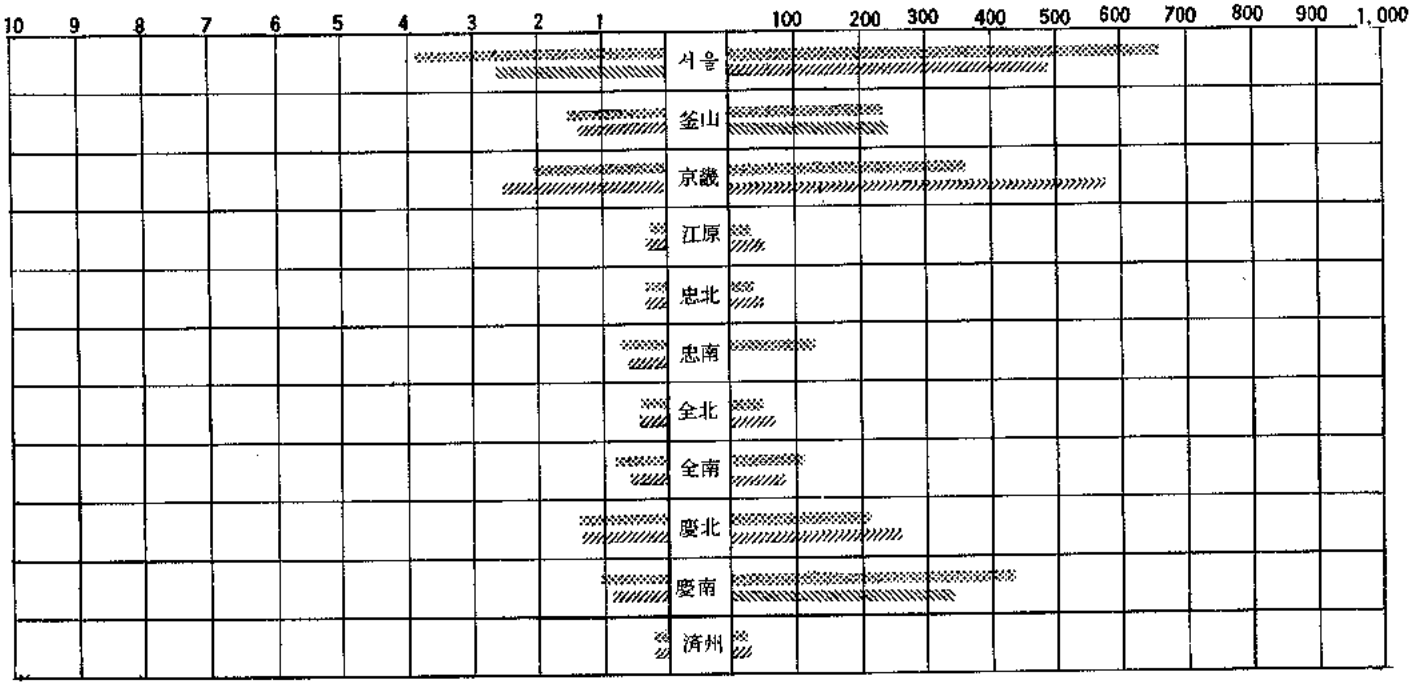

全国許可統計総括

棟数(萬棟) (延面積：萬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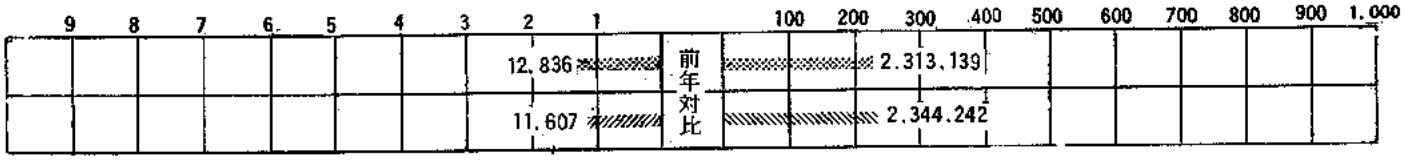

(일본 기술을 도입)

콘크리트, 몰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濕用

하이너루 防水劑 수성페인트混和劑

사용후 다시찾는 防水工의 마약

◆ 特徵 · 利點 ◆

* 防水콘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防水, 防濕, 防腐效果는 100%이다.
* K. S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수성페인트 混和劑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価格低廉, 経済性이 倍加.

◆ 用　途 ◆

* 터-널 地下室 屋上 벽체 욕실防水

◆ 사 용 법 ◆

* 콘크리트용은 : 시멘트중량비 2 %이상.
* 몰탈용은 : 시멘트중량비 4 %이상
* 석회용은 : 석회중량비 4 %이상.
* 使用水量에 混和사용.

◆ 제품성능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택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규격에 합격), 쌍용레미콘시험실(強度시험),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①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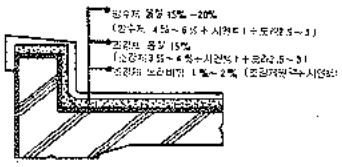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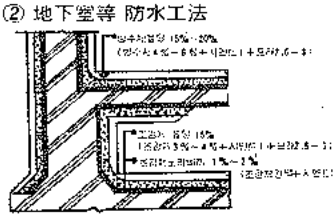

하이너-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자료 / 면적	시 멘 트	모 래	하이너-루원액소요량			비 고
			조강페스트 70%	조강몰탈 3 %	방수몰탈 4 %	기준량 이 상 첨가요
100M²	(42.75포) 1,710kg	3.0M³	42kg	27kg	30kg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 %이상 첨가.
예 : 320kg (1 M³) × 2 % = 6.4kg (하이너-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를 용이하게하는

하이너루 防凍劑 早強劑

시멘트混和劑의 最新 · 最優秀製品

◆ 特徵 · 利點 ◆

* 1日, 3日, 7日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3日, 7日, 28日 強度와 同一.
* A, E劑, 減水劑, 分散劑役割
* 工事費의 減少, 工期短縮, 凍害防止.
* 強度增大로 Cement절감.

◆ 品　質 ◆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國産을 능가 함을 증명한다.

◆ 用　途 ◆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水中工事
* 凍期工事(−15 ℃), 緊急을 要하는 工事
* 시멘트 2次製品
* 早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防水工事에 止水劑로 사용.

◆ 使 用 法 ◆

* 早強효과 : 시멘트중량비 1 ~ 5 %첨가
* 防凍효과 : 시멘트중량비 6 ~12%첨가
* 止水효과 : 100%원액을 사용
* 사용水量에 稀釋사용

◆ 納品実績 ◆

*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업, 미성건설, 정우개발) * 부산시청 * 부산세관 * 수협중앙회 * 자명건설Co. * 총성건설Co. * 태평양건설Co. * 삼익주택(여의도Apt) * 삼부토건(여의도 타워형Apt) * 부산시청 영도제 2 대교가설공사(홍화공업) * 대한주택공사 사직동아파트(경남기업) * 부산제 7 부두측조공사(동아건설)의 200여처

三龍化學工業株式會社

서울 ㉚ 5377 · 7892 부산 ㉓ 0777 ㉒ 0113 · ㉖ 0253 대구 ㉗ 1797 이리 2945 인천 5 5125 성남 2 1807 청주 ② 1020

物品, 伝票運搬의 現代化設備

선진국의 대열에 선 우리의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중외상사가 日本 Nippon Air-Shooter 와 제휴, 현대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Air Shooter.
서류반송만이 아니고 분석자료의 급송, part 반송등 풍부한 기종과 system으로 모든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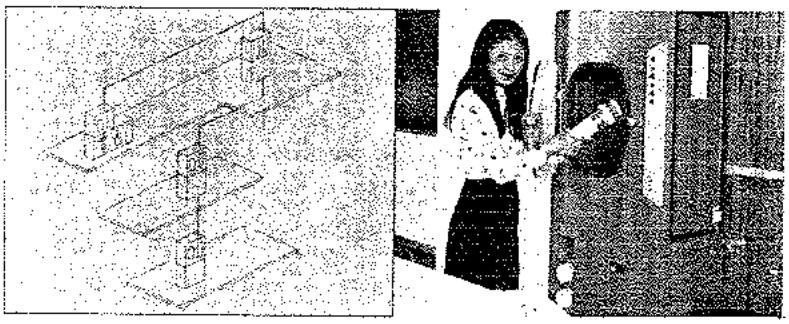

먼지의 수집방법을 크게 바꾼
NAS Nippon Air Shooter)
Central Refuse
먼지진공수송 설비
초대형의 진공소제기라고 생각해 주시요. 먼지는 投入口에서 수송관을 통하여 수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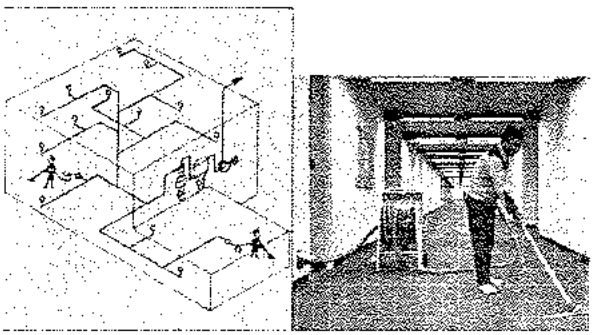

어디서나 利用되고 있는
Vertical Conveyor System
15kg 以下의 중량으로 tray 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던지 반송된다. 즉, Billding 內의 Track 대량 반송에도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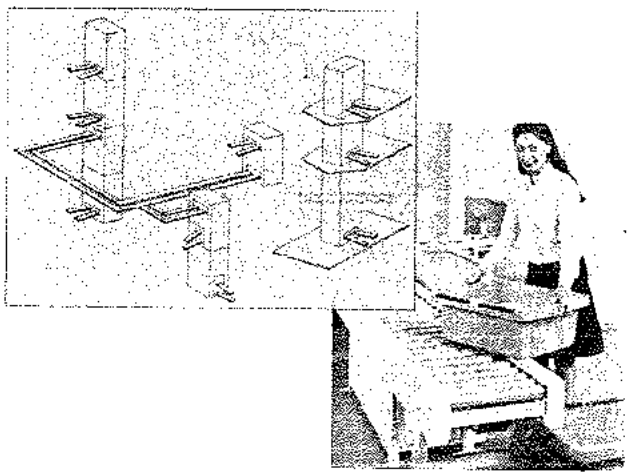

○ Air-Shooter 의 主 利用하는곳
銀行, 商社, Maker, 病院, 電力会社, 出版社 保険, 証券会社, HOTEL, Golf 場 等.

製造元

日本 AIR SHOOTER 株式会社
韓國總代理店
大 韓 中 外 商 事 株 式 会 社

서울市 城北区 下月谷洞80－2 94・0981～4 (교) 95・4449(직)

시멘트混和劑 標準型

AE ·分散劑·減水劑

츄폴·씨

CHUPOL·C

▲ 츄폴 · 씨의 特性

- 單位水量의 減少 (8 – 12%)
- 作業性이 좋아짐.
- 強度增大로 Cement 節減 (8 — 10%)
- 工期短縮, 工事費節減
- 過多使用하여도 效能不變
- 非이온性이므로 鉄骨腐蝕性 없음.

▲ 츄폴 · 씨의 使用法

- 使用하는 Cement重量의 0.04%가 標準임.
  콘크리트 1m³을 만들때 츄폴·C 사용으로 절감되는 시멘트 량은?
  (보통 콘크리트 1m³ 만들때 시멘트 320 kg이 소요된다면)
  츄폴·C 사용시 시멘트 10%를 절감한 (320 kg – 32kg) 288kg에 츄폴·C를 115g (288 kg의 0.04%)을 투입사용하시면 됩니다.

- 시멘트 한포 (40kg)에 츄폴 · 씨 16g.

▲ 使 用 量

- 지연효과 : 시멘트 重量의 0.1%
- 早強효과 : 시멘트 重量의 0.5%

츄 폴·NR 遲延型
츄 폴·Z-I 早強型

↙脫型油는 포리존

▲ 品質保証

- 本 製品은 日本에서 20余年間 使用한 特許品임.
- 技術導入 및 合作投資로 国内 生産供給
- 国立건설연구소, 국방부조달본부, 농업진흥공사 品質시험합격, 日本工業規格 (JIS) 合格.

新韓有機化學工業株式會社

TEL : 仁川 ⑥0031 · 1407

本社 · 工場 : 京畿道 富川市 春衣洞 209 서울連絡所 : 22 — 5486 · 23 — 8821

發明 特許品 電子열쇠(도어로크)新発売

열쇠界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시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合鍵)가 않됨.
   (439,296個가 生産될때 同一한 열쇠 한개가 나옴)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室,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社로 注文하십시오.

補助錠(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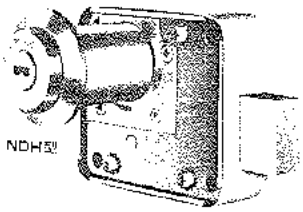

附着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크(ECHMU型)電子式

한가지型으로 左右 內外, 開門自由로이 使用할수 있고, 重要保管用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읍니다.

安全문고리(SL-1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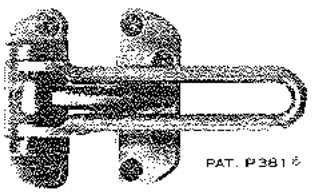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넷트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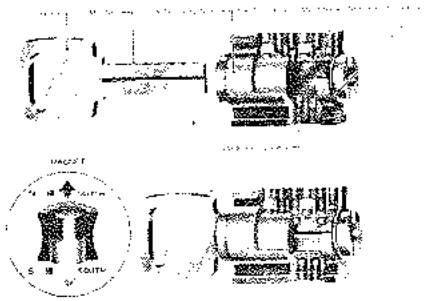

世林貿易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 街 60 - 3
TEL. 776 - 7040 · 7041
공장 TEL. 260 - 1623 부산지사 : 26 - 8765

日本美和LOCK株式会社

예원네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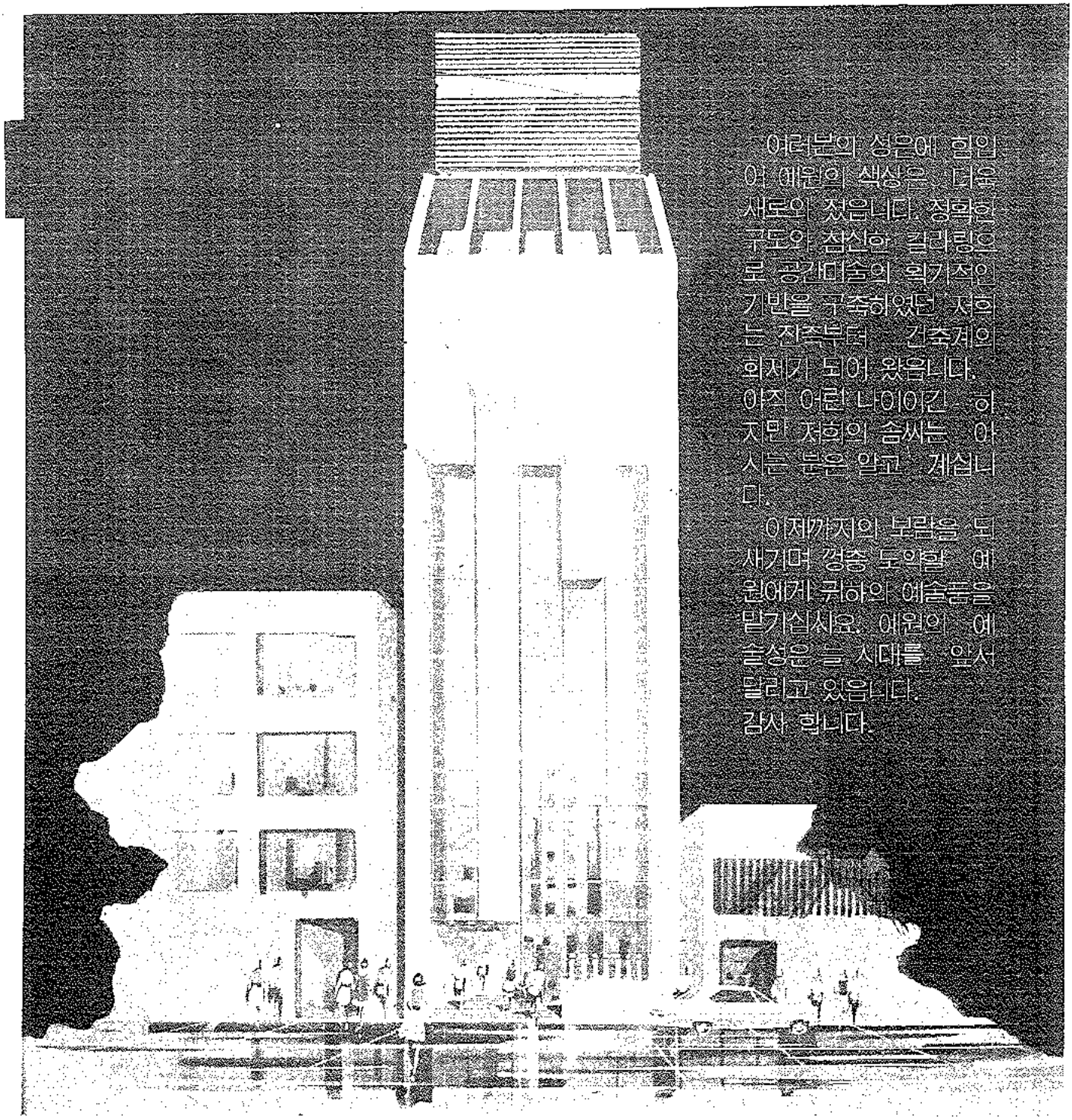

어려분의 성은에 힘입어 예원의 색상은 더욱 새로워 졌읍니다. 정확한 구도와 참신한 칼라링으로 공간미술의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던 저희는 진즉부터 건축계의 외지가 되어 왔읍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저희의 솜씨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까지의 보람을 되새기며 경중 노력할 예원에게 귀하의 예술품을 맡기십시요. 예원의 예술성은 늘 시대를 앞서 달리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투시도·조감도

94·5784

藝園

Rocket Boiler
연료비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고압연관식보일러(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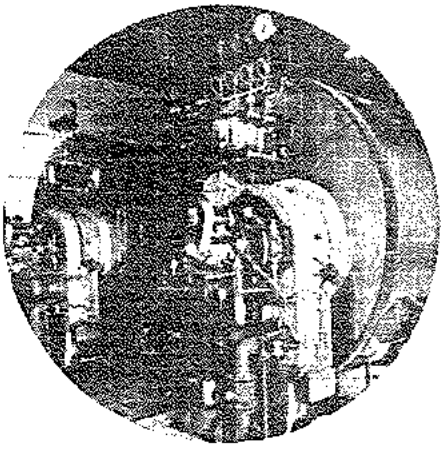

-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 벨기에의 현수과 기술 협력한 새로운 모델로 긴 수명과 놀라운 성능의 보일러입니다.
- □ 면판식 보일러의 신기원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KRS)

- □ 1000명 미만 기숙사 취사는 20분내에 해결합니다.
- □ 직물공장 건조 세팅 증기 다리미용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 화학병원기 살균 난방및 급탕용 식품가공·공장에 적합합니다.
- □ 미역해초등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 규격 0.2에서 0.5ton 의 전자동 소형 스팀 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 전자동이므로 관리원 이 필요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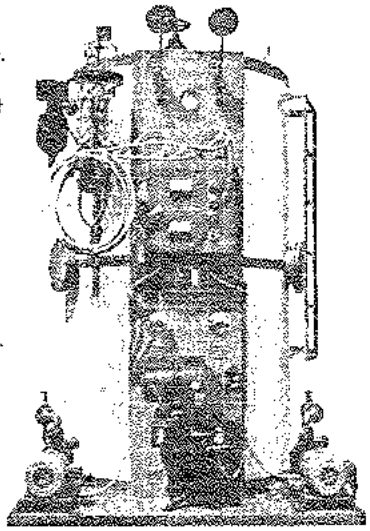

다목적온수보일러(KR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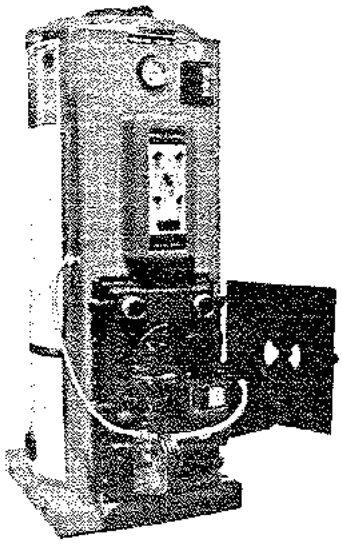

- □ 난방용 급탕용 목욕탕 전용.
- □ 정전시 또는 오일버어너 고장시 연탄화목및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 식입니다.
-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과 동코일이 삽입된 급탕 난방겸용이 있읍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KRQ)

-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혁신.
- □ 신제품 KRQ는 벨기에의 완숀 기술협력 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평이상 30평미만 40평이상 60평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읍니다.
-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맞먹는 기름연료비 ½ HP소형 오일버어너로 전기소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지하실 부엌 창고등에 간단히 설치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 대량생산 기계화로 동종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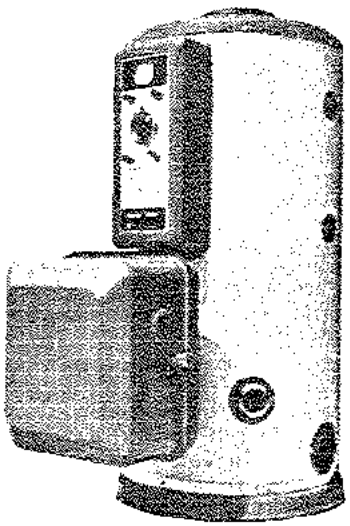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 %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 (6) 5131－4

여의도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세우회관 6층)

전화 : (782) 7373, 7387, 8757

韓国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읍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国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為해 끊임없이 研究努力하고 있읍니다.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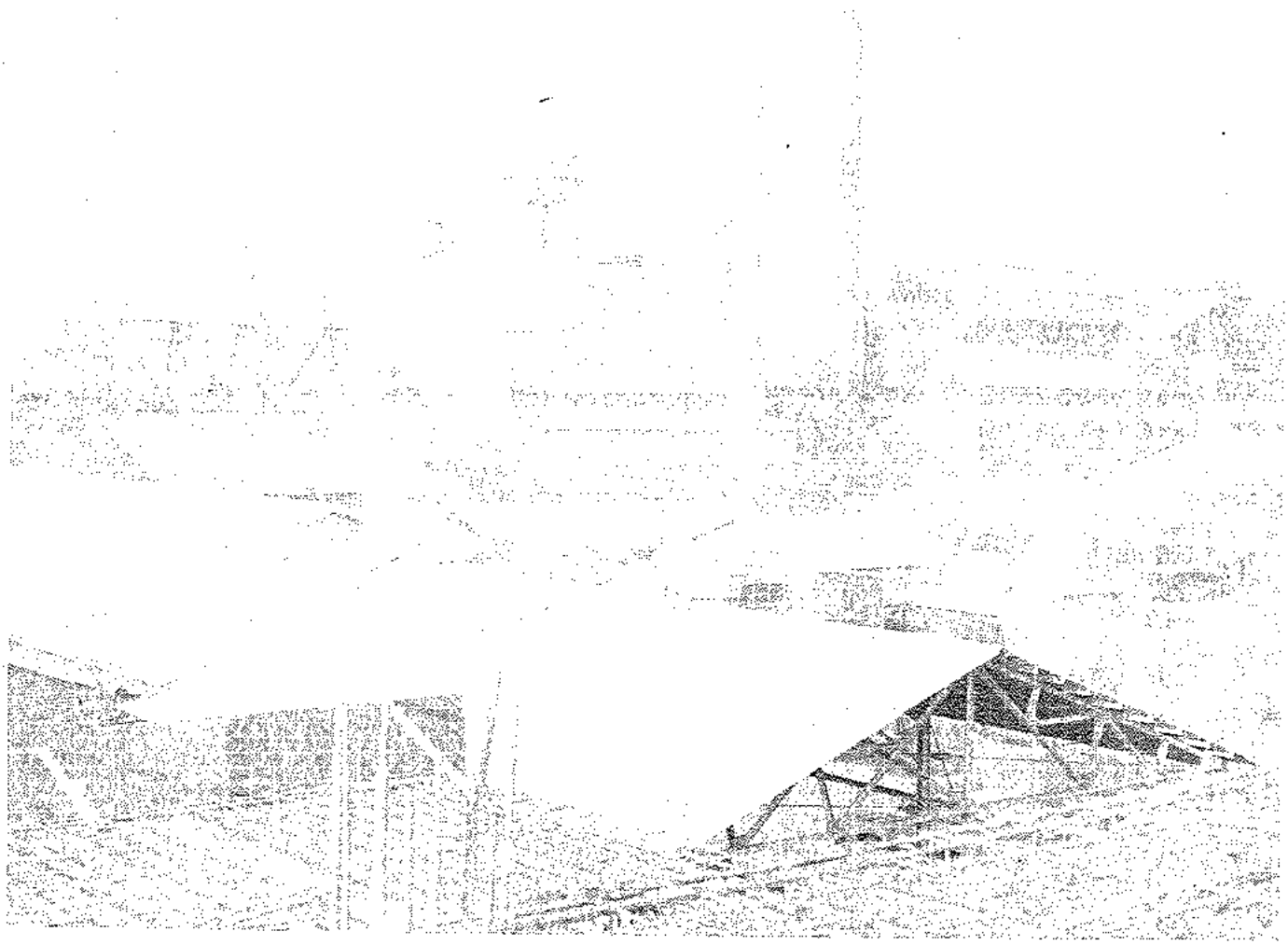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㉓ 7141～5 ㉗ 8022～6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2 仁川 ⑦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㊷ 4066～4070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난방 / 급탕겸용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공업진흥청승인 열 제1-1003-1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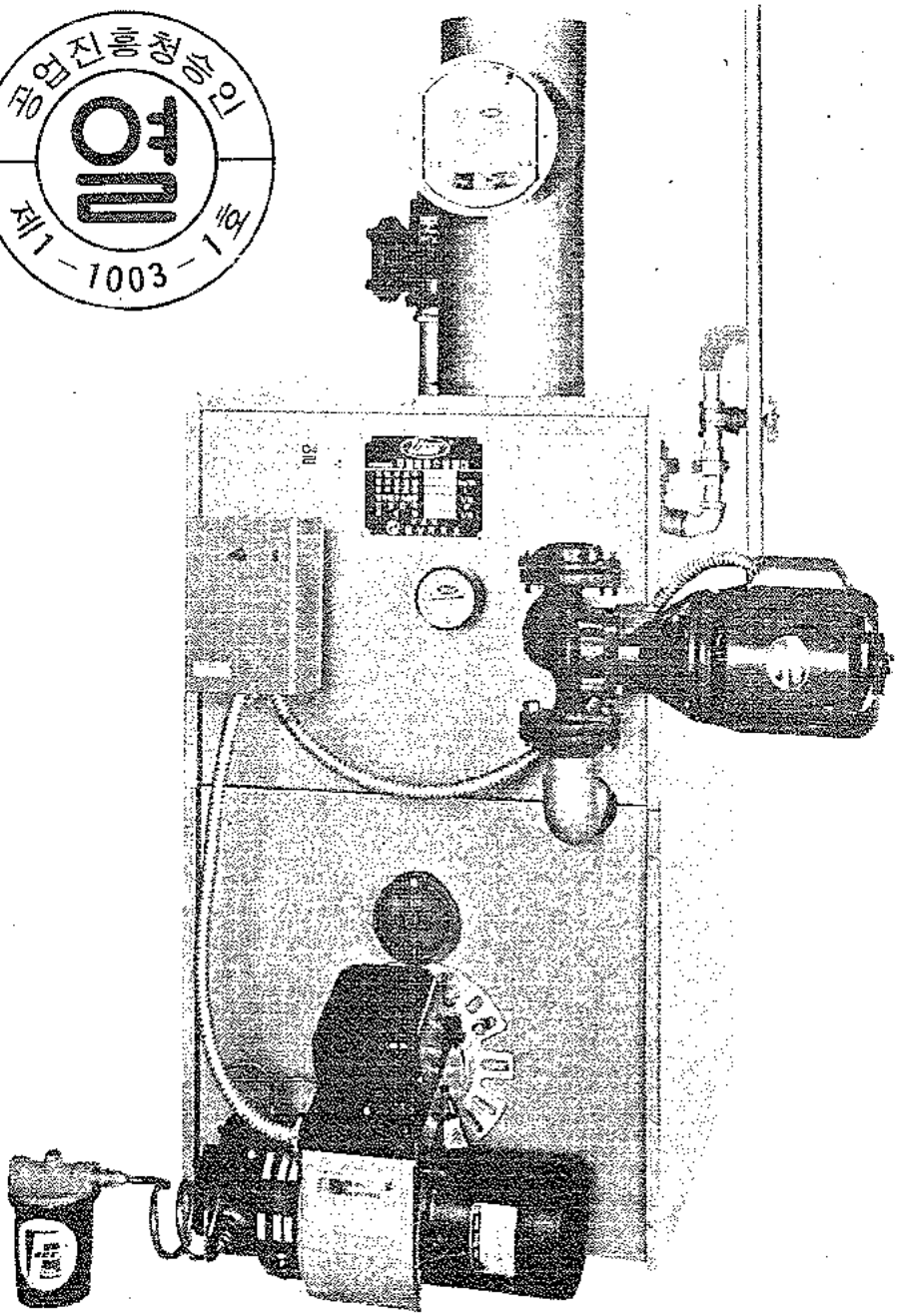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호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호

TEL: 266－2807, 266－8015